2009 예산정책보고서 제2호

BUDGET AND P

일본의 지역 중심 고용대책 사례와 시사점

2009. 4

박인화 · 김봉주
서세욱 · 조혜정

2009 예산정책보고서
제2호

일본의 지역 중심 고용대책 사례와 시사점

2009. 4

박인화 김봉주
서세욱 조혜정

국회예산정책처

이 보고서는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발 간 사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실물경제가 침체되고 고용여건이 악화되면서 선진 각국이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치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수정예산안을 통해 2009년도 예산이 의결되었지만, 예상보다 경제성장률이 더욱 저하되면서 '민생안정을 위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추경안에는 고용여건을 반영한 실업급여 확대 및 일자리예산 증액분이 5조 6,600억원 규모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중 주목되는 사업은 재정을 통해 일자리를 직접 제공하는 '희망근로 프로젝트'로, 6개월간 40만개 일자리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지역실정에 맞는 공공근로사업을 기초자치단체가 계획하며, 중앙에서는 국고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전국의 232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어떤 종류의 공공근로사업을 수행하며, 재정력이 취약한 기초자치단체는 대응지방비를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가 사업의 관건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보고서는 재정지출이 집중되는 '희망근로 프로젝트' 등 일자리사업에 필요한 지역중심 정보와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하여 첫째, 일본「긴급고용·경제대책본부」의 고용대책과 한시적으로 설치한「향토고용재생특별교부금」을 살펴보며 둘째,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본부가 발표한「고용대책 참고사례」중 참고할 만한 73개 사례를 가려뽑아 이를 소개합니다. 돌봄이 필요한 전연령층이 이용하는 플랙시블 지원센터, 도농교류(green tourism), 전국 중소하천 생태맵 작성, 퇴직자를 활용한 학교서포터, 대학의 지역공헌사업 등은 우리에게도 좋은 시사점을 줍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정의 우선과제인 일자리대책에 대해 지난 2월「일자리정책 : 예산과 입법과제」를 내놓은데 이어, 다시 일본의 고용대책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보고서가 민생안정을 위한 국회의 추경안 심의와 지역사회에 편익을 가져다주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09년 4월 21일

국회예산정책처장 신 해 룡

목 차

요 약 / 1

I. 총론 및 시사점 / 9

1. 분석 배경 및 목적 ····· 9
2. 「일자리 추경안」의 핵심 과제 ····· 11
3. 일본의 고용대책 사례와 시사점 ····· 14

II. 우리나라의 일자리대책 현황 / 19

1. 재정 현황 : 2009년도 제1회 추경안 ····· 19
   가. 총 괄 ····· 19
   나. 회계별 편성내역 ····· 21
   다. 노동부 소관 추경안 ····· 23
2. 「희망근로 프로젝트」 개요와 과제 ····· 25

III. 일본의 고용대책과 향토고용재생특별교부금 / 29

1. 일본의 경제위기 대책 ····· 29
2. 일본의 고용대책 현황 ····· 31
3. 「향토고용재생특별교부금」의 설치 ····· 34

IV. 일본의 고용대책사업 주요사례 / 39

1. 수발·육아·의료 ····· 39
2. 농림 수산업 ····· 54
3. 환경 저탄소 ····· 67
4. 교육 청년 지원 ····· 82
5. 관광진흥 지역산업 ····· 93
6. 방송정보통신 ····· 105
7. 정주외국인에 대한 일상지원 ····· 111
8. 방범 방화 ····· 118
9. 문서전자화 조사 등 행정사무, 정보제공 ····· 119
10. 기 타 ····· 133

부 록 : 일본의 고용대책 사례(206개 전체목록) / 137

참고문헌 / 141

일본의 고용대책 사업사례 목차

1. 수발·육아·의료 / 39

1 플렉시블 지원센터 ····· 39

2 지역의 다양한 육아지원 촉진사업 ····· 42

3 장애인 지역취로 촉진사업 ····· 44

4 병원 안내업무 등 의료서비스 및 환자서비스 향상사업 ····· 45

5 IC태그 활용 고령자 안전확보 ····· 46

6 지역육아 지원 고용촉진사업 ····· 47

7 재취업 희망 여성 취직지원사업 ····· 48

8 모자가정의 취업지원 강화사업 ····· 50

9 장애인 지역생활 지원사업 ····· 51

10 특정 건강진료 및 특정 보건지도 종사자 확대사업 ····· 53

2. 농림 수산업 / 54

1 도농교류 추진관련 신규고용 창출사업 ····· 54

2 바이오매스 유효활용을 위한 음식물쓰레기, 간벌재 수집·이용체제 정비사업 ····· 55

3 수출촉진 컨설팅 ····· 56

4 중소식품소매업자의 산지공동조달사업 ····· 57

5 사료용 쌀 생산 및 유통사업 지원사업 ····· 58

6 농상공(農商工) 연계 설비정비사업 ····· 59

7 국산원재료 공급력 강화 대책사업 ····· 60

8 신토불이 모델타운 사업 ····· 62

9 지역농산물 직판장 활용사업 ····· 63

10 친환경 모델타운 지원사업 ····· 64

11 농촌체험형 숙박시설 및 농가 레스토랑 ····· 65

3. 환경 저탄소 / 67

1 표류 및 표착 쓰레기 지역대책 지원사업 ····· 67
2 자연공원 청소사업 ····· 68
3 저탄소도시 관련 녹색일자리 창출사업 ····· 70
4 탄소상쇄 추진지원사업 ····· 72
5 숲 경관 재생사업 ····· 74
6 음식물쓰레기 에탄올화 모델사업 ····· 75
7 야생동물의 생활환경피해대책 ····· 76
8 외래종 방재를 통한 환경개선 ····· 78
9 생물다양성 온난화영향 조사사업 ····· 79
10 쓰레기 투기 감시 및 방치쓰레기 수거사업 ····· 80
11 환경보전사업자 투자촉진 사업 ····· 81

4. 교육 청년 지원 / 82

1 학교 서포터 ····· 82
2 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육지원사업 ····· 84
3 직업교육의 외부인재활용사업 ····· 85
4 대학의 지역공헌 및 교육기능 충실위한 업무지원사업 ····· 86
5 대학의 지역공헌사업 ····· 88
6 지역산학연계 직업교육지원 사업추진계획 ····· 89
7 자연체험환경 학습사업 ····· 91
8 차세대 폐기물처리작업원 육성사업 ····· 92

5. 관광진흥 지역산업 / 93

1 매력 있는 관광지개발사업 ····· 93
2 지역산업 판로확대 및 경쟁력강화 ····· 96
3 IC태그를 활용한 농산물 브랜드화 ····· 97
4 IC카드를 활용한 지역교류 촉진사업 ····· 98
5 웹 통신기술을 활용한 예술활동 촉진사업 ····· 99

6 지역문화재를 활용한 지역활성화사업 ····· 101
7 중소식품소매업자 출장형 판매 촉진 ····· 103
8 지역자원 활용을 통한 신상품 안테나샵 개설 ····· 104

6. 방송정보통신 / 105

1 지상디지털방송 대응 촉진사업 ····· 105
2 정보처리기술 관련 취업지원사업 ····· 106
3 학교교무 정보화를 통한 고용창출 ····· 108
4 제조업 종사노동자 및 실직자의 정보통신 업종전환지원 ····· 109

7. 정주외국인에 대한 일상지원 / 111

1 정주 외국인 자녀에 대한 일본어교육 등 지원 ····· 111
2 외국인유학생에 대한 대학생활지원 보조사업 ····· 112
3 정주 외국인 자녀에 대한 일본어교육 등 지원 ····· 113
4 의료통역자 양성 및 확보사업 ····· 114
5 일본계 외국인 고용기업의 자녀교육지원 ····· 115
6 일본계 외국인 일본어 교육지원사업 ····· 116
7 일본계 외국인 일본어 교육 및 직업훈련지원사업 ····· 117

8. 방범 방화 / 118

1 통학로 등 방범활동 ····· 118

9. 문서전자화 조사 등 행정사무, 정보제공 / 119

1 건강질병대책 보급개발 및 상담사업 ····· 119
2 지자체의 아웃소싱 관련 고용취업 창출사업 ····· 121
3 공문서 기록관·도서관·박물관 소장문서 등 전자화 ····· 122
4 유적 출토품 역사적 자료·민속 문화재 정리 및 공개를 통한 지역문화 진흥사업 ····· 124
5 지자체 식품위생관련 업무 임시강화사업 ····· 126
6 장애인 시설보급 개발사업 ····· 127

7 지역정보정비사업 ····· 128
8 지리공간정보의 전자화 ····· 130
9 전국중소하천의 생태맵 작성사업 ····· 132

10. 기 타 / 133

1 위법광고물 제거 긴급지원 ····· 133
2 역주변 공터 등을 활용한 자전거 주차장 정비사업 ····· 134
3 농업용 저수지 긴급점검 ····· 135
4 농촌마을 배수시설 유지관리 및 감시업무 ····· 136

표 목차

[표 1] 2009년도 일자리 및 실업급여사업 추경안 ····· 20
[표 2] 2009년도 노동부 소관 추경안 ····· 23
[표 3] 지출 분야 및 재원별 추경안 ····· 24
[표 4]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개요 ····· 25
[표 5] 고용대책 내용 ····· 32
[표 6] 2008년도「향토고용재생특별교부금」교부지역과 사업내역 ····· 36

그림 목차

[그림 1] 일본「3단계 경기위기 대책」개요 ····· 30
[그림 2] 사업집행 개요 ····· 34

요 약

1. 분석 배경 및 목적

❑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실물경제가 침체되고 고용여건이 악화되면서 선진 각국이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치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수정예산안 제출을 통해 2009년도 예산이 의결되었지만, 예상보다 경제성장률이 더욱 저하되면서 **'민생안정을 위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 제출(2009. 3)됨

○ 추경안은 세입결손 보전 11.2조원, 세출증액 17.7조원이 반영(변동 총액 28.9조원)되었으며, 총지출은 본예산대비 6.3% 증액된 302.3조원 규모

❑ 추경안에 포함된 **실업급여 확대 및 일자리 예산 증액분**은 실업급여 등 확대 2.2조원, 일자리 유지 및 나누기 5,100억원, 일자리 만들기 2.8조원(직접 일자리 제공 2.6조원, 간접고용유발 1,800억원), 교육·훈련 1,600억원으로 **총 5조 6,600억원** 규모임

❑ 주목되는 일자리 직접제공 사업은 신규 편성된 **'희망근로 프로젝트'(국비와 지방비 총 2.6조원)**인데, 기초자치단체별로 시행하는 **공공근로사업 종류**와 이에 따른 '괜찮은 일자리' 창출 효과, 그리고 재정력이 취약한 **기초자치단체의 대응지방비 부담**이 사업 성패를 가르는 핵심임

❑ 이러한 배경에서 본 보고서는 첫째, **2009년도 제1회 추경안의 일자리사업**을 살펴보고 둘째, **일본 고용대책**과 **「향토고용재생특별교부금」**에 관한 내용을 분석하며 셋째, 일본 **「고용대책 사례」** 중 참고가 될 수 있는 **73개 사례를 가려 뽑아 사업내용, 운영방식 등의 정보를 소개**함으로써, 재정지원이 집중되는 **일자리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시사점**을 얻고자 함

2. 「일자리 추경안」의 핵심 과제

❑ **첫째**, 일자리 예산안 증액분(5조 6,600억원)을 재원별로 **예산 3.0조원, 기금(고용보험기금, 근로복지기금) 2.6조원**으로, 예산 : 기금이 54 : 46으로 배분

- ◦ **예산: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회서비스일자리 등 일자리 만들기에 지출
- ◦ **기금: 실업급여 확대**, 고용유지지원금 등 일자리 지키기와 나누기 사업

❑ **둘째,** 국고보조사업인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국고 1조 9,950억원, 지방비 5,655억원을 투자하여,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별로 6개월간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함으로써, **4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인데, 재정사업의 성과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이 핵심과제임

① 기초자치단체별로 **어떤 종류의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하여, **지역사회에 편익을 가져다 줄 것인가**, 또한 이 사업이 일회성의 소모적 지출에 그치지 않고 **'괜찮은 일자리'로 이어져 주민생활에 기여**할 것인가?

- 외환위기 시 도입되었던 '공공근로사업'은 총 6조원을 소요하면서 5년간(1998~2002) 지속되었고, 이후 2004년경에 도입된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 등은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산림청 등 다수부처에서 계속사업으로 자리 잡음

② **취업애로계층이 밀집 거주하며 재정력이 취약한 기초자치단체**에서 상대적으로 큰 사업수요에 따른 **대응지방비 부담**을 원활히 조달하여 추경편성 취지를 구현하자면, 사전진단을 통해 특·광역시의 일부 자치구 등을 **'민생안정특구'(가칭)로 지정**하여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된 국고보조율 적용** 필요

-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추경안에 도입된 국고보조사업 대응지방비 부담총액의 30%를 차지하는 매우 비중 있는 사업
- 경기침체와 추경편성에 따라 악화되는 지방재정을 규모로 보면, 지방세수 감소 6.8조원, 지방교부세 감액 2.2조원, 국고보조사업 대응지방비 부담 1.9조원으로 총 10.9조원 규모인데, 이 중 3조원만 중앙에서 지방채 인수로 보완
- '민생안정특구'는 노동부 추경안의 '고용개발촉진지역' 지정과 유사한 접근임

③ 공공근로의 대가를 **현금과 소비쿠폰으로 반반씩 지급**하는데 따른 적법성과 효용성, 소비쿠폰 유통에 따른 비용의 적정성 및 소비쿠폰 할인방지 등의 비효율성 제거가 담보될 수 있는가?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2009. 3. 24): 공공근로사업 등에 참여하는 실업자에 대해 급여의 일부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셋째,** 재정을 통한 직접 일자리 제공사업인 **사회서비스일자리**는 추경안 증액분 기준으로 **2,879억원, 3.3만명 규모**인데, 이는 추경안에 반영된 '직접 일자리 제공사업' 증액총액(2.6조원) 대비 11.5%, 총지원인원(55만명) 대비 6.0%에 불과하여, **'단기 일자리'라도 시급한 현 여건이 과소 반영**된 여지 있음

❑ 사회서비스일자리는 선진국에서 실업해소를 위한 유용한 수단인데, 사회서비스의 높은 고용창출 잠재력에 비해 우리나라는 사회서비스 고용비중이 낮으므로,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 추경안 규모가 불충분하다는 우려 제기**

- **한국의 사회서비스 고용비중은 13.8%에 불과**(2007년)하여, 일본 17.0%, 스웨덴 32.5%보다 낮으며, **OECD 평균(21.3%)보다 7.5%p 낮은 수준**
- **일본**의 고용대책사업 사례에서는 **수발, 의료, 고령자에 대한 보살핌 등의 사회서비스일자리**가 가장 우선순위 높은 고용창출 영역임
- 2005년 기준 **취업유발계수**(소비·투자 10억원 증가 시 전산업 취업자 증가수)를 보면, **사회복지서비스 29.9, 교육서비스 22.8**로 나타나, **전산업 평균(14.7)에 비해 1.5~2배 정도로 높음**

❑ 최근 **취업자 수 감소가 현저한 여성 특히, 20~30대 여성층 실업자**에 초점을 두면서 사회서비스일자리 예산안 증액 및 신규사업 발굴 필요

- 「2009. 3월 고용동향」에 의하면,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 감소(19.5만명)의 76%(14.9만명)가 여성이며, 특히 20대와 30대 여성 취업자수 감소 심각

○ 20~30대 여성에게 적합한 보육·교육분야 사회서비스일자리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육아지원촉진사업, 학교교육 지원 등 다양한 신규사업 개발을 통해 양적인 일자리 확대와 다양성 확보 필요

- 교육과학기술부 추경안의 「학습보조인턴교사」(신규, 478억원) 등에 반영된 인턴교사와 강사 수는 학교당 평균 1.4명에 불과(2008. 4월 기준, 11,222교)

❑ **넷째, 고용보험기금**의 경우 실직자 수 증가로 인하여 실업급여(구직급여) 등의 증액분이 2.1조원으로 크게 늘어나면서, 2009년에는 **실업급여계정**에서 **당기수지적자가 2.4조원**으로 급증할 것이 예상되며, **2009년 말 누적적립금은 2.7조원(동 계정 2009 지출예상액의 51% 수준)으로 축소**될 전망임

○ 경기침체 지속 시에는 보험료 수입은 감소되는 반면,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임의가입이 허용될 경우 급여비 지출은 더욱 늘어나게 됨

○ 2009년 2월의 실업급여 수급자 수는 40만명, 지급액은 3103억원으로, 고용보험제도에 따라 실업급여가 도입(1996. 7)된 이래 월별통계로 가장 높음

3. 일본의 고용대책 사례와 시사점

❑ 일본에서는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수상을 본부장으로 하는 **「긴급고용·경제대책본부」**를 내각부에 설치(2008. 12)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용기회를 확대하도록 하여, 고용안정화를 도모한다"**는 정책목표 하에 고용대책 추진

○ **후생노동성**의 「**새로운 고용대책**」(2008. 12)에서는 향후 3년간 고용안정화 대책 실시를 위해 예산 1조엔, 고용보험 1조엔의 재원확보 계획을 밝힘

○ 일본 정부가 경제위기대책으로 4. 10일 발표한 2009년도 추경안에서도 지난 3. 23일 결정된 「고용안정·창출 실현을 위한 노사정 합의」사항을 반영하는 등 고용대책에 1.9조엔(한화 26조원)의 예산 추가 편성[1)]

1) 기준 환율은 100엔당 1,347원 적용.

❑ 일본 고용대책에서 주목되는 특징을 보면 **첫째**, 일본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실질적으로 참고**할 수 있도록, 206개 일자리 사례를 포함하는 **「긴급고용대책 참고사례」**를 정리하여 발표함

둘째, 재정대책으로 **「향토고용재생특별교부금」을 설치(2008년 말, 2500억엔, 한화 3.4조원)**하여 **한시적으로 3년간(2009~2011년)** 지역 고용창출사업 실시를 **지원**하는 등 **총 9,000억엔의 대책비 마련**

○ 광역자치단체는 특별교부금을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하도록 하여, 기초자치단체의 고용창출사업 실시를 실효성 있게 지원

셋째, 「고용보험법」 등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하여, 금년 4. 1일부터 보험 **가입조건의 완화**(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 재취직 곤란자에 대한 **실업급여일수 연장**(60일분), **고용보험의 보험료율 인하**(1.2%에서 0.8%)를 시행함

[사업집행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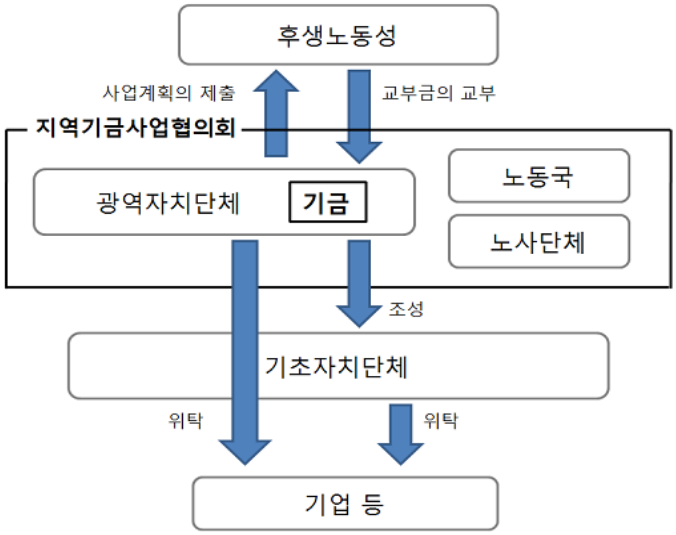

❑ **구체적으로 고용대책사업례**는 돌봄서비스(수발)·육아·의료, 환경·저탄소 등 10개 분야에서 고용대책사업이 신규고용으로 이어지도록 206개의 사례 제시

❑ **다음으로**, 고용안정화를 위한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할**을 보면,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재정을 지원하고, **지방정부**는 지역실정에 맞게 취업여건이 어려운 지역이나 취업취약계층에 대해 고용기회 창출대책을 수립하도록 함

○ **「향토고용재생특별교부금」 확충** 등: 취업여건이 어려운 지역에서 지역실정과 사업개발에 따라 지역의 구직자를 고용하는 사업추진 지원

○ **「긴급고용창출사업」 창설**: 광역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교부금을 기본재원으로 하여, 지방공공단체가 일자리를 잃은 비정규근로자와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일시적 고용 및 취업기회 창출

❑ 일본의 고용정책 변화 동향을 보면, 소극적 정책에서 **적극적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공공사업 등을 통한 직접적인 취업 창출 중심**으로 변화되며, 고용안정을 위해 GDP의 1.1%(약 5.5조엔)을 고용정책에 투자하고자 함

❑ **우리나라**에서도 악화되는 고용문제와 관련하여, **추경안**에서 **일자리 및 고용관련 대책(실업급여 등)으로 약 5조 6,60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적정 재정규모, 중앙정부 지원과 지방재정문제, 재정지출 효과를 거두기 적시성 있는 조기집행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따라서 **추경안의 국회 심의와 지역 중심의 일자리사업**을 위해서는, 경기침체에 직면한 현실, **저출산 고령화와 저탄소 녹색성장** 등 미래사회, 일본 고용대책사례 등을 참고하여, 다음 영역의 일자리 개발에 주안점을 둘 필요 있음

❑ **첫째,** 주민의 수요와 편익, 그리고 고용유발효과가 높은 **의료·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서 보육·수발·지역복지사업 등의 고용촉진책**을 우선적으로 강화

○ 보육·고령자서비스는 미래에도 사회적 요구가 증가할 분야인데, 일본 정부는 206개 모델사업 중에서도 '개호 및 육아서비스'를 최우선 분야로 선정

○ '플렉시블(flexible) 지원센터' 설립: 매우 주목되는 사례로 고령자 수발과 아동보육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복지시설이며, 돌봄이 필요한 모든 연령층 이용

하며 지역의 수요에 맞게 각종 서비스 탄력적으로 제공

- 사업주체는 기초자치단체이며, 사회복지법인이나 민간기업 등에 사업을 위탁하고 지역의 간호시설, 전문직양성학교가 하나가 되어 전체적으로 대응

○ 이 외, 육아지원 촉진사업, 의료 및 환자서비스 향상사업, 특정 건강진료 및 특정 보건지도종사자 확대사업 등

❑ **둘째,** 지역별 인구구조를 감안하면서 인적자원 육성을 위해 낙후된 교육시설 개선, 학교교육을 위한 다양한 인력지원 등 취업유발계수가 높은 **교육서비스 분야 일자리** 만들기 강화

○ 학교서포터(기업퇴직자, 지역기술자 등을 수업실시나 교직원 보조로 활용), 중·고등학교 커리어교육지원(다양한 경력을 지닌 사회인을 교육보조자로 배치), 직업교육 보조교사로 외부인 활용(커리어컨설팅 등의 경력자를 보조교사로 활용), 대학의 지역공헌 업무지원(대학 도서관, 실험시설을 주민과 민간기업에 야간개방 등), 외국인 및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 교육 등

❑ **셋째, 녹색성장(green growth)** 등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저탄소도시 추진, 취업취약계층을 **녹색일자리로 연계**시키는 사업 등에 대한 우선적 고려

○ 저탄소도시 추진을 위한 녹색일자리(저탄소도시 추진위원회 가입도시에서 에코하우스 보급, 저탄소사회 만들기를 통한 일자리 창출, 에코투어, 산림정비 등), 탄소상쇄 추진사업지원(탄소배출 삭감 크레딧 구입, 주민과 기업 주도의 온실가스 삭감활동 지원), 숲 경관재생사업, 자연공원청소사업 등

❑ **넷째,** 전반적으로 **주민생활 안전, 지역산업 진흥** 등을 위한 업무 및 정보제공사업의 강화

○ 지자체 식품위생업무 임시강화사업, 역주변 공터에 자전거주차장 정비사업, 전국 중소하천 생태맵 작성사업, 통학로 방범활동, 민속문화재 정리 등 지역문화 진흥사업, 지역개발 신상품 안테나샵 개설(지역상점가에 새롭게 고객을 모으는 장소), 매력 있는 관광지 개발사업, 도농 교류(green tourism) 추진에 따른 고용창출사업 등

I. 총론 및 시사점

1. 분석 배경 및 목적

❑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인하여 실물경제 침체가 가시화되고 고용여건이 악화되면서, 주요 선진국에서는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부양책과 일자리 대책이 국정의 우선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 미국, 일본 등 OECD 국가들은 경제위기 악화에 대응하여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기존의 일자리를 유지하도록 지원하면서 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 우리나라에서도 지난해에 정부의 2009년도 예산안 국회제출에 이어 다시 경기침체에 대응한 수정예산안이 국회에 제출(2008. 11. 7)되어 2009년도 예산이 확정·의결(2008. 12. 13)되었지만, 경제성장률이 더욱 저하되고 일자리가 감소하면서 3개월여 만에 **'민생안정을 위한 2009년도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2]이 국회에 제출됨

○ 추경안은 세입결손 보전 11.2조원, 세출증액 17.7조원이 반영(변동 총액 28.9조원)되어 총지출 규모가 302.3조원[3]임

❑ 추경안에는 재정지출을 통해 5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국비 2.8조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중에서도 주목되는 신규사업은 '최저생계비 120% 이하의 근로능력계층'이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여 월 83만여원의 생계지원금(현금과 소비쿠폰)을 받는 **'희망근로 프로젝트'(국비 2조원, 지방비 5,700억원, 40만개 일자리)**임

---

2) 기획재정부, 「민생안정을 위한 28.9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보도자료, 2009. 3. 23.

3) 2009년도 본예산은 총지출 284.5조원임.

○ 동 사업은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추진되며, 구체적인 사업내용, 수행방식 등에 대한 결정을 기초자치단체(230개)[4]에 위임하고 있음

❑ 생계지원과 근로를 연계한 '**희망근로 프로젝트**'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첫째**, "**어떤 종류의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하여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s)를 창출할 것인가" **둘째**, "**재정력이 취약하며 취업애로계층이 밀집한 기초자치단체에서 대응지방비 부담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등이 관건임

○ 지난 외환위기 시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으로 도입(1998~2002년까지) 되었던 공공근로사업은 단순 취로사업에 편중되는 시행착오를 겪음[5]

○ 특·광역시는 실업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아 상대적으로 참여자가 많을 것이며, 이들은 재정사정이 열악한 자치구에 밀집 거주하여 자치구 부담 가중

❑ 일본의 경우를 보면, **수상을 본부장으로 하는 「긴급고용·경제대책본부」**(이하 '긴급고용대책본부')를 **내각부에 설치**(2008. 12. 24)하고 고용대책 추진

❑ 일본의 고용대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용기회를 확대하도록 하여 고용안정화를 도모**하는데 정책목표를 두고,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수 있는 **「긴급고용대책 참고사례」 제공**(200여개 사업, 2009. 2. 6)하고, **「향토고용재생특별교부금」을 설치**하여 지방 고용대책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점이 특징적임

❑ 이러한 배경에서 본 보고서는 첫째, **2009년도 제1회 추경안의 일자리사업**을 살펴보고 둘째, **일본 고용대책**과 **「향토고용재생특별교부금」**에 관한 내용을 분석하며 셋째, 일본 **「고용대책 사례」** 중 참고가 될 수 있는 **73개 사례를 가려 뽑아 사업내용, 운영방식 등의 정보를 소개**함으로써, 재정지원이 집중되는 **일자리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시사점**을 얻고자 함

○ 특히, 신규 편성된 '희망근로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공공근로사업 개발 및 사업운영을 위한 정보 제공

---

4) 2개 시로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는 230개에 포함되지 않음.

5) 고영선 외, 「경제위기 10년: 평가와 과제」, 2007. 12.

2. 「일자리 추경안」의 핵심 과제

❑ 2009년도 제1회 추경안의 세출 증액(17.7조원)은 크게 '저소득층 생활안정' 4.2조원, '일자리 제공 및 고용유지' 3.5조원, '중소기업 등 지원' 4.5조원, '지역경제 활성화' 3.0조원, '녹색성장 등 미래대비 투자' 2.5조원의 5개 분야에 걸쳐 있음

❑ 이 가운데 **'고용취약계층 지원 및 일자리 만들기와 직결되는 예산안'**(이하 '일자리 예산안')은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일자리 제공 및 고용유지'의 2개 분야 사업 중에서 **총 5.7조원(국비 및 기금)으로 증액 편성됨**

  ○ 실업급여 및 생업자금지원(2.2조원 증), 일자리 유지 및 나누기(5,100억원 증), 일자리 만들기(2.8조원 증), 교육·훈련(1,600억원 증)

❑ **첫째**, 일자리 예산안 증액분을 재원별로 보면, **예산 3.0조원, 기금(고용보험기금, 근로복지기금) 2.6조원**으로, 예산 : 기금이 약 54 : 46의 배분임

  ○ **예산: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회서비스일자리 등 일자리 만들기에 지출

  ○ **기금: 실업급여 확대**, 고용유지지원금 등 일자리 지키기와 나누기 사업

❑ **둘째,** 국고보조사업인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국고 1조 9,950억원, 지방비 5,655억원을 투자하여,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별로 6개월간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함으로써, **4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인데, 재정사업의 성과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이 핵심과제임

  ○ 기초자치단체별로 **어떤 종류의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하여, **지역사회에 편익을 가져다 줄 것인가**, 또한 이 사업이 일회성의 소모적 지출에 그치지 않고 향후 **괜찮은 일자리로 이어져 주민생활에 기여**할 것인가?

    - 외환위기 시 도입되었던 공공근로사업은 총 6조원을 소요하면서 5년간(1998~2002) 지속되었고, 이후 2004년경에 도입된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 등은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산림청 등 다수부처에서 계속사업으로 자리 잡음

○ **취업애로계층이 밀집 거주하며 재정력이 취약한 기초자치단체**에서 상대적으로 큰 사업수요에 따른 **대응지방비 부담**을 원활히 조달하여 민생안정과 경기진작을 위한 추경안의 취지를 구현하자면, 철저한 사전진단을 통해 특·광역시의 일부 자치구 등을 **'민생안정특구'(가칭)로 지정**하여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된 국고보조율 적용** 필요

- 추경안에 도입된 총 4.5조원의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대응지방비는 1.9조원인데,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국고보조사업 대응지방비 부담총액의 30%를 차지
- 경기침체와 추경편성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여건을 보면, 지방세수 감소 6.8조원, 지방교부세 감액 2.2조원[6], 국고보조사업 대응지방비 1.9조원으로 총 10.9조원 규모인데, 이 중 3조원만 중앙에서 지방채 인수로 보완하므로 지방재정 여건이 보다 악화됨[7]
- '민생안정특구'는 노동부 추경안의 '고용개발촉진지역' 지정과 유사한 접근임

○ 공공근로의 대가를 **현금과 소비쿠폰으로 반반씩 지급**하는데 따른 적법성과 효용성, 소비쿠폰 유통에 따른 비용의 적정성 및 소비쿠폰 할인방지 등의 비효율성 제거가 담보될 수 있겠는가?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2009. 3. 24): 공공근로사업 등에 참여하는 실업자에 대해 급여의 일부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셋째,** 재정을 통한 직접 일자리 제공사업인 **사회서비스일자리**는 추경안 증액분 기준으로 **2,879억원, 3.3만명 규모**인데, 이는 추경안에 반영된 '직접 일자리 제공사업' 증액총액(2.6조원) 대비 11.5%, 총지원인원(55만명) 대비 6.0%에 불과하여, **'단기 일자리'라도 시급한 현 여건이 과소 반영**된 여지 있음

○ 추경안 반영 시 2009년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은 총 1.5조원, 16만명 규모

---

6) 중앙의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통하여 3조원 규모(기존 0.6조원→3.6조원: 지방교부세 감액분 2.2조원, 지방재정 보완조치분 0.8조원)의 지방채를 추가 인수할 예정이지만, 향후 지방정부는 지방채 발행에 따른 채무와 이자상환부담으로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

7) 국회예산정책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쟁점분석」, 2009. 4.

❑ 사회서비스일자리는 선진국에서 실업해소를 위한 유용한 수단인데, 사회서비스의 높은 고용창출 잠재력에 비해 우리나라는 사회서비스 고용비중이 낮으므로,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 추경안 규모가 불충분하다는 우려 제기**[8]

○ **한국의 사회서비스 고용비중은 13.8%에 불과**(2007년)하여, 일본 17.0%, 스웨덴 32.5%보다 낮으며, **OECD 평균(21.3%)보다 7.5%p 낮은 수준**

○ **일본**의 고용대책사업 사례에서는 **수발, 의료, 고령자에 대한 보살핌 등의 사회서비스일자리**가 가장 우선순위 높은 고용창출 영역임

○ 2005년 기준 **취업유발계수**(소비·투자 10억원 증가 시 전산업 취업자 증가수)[9]를 보면, **사회복지서비스 29.9, 교육서비스 22.8**로 나타나, **전산업 평균(14.7)에 비해 1.5~2배 정도로 높음**

– 특히, 사회복지·교육서비스는 서비스업 전체평균(10.1)에 비해 취업유발계수가 매우 높음

❑ 최근 **취업자 수 감소가 현저한 여성 특히, 20~30대 여성층 실업자**에 초점을 두면서 사회서비스일자리 예산안 증액 및 신규사업 발굴 필요

○ 2009. 3월 고용동향(통계청)에 의하면,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 감소 19.5만명 중 76%인 14.9만명이 여성이며, 이 중에서도 20대 및 30대 여성 취업자수 감소가 각각 8.9만명, 14.1만명임

○ 20~30대 여성에게 적합한 보육·교육분야 사회서비스일자리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육아지원촉진사업, 학교교육 지원 등 다양한 신규사업 개발을 통해 양적인 일자리 확대와 다양성 확보 필요

– 교육과학기술부 추경안의 「학습보조인턴교사」(신규, 478억원) 등에 반영된 인턴교사와 강사 수는 학교당 평균 1.4명에 불과(2008. 4월 기준, 11,222교)

8) 국회예산정책처, 「전게서」.
9)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 **넷째, 고용보험기금**의 경우 실직자 수 증가로 인하여 실업급여(구직급여) 등의 증액분이 2.1조원으로 크게 늘어나면서, 2009년에는 **실업급여계정**에서 **당기수지적자가 2.4조원**으로 급증할 것이 예상되며, **2009년 말 누적적립금은 2.7조원(동 계정 2009 지출예상액의 51% 수준)으로 축소**될 전망임

○ 경기침체 지속 시에는 보험료 수입은 감소되는 반면,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임의가입 허용 등이 이루어질 경우 급여비 지출은 더욱 늘어나, 당기수지는 더욱 악화 우려

○ 실업급여계정 당기수지 적자는 2007년에 1,069억원 규모로 처음 발생

○ 2009년 2월의 실업급여 수급자 수는 40만명, 지급액은 3103억원으로, 고용보험제도에 따라 실업급여가 도입(1996. 7)된 이래 월별통계로 가장 높음

3. 일본의 고용대책 사례와 시사점

❑ 일본에서는 심각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하여 수상을 본부장으로 하는 **「긴급고용·경제대책본부」**를 내각부에 설치(2008. 12. 24)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용기회를 확대하도록 하여, 고용안정화를 도모한다"**는 정책목표 하에 다양한 고용대책을 추진함

○ **후생노동성**이 2008. 12월 발표한 「**새로운 고용대책**」에서 향후 3년간 고용안정화 대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예산 1조엔, 고용보험 1조엔으로 총 2조엔의 재원을 확보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음

○ 일본 정부가 경제위기대책으로 4. 10일 발표한 2009년도 추경안에서도 지난 3. 23일 결정된 「고용안정·창출 실현을 위한 노사정 합의」사항을 반영하는 등 고용대책에 1.9조엔(한화 26조원)의 예산 추가 편성[10]

10) 기준 환율은 100엔당 1,347원 적용.

❑ 일본의 고용대책에서 주목되는 특징을 보면 **첫째**, 일본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실질적으로 참고**할 수 있도록, 206개 일자리 사례를 포함하는 **「긴급고용대책 참고사례」**를 정리하여 발표함

둘째, 재정대책으로 **「향토고용재생특별교부금」 설치(2500억엔, 한화 3.4조원) 등 9,000억엔의 대책비를 마련**하고, **광역자치단체**는 특별교부금을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하도록 하여 기초자치단체의 고용창출사업 실시를 실효성 있게 지원함[11)]

셋째, 「고용보험법」 등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하여, 금년 4. 1일부터 보험 **가입조건의 완화**(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 재취직 곤란자에 대한 **실업급여일수 연장**(60일분), **고용보험의 보험료율 인하**(1.2%에서 0.8%)를 시행함

❑ 이러한 대책들을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고용대책사업례**는 돌봄서비스(수발)·육아·의료, 농림수산업, 환경·저탄소 등 10개 분야에서 각 고용대책사업이 신규고용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사례를 제시함

- ○ 고용대책사업례에는 **고령자 수발과 아동보육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복지시설인 '플렉시블 지원센터'**의 설립, 전통공예품의 후계자 육성지원 등과 같이 복지와 지역진흥 등 지방이 안고 있는 과제를 해소하기 위한 고용시책 포함
- ○ 그러나 고용형태가 임시직에 머물러 정규직으로 발전하기 어려운 사례가 있고, 자연공원과 해안 쓰레기 줍기, 풀베기 등 계속적 고용이 힘든 일시적 시책도 포함되어 보다 신중한 고용정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도 있음

❑ 다음으로 고용안정화를 위한 중앙 및 지방정부의 역할을 보면, **중앙정부**는 지방에 재정을 지원하고, **지방정부**는 취업여건이 어려운 관내지역이나 중고령자 등 취업취약계층에 대해 고용기회를 창출하는 대책을 지원함

---

11) 김명중, "최근 일본기업의 고용조정과 정부대책에 대하여", 「국제노동브리프」, 제7권 제2호, 2009. 2.

○ **「향토고용재생특별교부금」의 확충** 등: 지역의 안정적 고용기회 창출을 위하여 「향토고용재생특별교부금」(생활대책 2,500억엔)을 설치함과 동시에 고용여건 및 사업실시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충할 방침

○ **「긴급고용창출사업」의 창설**: 광역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교부금을 기본적인 재원으로 하여, 지방공공단체가 일자리를 잃은 비정규근로자와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일시적인 고용 및 취업기회를 창출하도록 함[12)]

❑ 일본의 고용정책 변화 동향을 보면, 소극적 정책에서 **적극적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공공사업 등을 통한 직접적인 취업 창출 중심**으로 변화되며, 고용안정을 위해 GDP의 1.1%(약 5.5조엔)을 고용정책에 투자하고자 함[13)]

○ 일본은 세 차례의 긴급경제대책에서 **고용·생활대책을 주요대책으로 설정**

❑ **우리나라**에서도 악화되는 고용문제와 관련하여, **추경안**에서 **일자리 및 고용관련 대책(실업급여 등)으로 약 5조 6,60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적정 재정규모, 중앙정부 지원과 지방재정문제, 재정지출 효과를 거두기 적시성 있는 조기집행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따라서 **추경안의 국회 심의와 향후 지역 중심의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경기침체에 따른 당면 현실, 그리고 **저출산 고령사회의 진전, 저탄소 녹색성장** 등 미래사회의 여건 변화, 일본의 고용대책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다음 영역의 일자리 개발에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을 것임

❑ **첫째,** 주민의 수요와 편익, 그리고 고용유발효과가 높은 **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서 보육·수발·지역복지사업 등의 고용촉진책**을 우선적으로 강화

○ 저출산 고령화로 인하여 보육 및 고령자 간호서비스는 미래에도 사회적 요구가 증가할 분야인데, 일본 정부는 고용대책의 조기추진을 위해 200여개 모델사업을 권장하면서도 '개호 및 육아서비스'를 최우선 분야로 선정

---

12) 김명중, 「전게서」.

13) 이하는 삼성경제연구소의 「일본 고용대책의 변화와 시사점」(2009, 3)을 참고함.

- 단, 보육 및 고령자 간호서비스 부문은 중고령자와 여성 일자리 창출에 기여도가 크지만, 타 업종에 비해 저임금이므로, 중장기적으로 임금격차를 줄여 근로자의 이동을 저해하는 고용 불일치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

○ '플렉시블(flexible) 지원센터' 설립: 매우 주목되는 사례로 고령자 수발과 아동보육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복지시설이며, 돌봄이 필요한 모든 연령층 이용하며 지역의 수요에 맞게 각종 서비스 탄력적으로 제공

- 사업주체는 기초자치단체이며, 사회복지법인이나 민간기업 등에 사업을 위탁하고 지역의 간호시설, 전문직양성학교가 하나가 되어 전체적으로 대응

○ 이 외, 육아지원 촉진사업, 의료 및 환자서비스 향상사업, 특정 건강진료 및 특정 보건지도종사자 확대사업, 재취업희망여성 지원사업 등

❑ **둘째,** 지역별 인구구조를 감안하면서 인적자원 육성을 위해 낙후된 교육시설 개선, 학교교육을 위한 다양한 인력지원 등 취업유발계수가 높은 **교육서비스 분야 일자리** 만들기 강화

○ 학교서포터(기업퇴직자, 지역기술자, 퇴직교원 등을 활용하여 수업실시나 교직원 보조), 중·고등학교 커리어교육 지원(다양한 경력을 지닌 사회인을 커리어교육 보조자로 지역교육위원회 등에 배치), 직업교육 보조교사로 외부인 활용(커리어컨설팅 등의 경력자를 보조교사로 학교에서 활용), 대학의 지역공헌 업무 지원(대학의 도서관, 실험시설을 주민과 민간기업에 야간개방 등), 외국인 및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 교육 등

❑ **셋째, 녹색성장(green growth)** 등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저탄소도시 추진, 취업취약계층을 **녹색일자리로 연계**시키는 사업 등에 대한 우선적 고려

○ 저탄소도시 추진을 위한 녹색일자리(저탄소도시 추진위원회 가입도시에서 에코하우스 보급, 저탄소사회 만들기를 통한 일자리 창출, 에코투어, 산림정비 등), 탄소상쇄 추진사업지원(탄소배출 삭감 크레딧 구입, 주민과 기업 주도의 온실가스 삭감활동 지원), 숲 경관재생사업, 자연공원청소사업 등

❑ **넷째,** 전반적으로 **주민생활 안전, 지역산업 진흥** 등을 위한 업무 및 정보제공사업의 강화

○ 지자체 식품위생업무 임시강화사업, 역주변 공터에 자전거주차장 정비사업, 전국 중소하천 생태맵 작성사업, 통학로 방범활동, 민속문화재 정리 등 지역문화 진흥사업, 지역개발 신상품 안테나샵 개설(지역상점가에 새롭게 고객을 모우는 장소), 매력 있는 관광지 개발사업, 도농 교류(green tourism) 추진에 따른 고용창출사업, 농촌마을 배수시설 유지관리사업 등

II. 우리나라의 일자리대책 현황

1. 재정 현황: 2009년도 제1회 추경안

가. 총 괄

❑ 2009년도 제1회 '**민생안정을 위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증액 사업에는 실직과 휴·폐업으로 일자리를 잃은 **고용 취약계층**과 소득감소에 불구하고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2개 부문에서 **총 7.7조원** 규모로 편성됨

○ 저소득층 생활안정(민생안정, 4.2조원 증액):

▸ 기초생활수급자 추가 및 긴급생계보호(1.0조원, 85만가구) ▸ 주거·복지시설 개량 및 대출(6,500억원) ▸ **실업급여 증액(1.6조원, 38만명),** 생활안정자금 융자(5,700억원) ▸ 대학생 장학금 지원(2,700억원)

○ **고용유지 및 취업기회 확대(일자리, 3.5조원 증액)**:

▸ 고용유지지원금 확충(3,100억원, 14.3만명), 휴업근로자 및 교대제 지원(1,300억원, 8.4만명) 등 ▸ **희망근로 프로젝트(신규) 사회서비스일자리, 청년인턴제 등 일자리 만들기 사업(2.8조원, 55만명),** ▸ 실직자 및 대졸 미취업자 등 교육·훈련 사업(1,600억원, 33만명)

❑ 위의 2개 부문(민생안정, 일자리) 예산안 중에서는, 실직과 휴·폐업자 등에 대한 일자리 지원, 교육·훈련, 실업급여 지급 등 최근의 **고용문제와 직결되는 주요 사업비 증액분은 총 5.6조원** 규모이며, 이 중 **직접적인 일자리사업은 6개월간 5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계획됨([표 1] 참조)

▸ 실업급여 등(2.2조원 증) ▸ 일자리 유지 및 나누기(5천억원 증) ▸ 일자리 만들기(2.8조원 증) ▸ 교육·훈련(1,600억원 증)

[표 1] 2009년도 일자리 및 실업급여사업 추경안

(단위: 억원, 천명, %)

	2009 본예산		추경안		증가		증가율	
	예산	인원	예산안	인원	예산	인원	예산	인원
합 계 (A+B)					**56,563**	**1,500**		
A. 고용유지 취업기회 확대(소계)					**34,899**	**1,108**		
1. 취업기회 확대					**28,159**	**552**		
• 직접 일자리 제공					26,350	552		
공공기관 청년인턴제	190	6	374	10	183	4	96.3	66.7
희망근로 프로젝트	**-**	**-**	**19,950**	**400**	**19,950**	**400**	**순증**	**순증**
사회서비스일자리	12,366	129	15,245	161	2,879	33	23.3	25.6
학습보조 인턴교사	-	-	478	25	478	25	순증	순증
조교 등 학내채용 지원			323	7	323	7	순증	순증
노인일자리	1,155	160	1,432	196	277	36	24.0	22.5
자활사업	2,899	48	3,359	58	460	10	15.9	20.8
• 간접 고용유발					1,809	-		
소하천 정비	1,564	-	1,901	-	337	-	21.6	-
재해위험지구 정비	2,887	-	3,293	-	406	-	14.1	-
2. 교육 및 훈련					**1,621**	**328**		
대졸 미취업자 학내교육	-	-	150	75	150	75	순증	순증
청년층 뉴스타트	84	5	176	10	93	5	110.7	100.0
일용근로자 훈련	-	-	100	100	100	100	순증	순증
신규실업자 등 직업훈련	985	8	1,199	16	213	8	21.6	100.0
3. 일자리 지키기·나누기					**5,119**	**228**		
고용유지지원금	583	65	3,653	208	3,070	143	526.6	220.0
무급휴업근로자 지원	-	-	992	61	992	61	순증	순증
고용유지 교대제전환	-	-	182	17	182	17	순증	순증
취업장려수당	-	-	111	6	111	6	순증	순증
지역고용촉진지원	-	-	30	0.6	30	0.6	순증	순증
B. 실업급여생업자금지원(소계)					**21,664**	**380**		
1. 실업급여사업	**33,265**	**-**	**48,648**	**-**	**15,383**	**-**	**46.2**	
실업급여(구직급여)	29,272	1,023	37,922	1,326	8,656	303	29.6	-
연장급여	17	-	6,745	72	6,727	-	38,885.7	-
취업촉진수당	3,976	-	3,976	-	-	-	-	
2. 생업자금지원					**5,664**	**-**	**390.1**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356	-	414	-	58	-	16.3	-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 대부	270	-	3,000	-	2,730	-	1,000.1	-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	300	-	2,300	-	2,000	-	666.7	-
신규실업자 훈련 생계비 대부	240	-	308	-	68	-	28.3	-
자활공동체 창업자금 지원	130	-	330	-	200	-	153.8	-

주: 세부사업은 주요사업이며, 일부사업의 예산과 인원은 파악되지 않음.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재계산.

나. 회계별 편성내역

❑ **일반회계**에 편성된 주요 사업

○ 소관 부처: 행정안전부,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산림청,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 **'희망근로 프로젝트'(신규, 소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40만명**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을 반영**하여 공익형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신규사업 2조원**

○ **사회서비스 일자리, 청년인턴제 등:** 취업애로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확대 **5.5조원→8.3조원(2.8조원 증), 55만개 증**

-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숲가꾸기, 아이돌보미 등 1.2조원→1.5조원(3천억원 증), 12.9만명→16.1만명(3.2만명 증)**
-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확대:** 청년인턴 채용시 6개월간 임금의 70%까지 지원 985억원→1,629억원(644억원 증), 2.5만명→3.7만명(1.2만명 증)
- **취업장려수당**(신규): 중소기업의 빈 일자리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구직자와 기업 간 희망임금 차액지원[14] 사업(111억원, 6천명)
- **학습보조 인턴교사**(신규, 478억원, 2.5만명), 대졸 미취업자 조교 채용(신규, 323억원, 7천명)
- **노인일자리** 확대 1,155억원→1,432억원(277억원 증), 16만명→19.5만명(3.5만명 증)

○ **교육·훈련**: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 일용근로자 직무능력개발, 영세자영업자 및 신규 실업자 훈련, 대졸 미취업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설 등 **976억원 규모 증액**[15]

14) 월 30만원, 12개월.

15) 교육·훈련사업은 일반회계 외에도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645억원이 증액되어, 총 증액규모는 1,621억원임.

-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84억원→176억원, 5천명 증), 일용근로자 직무능력개발사업(신규 100억원), 영세자영업자 및 신규실업자 훈련(213억원 증), 대졸 미취업자 대학내 교육프로그램 개설 지원(203억원 증) 등

❑ **고용보험기금과 근로복지기금**에 편성된 주요 사업

○ 소관 부처: 노동부

○ 신청자 증가추세를 반영한 **실업급여(구직급여) 확대**: 2.9조원 → 4.6조원 (**1.7조원 증, 고용보험기금**), 102만명 → 140만명(**38만명 증**)

- 한편, 대량실업사태 등의 사유 발생 시에는 6개월 내에서 실업급여 60일분 연장급여 지급

○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대부:** 300억원→2,300억원(2,000억원 증, 근로복지기금), **직업훈련 중 생계비 대부** 356억원→485억원(129억원 증, 고용보험기금, 근로복지기금)

○ **재직근로자의 실업예방을 위한 고용유지 지원: 1,734억원 → 6,852억원 (5,118억원 증, 고용보험기금), 22만개**[16]

- 근로자 고용유지 기업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17]하여 **14.3만개 일자리 유지**: 583억원→3,653억원(3,070억원 증), 6.5만명→20.8만명
- **휴업근로자**에 평균임금의 40%까지 지급[18](992억원, 신규 6.1만명)
- 일자리 나누기를 위한 **교대제 전환 시**, 감소된 임금 분담[19](182억원, 1.7만명 신규)

○ **교육·훈련**: 전직실업자 직업훈련, 고용유지 컨소시엄 훈련, 근로자능력개발 지원금 등 3,122억원→3,767억원(645억원 증, 고용보험기금)

---

16) 이 중 중소기업의 빈 일자리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구직자와 기업 간 희망임금 차액지원사업(111억원, 6천명)은 일반회계임.

17) 근로자 감원 대신 휴업·훈련 등을 통해 계속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 일부 지원 (1/2~2/3 → 2/3~3/4으로 상향 조정)

18) 평균임금의 40%와 실제 지급받는 휴업수당의 차액 지급.

19) 노·사·정 각각 1/3씩.

다. 노동부 소관 추경안

❑ 일자리대책 예산사업은 노동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산림청 등 다수의 중앙관서에서 수행되지만, 핵심부처는 고용정책 주무관서인 노동부라 할 수 있음

❑ 추경안이 반영된 노동부 재정규모[20]는 예산 1조 3,768억원, 5개 기금 13조 2,398억원으로 총 14조 6,166억원에 이르러, '예산 : 기금'의 배분이 약 '9 : 91'임

○ 2009년 본예산 기준 시, 예산 : 기금은 10 : 90이므로, 추경안에서는 기금 사업비 비중이 조금 더 높아짐

– 본예산: 예산 1조 1,369억원, 기금 10조 6,178억원, 총 11조 7,547억원

[표 2] 2009년도 노동부 소관 추경안

(단위: 억원)

	2009년 본예산(a)	추경 증액분 (b)	추경안 (a+b)	증감(%) b/a
합 계(일반지출 기준)	117,547	28,619	146,166	24.3
• 예산	11,369	2,399	13,768	21.1
• 기금	106,178	26,220	132,398	24.7
– 고용보험기금	56,562	21,157	77,719	37.4
– 산재보험기금	43,728	-	43,728	-
– 임금채권기금	2,257	-	2,257	-
– 장애인고용촉진기금	2,286	-	2,286	-
– 근로복지기금	1,345	5,063	6,408	376.4

20)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은 제외.

❑ 노동부 소관 추경안 증액규모를 보면, 예산 2,399억원, 기금 2조 6,220억원으로 총 2조 8,616억원(본예산 대비 24.3% 증가)이며, 기금의 증액분이 예산의 11배에 달함

○ 기금사업비 증액: 고용보험 2조 1,157억원, 근로복지기금 5,063억원

❑ 2009년도 노동부 소관 추경안 증액분을 부문별로 보면, 일자리 나누기 지원 4,892억원(17.1%), 청년고용 촉진 902억원(3.1%),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및 취업촉진 1,569억원(5.5%), 생활안정 지원 2조 239억원(70.7%), 기타 시설개선 등 1,017억원(3.6%)으로 배분됨

○ 고용보험기금의 실업급여 증액 등 생활안정 지원이 노동부 추경안 총 증액분의 70.7% 차지

❑ 전반적으로, 노동부 재정운용은 일반회계보다 주로 고용보험기금의 재원으로 고용취약계층에 대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최근 경기침체에 따라 실업자 수 증가 등으로 고용이 더욱 악화되어 정책의 대상이 급격히 늘어날 경우 적정한 국고지원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

○ 실직자 수 증가로 인하여 고용보험기금 증액분이 2.1조원으로 크게 늘어나면서, 기금의 실업급여계정에서는 당기수지적자가 2.4조원 규모로 급증할 것이 예상되며, 이에 따라 2009년 말 누적적립금은 2.7조원(2009년 동 계정 지출예상액의 51% 수준)으로 축소될 전망

[표 3] 지출 분야 및 재원별 추경안

(단위: 억원)

부 문 별	추경안 증액분		
	일반회계	기 금	합 계
합 계	2,398	26,221	28,619 (17.1)
일자리나누기 지원	30	4,862	4,892 (3.1)
청년고용촉진	902	-	902 (5.5)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및 취업촉진	779	790	1,569 (70.7)
생활안정지원	-	20,239	20,239 (3.6)
기타: 시설개선 등	687	330	1,017 (100.0)

자료: 노동부.

2.「희망근로 프로젝트」개요와 과제

가. 사업 개요

❑ 추경안에 편성된 사업 중 대표적인 일자리사업은 '희망근로 프로젝트'(신규)로서, 국비 1조 9,950억원, 대응지방비 5,655억원의 총 2조 5,605억원을 투자하여, 전국의 각 기초자치단체가 필요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총 40만개(6개월간)의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사업임

[표 4]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개요

예산규모	국고 1조 9,950억원, 지방비 5,655억원 ⇒ 총 2조 5,605억원(인건비 2조 484억원, 재료비 5,091억원) (국고보조율: 서울시 40~60%, 지방 70~90%, 평균 보조율 78%)
지원대상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4인가구 월 133만원)의 120%이고, 재산이 1억 3,500만원 이하인 근로능력층 40만가구
지원조건	각 기초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공공근로사업에 참여 (6개월간 한시적)
급 여	월평균 83만~86만원(3.2만원 × 26~27일): 현금 50%, 전통시장 소비쿠폰 등 50%
사업근거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실업대책사업의 실시)

주: 소비쿠폰 인센티브 800원 미포함.
자료: 행정안전부.

❑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근로능력이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되, 근로와 연계하여 생계를 지원하는 '한시적 맞춤 지원' 사업임

○ 대상: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4인가구 월 133만원)의 120% 이하이며, 재산이 1억 3,500만원 이하인 근로능력층 40만가구

○ 급여: 6개월간 월 83만원(현금 50%, 전통시장 소비쿠폰 등 50%)

❑ 이러한 경험에 비추어, 본 추경안에서는 지역사회에 지속적인 편익을 가져다주는 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총 사업비의 20%를 재료비로 편성[22](외환위기 시 공공근로사업은 10%)하였는데, 이러한 재원배분이 실효성을 거두자면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일자리사업이 도입되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임

❑ 특히, 본 사업은 취약계층에 대한 '한시적 맞춤지원'으로 6개월간 수행되는데, 경기회복에 걸리는 기간이나 과거의 공공근로사업에 비추어 볼 때 연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사업평가를 통해 특정지역에서 성과가 인정된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는 복지·노동분야 재정사업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는 것도 권장할 수 있음

❑ 이 외에도,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대규모 사업 추진에 따른 지방비 부담(5,655억원)[23], 공공근로의 대가로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문제 등이 제기되는데, 보다 상세한 분석은 국회예산정책처 추경예산안 분석[24]을 참고하도록 함

  ○ 국고보조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대응지방비를 부담하게 되는데, 추경에 반영된 사업이 대개 실직자와 휴폐업자 등 취업애로계층을 대상으로 하므로, 빈곤층이 밀집한 특·광역시의 재정력 취약 자치구에서는 사업수요가 많이 발생할 것임

  ○ 시도별 실업률(2009. 3월 기준)[25]에 의하면, 인천, 서울, 광주, 대구, 울산, 부산[26]의 6개 특·광역시와 경기도에서는 실업률[27]이 전국 평균(4.0%)보다 최소 0.2%p에서 최대 1.0%p까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2) 80%는 인건비임.
23) 2009년도 제1회 추경안의 국고보조사업 편성으로 인하여 늘어난 총 지방비 부담액 1.9조원의 약 30%를 차지함.
24) 이진우 김성은 김대철 외, "고용유지 및 일자리지원사업",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2009. 4.
25) 통계청, 「2009년 3월 고용동향」, 2009. 4. 15.
26) 지역 순서는 실업률이 높은 순서임.
27) 경제활동인구 대비 실업자 수.

○ 정부는 소비쿠폰 지급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공공근로사업 등에 참여하는 자에 대해 급여의 일부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한 「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지만(2009. 3. 24),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러한 여건을 감안할 때, 일자리사업의 성과 있는 추진을 위해서는 재정력이 취약한 특·광역시 자치구 등에 대해 재정상황을 점검하여 가용재원이 희망근로 프로젝트와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에 대한 수요 증가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예산안 의결 시 ‘부대의견’으로 동 지역에 확실한 국고 차등보조율이 적용되도록 해야 할 것임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이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빈곤층이 많이 발생하여 일자리사업 등 재정수요가 크게 늘어난 지역은 ‘민생안정특구’(가칭)로 지정하여, 한시적으로 국고보조율을 대폭 높이는 방안 도입

– 노동부 소관 추경안에서는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된 지역을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하여 집중 지원할 계획(지역고용촉진지원금, 30억원, 신규)[28]인데, '민생안정특구'도 이와 유사한 접근임

28) 노동부, 「2009년도 노동부 소관 추경안 설명자료」, 2009. 3.

III. 일본의 고용대책과 향토고용재생특별교부금

1. 일본의 경제위기 대책

❑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세계적 경제위기로 2008년 하반기 이후 일본은 심각한 경기침체에 직면하였으며, 국제통화기금(IMF)의 자료[29]에 의하면 2009년도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5.8%로 예상

❑ 경기침제에 대응하여 일본은 2009년도 예산을 포함하여「3단계 경제위기 대책」을 수립하였으며, 총액 75조엔의 사업비가 편성([그림 1] 참조)

- ○ 「경제긴급종합대책」은 2008. 10. 16일에 성립된 2008년도 제1차 추경예산 사업으로 편성된 대책
- ○ 「생활대책」은 2009. 1. 27일에 성립된 2008년도 제2차 추경예산 사업으로 편성된 대책
- ○ 「생활안정을 위한 긴급대책」은 2009. 3. 27일 성립된 2009년도 예산으로 편성된 대책
- ○ 2008년도 제1차 추경예산에서 11.5조엔, 2008년도 제2차 추경예산에서 27조엔, 그리고 2009년도 예산 37조엔 등 3단계에 걸쳐 총 75조엔의 사업비가 투입될 계획

29) 2009년 3월 13일 발표함.

[그림 1] 일본「3단계 경기위기 대책」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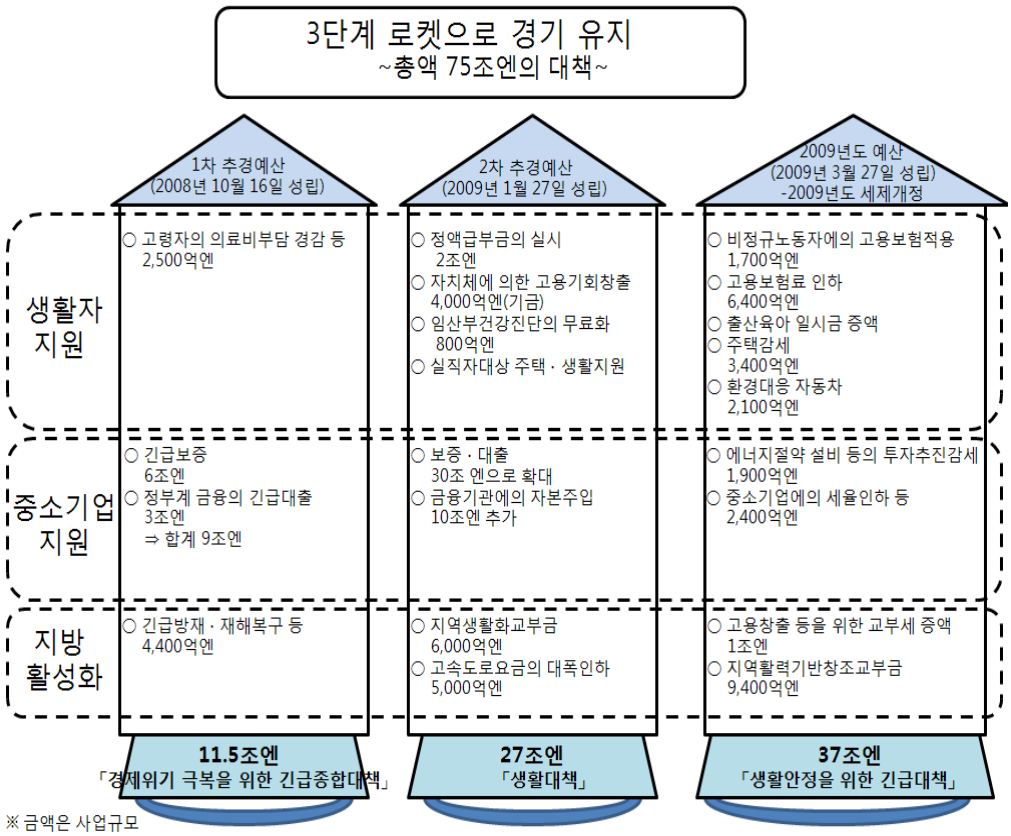

자료: 일본 수상관저,「經濟危機對策」, 2009. 4(http://www.kantei.go.jp).

❑ 3단계 경제위기 대책에 추가하여, 최근 일본정부는 순재정지출 15.4조엔, 총사업규모 56.8조엔에 이르는 사상 최대규모의 경제위기 대책을 발표했으며, 이는 2009년도 4월 27일경 추경예산안으로 국회 제출 예정[30]

○ 순재정지출 기준으로 세부내역을 보면, 고용악화와 금융불안 해소를 위한 긴급대책용 4.9조엔, 중장기성장전략에 6.2조엔, 사회안전망 확충 등에 4.4조엔을 배정

30) 박진호, "일본 경제위기대책의 주요 내용 및 평가",「한국은행 해외경제정보 제2009-29호」, 2009. 4. 14.

○ 금번 발표한 경제대책은 과거의 대책보다 구체화되고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한 실무적인 대책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세계경제 회복이 가시화되기 전에는 효과가 제한적이라 평가를 받음

2. 일본의 고용대책 현황

❑ 일본의 2008년 12월 실업률이 4.5%를 기록하여 전년 동기간 대비 1.3%p 상승하여, 일자리 창출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부각되고 있음

❑ 일본의 3단계 경제위기 대책 중 고용대책을 살펴보면, 「고용유지대책」, 「재취업지원대책」, 「취업내정(內定)취소 방지대책」, 「고용보험료 인하」, 「고용보험 대상 확대」의 5개 대책으로 구성됨([표 5] 참조)

○ 「고용유지대책」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파견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1명당 100만엔을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할 예정임

○ 「재취업지원대책」은 4,000억엔의 「고용창출기금」을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실직자를 일시적으로 고용하는 「긴급고용창출사업」을 실시하고, 지역의 고용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고용특별교부금」을 신설할 계획임

○ 「취업내정(內定)취소 방지대책」은 입사가 취소된 취업내정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1명당 100만엔을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할 예정임

○ 「고용보험료 인하」는 2009년에만 고용보험료를 0.4% 인하하고, 「고용보험 대상 확대」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지급자격요건도 완화할 계획임

○ 고용대책을 위해 2008년도 제2차 추경예산과 2009년도 예산에서 1조 3,403억엔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 '고용보험료 인하'에 편성된 예산이 6,400억엔으로 최대이며, '재취업지원대책'에 편성된 예산은 4,800억엔으로 그 다음임

[표 5] 고용대책 내용

1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종합대책	예 산
1) 비정규고용 대책 등에 관한 지원 ○ 노동자파견제도의 재검토 - 제도의 재검토와 함께(개정법을 임시국회에 제출) 위법파견 일소를 위한 지도감시의 철저 등 ○ 비정규고용대책의 추진 - 나이가 많은 프리터(25~39세)의 청년을 중점으로 견습고용제도 활용을 통해 취직지원(2008. 12. 1일 시행) - 직업능력카드(Job Card)제도의 정비·충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취직훈련기간 중 생활보장을 위한 급여제도 창설 등 ○ 고령자 등의 취로지원 - 65세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 조성을 신설 (2008. 12. 1일 시행)	100억엔 (일부중복)
2) 고용유지대책(생활대책, 생활안정대책에도 포함) ○ 중소기업의 고용유지 등에의 지원 - 고용조정조성금의 조성비율 인상(3분의 2 → 5분의 4) 등 - 고용조정조성금 지급요건 완화 및 대상노동자 확대(고용기간이 6개월 미만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적용확대, 2008. 12. 9일에 소급) 등	약 545억엔
3) 기타 ○ 해고·고용 중지 등의 노동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 - 노동기준감독부서에서 부적절한 해고·고용 중지예방 등의 계발지도 등 ○ 상담체제의 충실(일부 고용지원센터 및 감독부서 12. 20일 및 30일(10:00~17:00)의 개청)	-
2 생 활 대 책	예 산
1) 고용유지대책(생활안정대책에도 포함) ○ 지방공공단체를 통한 고용기회 창출 -「향토고용재생특별교부금」을 신속하게 실시(2,500억엔, 노동보험특별회계)하여 지방공공단체가 민간기업 등에 고용기회를 창출(원칙적으로 1년 고용계약)을 지원 - 사업례: 지방특산품의 개발, 판로개척사업 등 -「긴급고용창출사업」을 창설(1,500억엔, 일반회계)하여 지방공공단체나 실버인재센터 등이 직장을 잃어버린 비정규노동자·중고령자를 대상으로 일시적인 고용·취업기회(6개월 미만의 고용계약)를 창출 - 사업례: 내진(학교내진화를 위한 조사), 환경·지역진흥(산림정비) 등 ○ 나이가 많은 프리터(25~39세)의 적극고용을 지원 - 이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한명 당 100만엔(대기업 50만엔)을 지급 ○ 실직자 훈련 실시규모 확대 등, 안정고용 실현을 위한 장기간 훈련 실시 ○ 중소기업 등의 인재육성·잡카페(Job Cafe)를 통한 매칭 촉진 등 - 급속하게 악화되는 고용정세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잡카페(Job Cafe) 지역네트워크를 강화	약 4,800억엔

3 생 활 안 정 대 책	예 산
1) 주택·생활대책 ○ 전국의 주요 고용지원센터에서 상담지원(2008년 12월 15일부터 실시) ○ 주택의 계속사용 - 고용이 정지당하거나 해고당한 노동자를 퇴실시키지 않고 계속하여 무상으로 주택을 대여하는 사업주에게 조성(대상노동자는 1인 1개월당 4~6만엔, 6개월까지) ○ 주택·생활자금의 대출(2008년 12월 22일부터 실시) - 주택입주 초기비용 등의 자금대출(최대 186만엔, 고용보험수급자의 경우는 최대60만엔, 노동금고, 이자율 1.5%) - 6개월 후에 취직한 경우 상기대출을 일부상환면제 ○ 고용촉진주택의 최대한 사용(2008. 12. 15일부터 실시) - 이를 통하여 어쩔 수 없이 사원기숙사를 퇴실해야 하는 실직자를 대상으로 주택을 확보	약 300억엔
2) 지방공공단체가 실시하는 긴급대책 재정지원 ○ 지방공공단체가 임시적으로 실직자 등을 고용하는 경우 특별교부금을 통하여 지원	-
3) 고용유지대책 ○ 자사에서 근무하는 파견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의 장려금 창설 - 1명당 100만엔(기간을 설정하고 고용하는 경우는 50만엔) (대기업은 각각 반액)을 지급	약 500억엔 (일부중복)
4) 취업내정취소 방지대책 ○ 취업내정 취소의 방지 - 취업내정취소에 관한 상담, 기업지도 등을 강화 ○ 취업내정이 취소된 취직 미결정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사업주에의 장려금 지급 등 - 1명당 100만엔(대기업 50만엔)을 지급	약 3억엔
5) 고용보험료 인하 ○ 2009년에 한하여 0.4%(노사 각 0.2%)의 인하 (연 수입 500만엔의 표준가정에서 연 약 2만엔 상당)	약 6,400억엔
6) 고용보험의 급여 재검토 ○ 비정규노동자에 대해 적용범위 확대, 수급자격요건의 완화 - 적용범위를 「1년이상 고용예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확대 - 계약갱신이 되지 않은 기간설정계약 노동자의 수급자격요건(현행 1년)을 6개월로 완화 ○ 취직이 곤란한 경우의 지원강화 등 - 연령, 지역에 의해 재취직이 곤란한 경우 고용보험 급여일수를 60일분 연장 (현행제도: 해고·고용 등의 경우 급여일수 90일(예: 24세 미만으로 피보험자 기간 5년 미만)~330일(예: 45~60세 미만으로 피보험자 기간 20년 이상)	약 1,700억엔

자료: 일본 수상관저, 「經濟危機對策」, 2009, 4(http://www.kantei.go.jp).

❑ 2009년도 추경예산안으로 제출될 경제위기 대책에서 고용관련 대책으로는 지난 3월 23일 결정된 '고용안정·창출 실현을 위한 노사정 합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반영

○ 기업의 근로자에 대한 휴업수당을 국가가 일부 지원하는 고용조정지원금을 확충(재원 6,000억엔)하여 잡셰어링 도입 기업을 지원

– 휴업수당 지원율을 대기업의 경우 현행 2/3에서 3/4로, 중소기업은 80%에서 90%로 인상하고 잡셰어링 도입 기업에 근로자 1인당 최대 45만엔 지급

○ 실직자의 직업훈련 기간 중 생활비 지원(월 10~12만엔)과 대출(상한 8만엔)을 실시하는 「훈련·생활지원 급부제도」 신설

3. 「향토고용재생특별교부금」의 설치

❑ 취업여건이 어려운 지역에서 지역 실정이나 창의(創意) 연구에 근거를 두고 지역구직자 등을 새로이 고용하여 고용기회를 창출하는 대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향토고용재생특별교부금」을 설치하고, 이를 토대로 기금을 조성하여 지역의 사업 실시를 지원

[그림 2] 사업집행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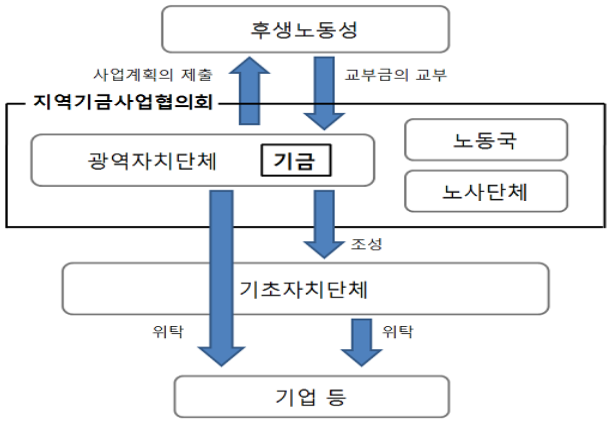

❑ 사업 내용

○ 지역 당사자들에 의한 협의회에서 해당지역의 요구가 있으며 또한 이후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중, 향후에도 사업 지속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선정

○ 선정된 사업이 지역구직자 등을 새로이 고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

❑ 광역자치단체별 구체적 사업내용은 [표 6]과 같고, 중점사업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음

○ 지역브랜드 상품의 개발·판로개척사업

○ 여행상품을 개발하는 사업

○ 고령자를 대상으로 자택 배식서비스 사업

○ 사립유치원에서의 돌봄 보육 등 극진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식품 리사이클 사업이나 퇴비의 농업이용을 촉진하는 사업

❑ 사업실시요건 및 정규 고용화를 위한 조친

○ 사업 실시를 민간기업 등에 위탁할 것(지방공공단체 직접실시는 불가)

○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신규고용실업자의 인건비 비율은 위탁비의 1/2 이상

○ 노동자와 원칙적으로 1년의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필요에 따라 갱신 가능

○ 동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새로이 고용한 고용자를 정규직원으로 고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교부금을 일시금으로 지급

❑ 사업의 규모 등

○ 예산액: 2,500억엔(노동보험특별회계)

○ 고용창출효과: 3년간으로 최대 10만명

○ 실시지역: 전국

[표 6] 2008년도「향토고용재생특별교부금」 교부지역과 사업내역

(단위: 명)

번호	실시지역 명칭	실시 구분	분야 구분	사업내용	고용창출 인원수
1	나가노현	1	4	고령자의 다양한 사회참가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버인재 센터의 새로운 분야에의 사업개발에 대한 기술적 원조, 지도 등을 실시하는 어드바이저를 광역적으로 배치함	4
1	돗토리현	1	1	복지시설취업지원인을 고용하여 복지시설이용자인 장애인의 일반취로에 대하여 지원을 실시	3
1	도쿠시마현	1	1	2008년부터 개시된 정신장애자 퇴원촉진지원사업(현단위사업)의 추진에 있어서도 재택정신장애인 지원을 위한 지역활동지원센터의 역할은 막중하므로, 사업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보내고 마중하는 서비스사업을 실시함	2
2	도쿠시마현	1	8	간벌현장에서 벌채량이나 반출량 상황을 조사하고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벌채방법의 지도, B·C재 등 저이용재의 출하 장려를 실시함. 아울러 간벌재를 이용하는 제재공장 등의 생산·가공상황 등을 조사하고 전략상품이나 부가가치가 높은 가공지도 등을 실시	6
3	도쿠시마현	1	8	임업비약프로젝트를 도모하기 위해 종합적인 코디네이터가 가능한 인재를 고용하고 산림소유자에의 설명은 물론 사업대상산림의 선정이나 길 그물정비계획, 수지전망 등의 작성 시 산림소유자에게 설명함으로써 산림의 단지화를 촉진	6
4	시나고치촌 (도쿠시마현)	2	8	농산물 시나고치 브랜드를 인터넷을 통해 재배방법 등 생산자의 소리도 소개와 함께 판로를 넓히기 위한 접수부터 발송까지를 실시	1
1	에히메현	1	1	에히메현 내 사회복지법인을 대상으로 자기평가항목 체크를 통해 간단하게 경영진단을 실시하는 등, 경영개선대책을 촉진하고 사회복지사업의 활성화와 동 분야에서의 고용창출을 도모	3
2	에히메현	1	2	재취직을 희망하는 육아 중에 있는 모친을 대상으로 재취직에 대한 고민이나 불안의 해결, 재취직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능의 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재취직지원센터를 개최하는 등, 육아 중에 있는 모친이 안심하고 육아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	2
3	에히메현	1	3	코디네이터를 배치하여「핑크리본 에히메협의회」에 대한 사업기획제안이나 이벤트실시에 관해 관계기관과의 연락조정을 실시하는 등, 동 협의회와 제휴하고 유방암에 대한 올바른 지식의 보급과 암 검·수진율의 향상에 대처함	1
4	에히메현	1	4	노동자나 실직자가 직면하는 생활전반에 걸친 여러 문제에 대하여 노동자의 관점에서 대응할 수 있는 상담창구를 설치하고 정보제공, 관계기관의 소개나 동행방문을 실시하는 등, 고용의 사회안전망화에 대처함	2

번호	실시지역 명칭	실시 구분	분야 구분	사업내용	고용창출 인원수
5	에히메현	1	4	에히메현 지역공동취직지원센터를 순회하면서 취직지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시설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등, 고령자의 조기취직 및 고용안정화를 도모	1
6	에히메현	1	4	교환원(operator)을 설치하여 독거노인이나 고령자가구를 대상으로 생활상의 여러 문제에 관한 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안전한 고령사회의 추진에 대처	2
7	에히메현	1	4	「바이오디젤연료」의 보급계발을 실시함과 함께 지역자치회나 기업 등을 순회하여 폐식용유를 회수하여 바이오디젤 연료로 재활용하고 실제 차량이나 보일러에서 사용하는 등, 자원의 순환이용촉진에 대처	10
8	에히메현	1	10	도움을 주는 사람을 배치하여 신체부자유아동 및 지적장애특별지원학교의 유아아동학생의 개개인의 상태나 요구에 대응하고, 세밀한 교육을 실천함에 따라 특별지원교육의 충실·강화를 도모	32
9	에히메현	2	6	공항, 항구에서부터의 리무진버스나, 봇짱열차· 노면전차 등의 차내 이동시간 중에도 세밀한 유인 안내서비스를 실시함에 따라 마츠야마 여행의 인상을 높이고, 소문·단골손님의 확보를 목표로 함과 함께 대중교통의 이용촉진, 시민을 대접하는 분위기의 향상효과도 전망됨	8
1	후쿠오카현	1	4	유학생의 취업촉진을 위해 고용 의뢰대상 기업의 개척이나 매칭을 실시하는 사업	1
2	후쿠오카현	1	3	24시간 대응방문간호 사업소를 정비하기 위한 방문간호사의 확보사업	12
3	후쿠오카현	1	3	지역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한 의료기간의 간호 보조자 확보사업	504
4	후쿠오카현	1	1	수발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에서 간호보조원의 확보사업	402
5	후쿠오카현	1	4	30대 실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정사원으로의 취직을 촉진하는 사업	24
6	후쿠오카현	1	2	사업소 내 탁아소의 설치를 촉진하고 보육사의 취직을 진행하는 사업	24
7	후쿠오카현	1	1	정보통신업에서 장애인의 취로를 촉진하는 사업	22
8	후쿠오카현	1	4	생활에 밀착한 서비스분야에의 취직을 촉진하기 위해 취로상담이나 매칭을 실시하는 사업	11
9	후쿠오카현	1	4	Ruby를 활용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고용을 확보하는 사업	45
10	후쿠오카현	1	4	중소기업에서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이나 새로운 개발의 추진에 의하여 고용을 확보하는 사업	100
11	후쿠오카현	1	4	후쿠오카 산업디자인 상 수상상품 등 우수한 디자인 상품의 판로를 확대하는 사업	6

번호	실시지역 명칭	실시 구분	분야 구분	사업내용	고용창출 인원수
12	후쿠오카현	1	4	중소기업의 기술상담이나 산학공동 연구의 코디네이터 등을 실시하는 사업	2
13	후쿠오카현	1	4	시스템 SI 관련 신제품 개발이나 새로운 시장 개척에 의한 고용을 확보하는 사업	42
14	후쿠오카현	1	4	바이오 산업관련의 신제품에 의한 고용을 확보하는 사업	26
15	후쿠오카현	1	4	지역 치험(治驗)활성화를 위한 치험유치활동이나 참가병원의 확대를 실시하는 사업	2
16	후쿠오카현	1	4	의료·수발·생활지원 로봇 개발에 의한 고용을 확보하는 사업	12
17	후쿠오카현	1	8	농업법인의 인재확보와 경영개선계획(규모확대, 신규 품목도입 등)을 실천하는 사업	200
18	이이즈카시 (후쿠오카현)	1	6	지역활성화를 위해 구 이토우 저택 내의 관광안내 및 가벼운 음식물의 제공을 실시하는 사업	1
19	나카마시 (후쿠오카현)	2	4	공모로 선택된 나카마시의 새로운 명과의 상품화와 판로를 개척하는 사업(생과자분야)	1
20	나카마시 (후쿠오카현)	2	4	공모로 선택된 나카마시의 새로운 명과의 상품화와 판로를 개척하는 사업(구운과자 분야)	1
21	무나카타시 (후쿠오카현)	2	8	오오시마의 관광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회사설립에 의한 산업진흥 사업	3
22	무나카타시 (후쿠오카현)	2	8	새롭게 특산품으로 하여 광판의 개발과 사업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7
23	무나카타시 (후쿠오카현)	2	4	지역의 소비확대를 위해 상업정보의 발신 등 휴대단말기를 활용한 회원제도를 구축하는 사업	3
24	무나카타시 (후쿠오카현)	2	6	특산품의 브랜드 이미지의 통일, 패키지를 포함한 상품의 재검토와 개량을 실시하는 사업	1
합 계					1,521

주 1. 실시구분 1: 광역자치단체 사업, 2 : 기초자치단체 사업

2. 분야구분 1: 수발·복지, 2 : 육아, 3 : 의료, 4 : 산업진흥, 5 : 정보통신, 6 : 관광, 7 : 환경, 8 : 농산어업, 9 : 치안·방화, 10 : 교육·문화

자료: 후생노동성, 「ふるさと雇用再生特別交付金及び緊急雇用創出事業について」, 2009. 4.

IV. 일본의 고용대책사업 주요사례

1. 수발·육아·의료

사업명	1 플렉시블 지원센터
관계부처	내각부, 후생노동성

1. 개 요

■ 설 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내 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연수기간은 1인당 1~2년 정도, 연수 종료 후 계속하여 고용하는 것도 가능
- 커리큘럼은 각 센터가 제휴한 전문직양성학교의 협력을 얻어서 작성. 이때 간호복지사, 홈헬퍼 등의 자격취득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 □□□□(□□□□□□□□□□□□□□)

○ □□□□□□ □□□□□□ □□, □□□□□□□ □□□ □□□□□ □□□□□□ □□(□□□□□□□□□□□□□□)

■ **설비·인원 등의 기준**

○ □□□□□□ □□□□□□□□□□□□□

○ □, 「□□□□□□」, 「□□□□」, 「□□□□□」 □□□ □□□□□ □□

○ □□□□ □□□□□

- 사업이나 연수를 관리하는 코디네이터(타사업소와의 겸무가능) 및 이용형태에 대응하여 필요 시 이용자의 지원을 실시하는 생활지원인(타사업소와의 겸무가능)을 고용
- 직원 가운데 5~10명 정도(기준, 이용자수가 적은 경우는 이보다 적은 수도 가능)는 고용 하에서의 연수 대상자로 하여 고용지원센터와 제휴하여 실직자, 계약연장이 안된 파견근로자 등을 가능한 한 우선적으로 채용

■ **이용자의 규모**

○ □□□□□□□□ □□□□□

○ □□: 1□□□ □□□□□□□□□ □□□ □□□□□□ □□□□□□ 1~2□□□□ 20□□ □□(□□ □□□□□ □□)

■ **이용료**

○ □□□□□□ □□□□□□□□□ □□□□□□
□, □□□□□ □□□□ □□□□□□ □□□□ □□□ □□□ □□□□□□ □□□□□ □□

■ **위탁비 수준**

○ □□□ □□□□ □□□□□□□ □□□□□□□ □□□□ □□□□ □

○ □□□□ □□□ □□□□□□□ □□

○ □□□□□□□□□ □□□ □□□□□□□ □□□,

- 기초자치단체 → 센터
  - 이용자 1인 7,000엔 × 25일 × 12개월 = 210만 엔을 참고로, 하루 10명이 이용하는 것을 가정하면, 연간 2,100만 엔 정도
  - 20명이 이용한다면 연간 4,200만 엔 정도
- 기초자치단체 → 센터 → 제휴 간호복지시설, 제휴 전문직양성학교
  - 센터 당, 센터 경유로 연간 총액 500만 엔 정도

■ **관계자의 역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기대 효과

○ flexible□□ □□: □□□□ □□□□□ □□□□□□□ □□□□ □□□□ □□□□□ □□ □□ □□□□(□□□□□□ □□□□□ □□□□□□ □□□□ □□)

○ □□□□ □□□ □□□□(OJT)□□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명	② 지역의 다양한 육아지원 촉진사업
관계부처	후생노동성

1. 개 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내용의 예
  ① 보육시설까지 보내고 데리고 옴
  ② 보육시설 운영 시작 전이나 종료 후, 또는 학교의 방과 후 아이를 돌봄
  ③ 보육자가 병이나 급한 용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아이를 돌봄
  ④ 관혼상제나 학교행사가 있을 경우, 아이를 돌봄
  ⑤ 쇼핑 등 외출 시, 아이를 돌봄
  ⑥ 병이 난 아이·병에서 회복한 아이의 돌봄
  ⑦ 급하게 야근을 할 경우 및 출장 시 숙박을 같이하면서 돌봄

• 동일사업에 관하여는 차세대육(育)지원대책교부금(소프트 교부금),「병이 난 아이·긴급대응강화 모델사업」,「병이 난 아이· 긴급돌봄 대응기반정비사업(가칭)」을 통해 지원을 받는 경우는 대상으로 하지 않음

■ 설비·인원 기준

○ □□□□□□□□□□□□

■ 이용자의 규모

○ □□□□□□□□□□□□

■ 이용료

○ □□□□□□□□□□□□

■ 위탁비 수준

○ □□□□□□□□□□□□

■ 관계자의 역할

○ □□□□□□: □□□□(□□□□□ □□□□□□ □□·□□) □

○ □□□□□□: □□□□□□□□□□ □□□□□□□□ □□, □□□□□□□□□ □□□□□ □□□□ □

○ □□: □□□□□□□□ □□□□ □□□□ □

2. 기대 효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OJT): □□□□ □□□□□□, □□□□□□ □□□ □□□□ □□□□□ □□□□ □

○ □□□□ □□□□ □□: □□□□□□□□ □□□□, □□□ □□□□□□, □□□□□ □ □□ □□□ □□□□

사업명	[3] 장애인 지역취로 촉진사업
관계부처	후생노동성

1. 개 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계자와의 역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 타

○ □□ □□□□□ □□□□□□ □□

○ □□□□□ □□□□ □□□□ □□ □□□□□□□□□ □□□□□□ □□ □□ □□

2. 기대 효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명	④ 병원 안내업무 등 의료서비스 및 환자서비스 향상사업
관계부처	후생노동성

1. 개 요

■ 내 용

○ □□□□□□ □□□내□무(□래환□ □□ □□□□□ □□ □내 □), □□환□□□ □□□□□ □□□무(□□□ 입□환□□ □□□□□ 놀□□□□□ 책□ 읽□ □□ □□ 같□ 놀□줌) □□□ □□□□□ □□□□ □□, □□□□□·환□□□□□□ □□□□ □□□□□ □□

2. 기대 효과

○ □□□내□무□ □□환□□ □□□□□ □□종□□□ □□□□ □□□□□□□, □□종□□□□본래□ □무□ □념□□ □□□□□□ □□ □□□□ □□□

○ 환□□□□□□ □□□□□ □□ 환□□ □□□□□ □□ 좋□ □□□□ 받□ □□ □□ □

사업명	⑤ IC태그 활용 고령자 안전확보
관계부처	총무성

1. 개 요

■ 내 용

○ □□□□ □□□□□□ □롯□□□ □□□□□ □□□□□ □□□ □□□□□ □□□ □□□□베□□화□

○ □□□□ □□□□□(□□, □찰, □□□□□□ □), □처□□ □□봉□□□ □□□ □□□□□, □□□ □□□ □□□□□ □□□□□ □□□□□ □□□□□ □□□ □□□□□□ □□□□□□ 효□□□□□□ □□□□□ □□□□□ □□

○ □□□베□□□□□ □□□□□ □□□□□(□칭·□□)□□□ □□

■ 사업 규모

○ □□□□□ □□□□□화, □□□□□□ □□, □□□□□□□베□□(HP)□□ □□· □□· □□□ □□□ 포□□□□□ □천□엔□ 내□□ 1억엔□ □□□ □□

2. 기대 효과

○ □□□ □□□□□ □□□□□ □□□□□ □□□□, □□□□□□ □□□□□ □□□□□□□□ □□□ □□□ □□□□□□□억□□□ □□□□□

사업명	⑥ 지역육아 지원 고용촉진사업
관계부처	후생노동성

1. 개 요

○ □□□□ □□□ □□□□□□□ □□□ 후□ □□클럽, □□□□□□□□점□□□□ □□□□무□□ 종□□□□□□ □득□□ 얻□□ □□ □□□□ □무□□□□ 쌓□□ □□□□ □□

○ □무□□□ □□□ 후, □□□□ 증□□□□ □□□ □□□□□ □□□□□ □□□□□ 것□□□□

- 실시기관(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및 사회복지협의회 등의 비영리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은 응모자와 사업실시사업소의 정보관리, 사업실시사무소에 대한 조성(급여비), 실무경험 후 고용되는 곳인 기초자치단체나 사업소의 정보수집 등을 담당

① 실직자 등의 응모자가 방과 후 아동 클럽, 지역육아지원거점사업에서 해당사업소 종사자의 지도를 받으면서 1년 정도 보조업무에 종사

② 사업소에서 급여지급

③ 사업소에 대해서 실시기관이 지도 지원을 위해 급여상당액의 일부를 조성

④ 1년 후, 해당사업소 또는 다른 사업소에 취직

2. 기대 효과

○ □□□□ □□□ □□, □득□□ 얻□□□□ □무□□□□ □□ □□ □□□ □□□□ □짐

○ □□□□□□(□□ □□□□□□□)□□ □□, □□□□□□ □□□□ □□□□□ □□□□ □□□□ · □□□□□□ □□□□

○ □□□□□□□□□ □□, □무□□□□□□ □□□ □□ □후 □□□□□□ □□□□□□ □바□□

사업명	⑦ 재취업 희망 여성 취직지원사업
관계부처	후생노동성

1. 개 요

■ 내 용

○ □□□□□□□ □□□□□ □황□□ □□□□ □□□□ □□□□ □□□□ □□□□ □□□□□ 퇴□□ 후□ □□□□ □□ □□□□□□ □□□□□ □□□□□□ □□,

① 일자리를 찾는 방법, 면접 노하우 등 재취업활동을 위한 실천적인 내용의 강좌 개최

② 인턴쉽 실시

③ 카운슬러를 통한 개별 취업상담

□□□ □□□□□□ □□□□□ 것□□ □□□□ □□□□□□ □□□□□□ 것□□ □□□□□ □□□□□□ □□□ □□□□□ □□□□□ □□

○ □턴쉽□□ □□□□□□ □□□□□ □□□□□□ 카□슬□□□ □□□□□ □□□□□□ □, □□□□□□□(□□ mothers hello work)□, □□□□□□ □□ □□□□□□□□□ □□□□□ □□□□□ □□□□□□ □□

■ 설비·인원 등의 기준

○ □□□□□□□□ □□□□□

■ 이용자의 규모

○ □□□□□□□□ □□□□□

■ 이용료

○ □□□□□□□□ □□□□□

■ 위탁비 수준

○ □□□□□□□□ □□□□□

■ **관계자의 역할**

- [illegible]: [illegible]([illegible]·[illegible]), [illegible]
-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 [illegible]: [illegible]

2. 기대 효과

- [illegible]: [illegible] 곤란 [illegible] 황 [illegible]
- [illegible]: [illegible] 강 [illegible]
-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사업명	⑧ 모자가정의 취업지원 강화사업
관계부처	후생노동성

1. 개 요

■ 내 용

○ □□□□□ □□□ □□□□ □□□□ □□□□□□□ □□□ □□□□□□□□ □□□□ □□□□□ □□□□ □□□□ 쉬□□ 환□□□ □□□□□□□ □□□ □□□□ □□□□□ □□□□□ □□□□ 같□□ □책□□ □□

- 기업을 방문하는 방문원을 고용하여 재택근무 등 모자가정의 어머니에게 적합한 업무를 개척함
- 직업훈련이나 구직활동 중의 모친의 아이를 돌보는 탁아서비스 제공
- 각종 지원시책이나 기업요구에 관하여 관계자 사이의 정보공유를 도모하고, 효과적인 자립지원을 시행하기 위해, 복지, 노동, 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협의회를 설치·개최
- 자택에 칩거하는 등 지역과의 연결이 끊긴 모자가정 등의 방문과 개별상담의 시행과 함께, 지역교류회의 개최, 취업을 향한 교육훈련의 알선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시행

2. 기대 효과

○ □□□□□□ □□□□□□ □□□□□□ □□□□ □□□□ 쉬□□ 환□□□ □□□□□□ □□□ □□□ □□□ □□□ □□□□□ □□□□□ □□□□ □□□킴

사업명	⑨ 장애인 지역생활 지원사업
관계부처	후생노동성

1. 개 요

<장애인 본인에 대한 지원>

■ 내 용

○ □□□□ □□□□□ □□□ □□□□□ □□□□□ □□□ □□□□□□ □□□턴□□ □□ □(□: □달□□□□ □□□ □달□□□□□□□□ □□□□ □□□ □□□□턴□□□ □□□□□것□□ □□□□)

○ □□□□□□ □□□□턴□□,

- 장애인에 대해 확실하게 상담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보의 수집이나 서류 작성 등의 보조를 시행
- 장애인 실태조사나 지원요구 조사의 보조를 시행

■ 관계자의 역할

○ □□□□□□: □□□□□□□ □□, □□□턴□□□ □□□ □

○ □□□□□□: □□□□□□□□□ □□□ □□□□□□ □□□□, □□□□□□□ □□□ □

○ □□: □□□□□□□□□ □□□ □□□□, □□항□□ □□□ □

<가족에 대한 지원>

■ 내 용

○ □□□□□□ □□□ □□□□ □□□□□□ □□□□□ □□□□ □□□□ □□□□□ □□□□□□ □□□□□□ □□□□, □□□□□□□ □□□□□□ □□□□□□□□ □□□□찰□□ □□□□□□ □□, □족□□ 곤란□□ □황□□ □□□□였□□, □□입□□ □□ 강□□ 입□□□□□□ □□□□ □□□□ □□□□ □□ □□

○ □□, □족□□ 「□□□□ □□□□□□」□□ □□□□□□ □□□□□□□□ □□□□□□ □□□□□ □□□□ □□□□, □□□□□□□□ □피□□ □□ □□□ □□□□□ □□□ □□□□□ □□□ □□ □□

○ □때□ □□□□□□ □□□□□□ □□□□□ □□된□ 때□□□ □□□□□□ □□□ □□□□□ □□□□ □□□□□ □족□□ □□□□□ 쌍□□□ □□□ □□□□□ □□□□□□ 것□□□ □

■ **관계자의 역할**

○ □□□□□□□: □□□□□(□□□□□□ □□□□□ □□, □□□□□□ □□□□□□□□ □□·□□), □□□□□□□ □□□□ □

○ □□: □□□□□□□□□□ □□드□□□□□□ □□□□ □□□□ □□□□□ □□

2. 기대 효과

○ □□□□ □□□□□□

- 희망하는 모든 장애인에 대하여 상담지원의 기회 보장가능
- 발달장애자 등의 실태가 파악되고 연구나 시책관련 기초 데이터가 확립됨

○ □족□ □□□□□□

- 정신장애자의 지역이행 촉진: 장기입원하고 있는 정신장애자를 포함한 재택정신장애자 등의 가족이 안심하고 자택으로 퇴원하여 지역정착을 지원하고 정신장애자의 지역이행을 촉진함
- 실직자 등의 현장훈련의 장: 고용된 실직자가 시설에서 정신보건복지사와 함께 가족이나 정신장애자를 대상으로 지원을 시행함으로써 경력 향상에 도움이 됨과 동시에 복지 분야에의 계속고용으로 연결됨
- 지역에 밀착한 운영: 광역자치단체가 설치하고 현지의 상담지원사업자나 비영리법인, 민간기업 등에 운영위탁

사업명	⑩ 특정 건강진료 및 특정 보건지도 종사자 확대사업
관계부처	후생노동성

1. 개 요

■ 내 용

○ □□□ □□□□□□□ □□□ □□□ □□□□□□ □□□□□□□□ □□□□ □□□□, □□□ 강검□□□ □□□□□□□□□□□□ □□□□ □□□□ □□

- 과거 1년 이상 취업상태에 있지 않은 보건사와 관리영양사를 채용한 민간 실시기관에 대한 지원
- 신규 채용되었던 보건사가 보건지도 프로그램의 연수를 고용시작 전후에 이용한 경우, 채용한 실시기관에 대응하는 추가적 보조

2. 기대 효과

○ 극□□□ □강검□·□□□□□□□□ □□

○ □□□□ □강검□·□□□□□□ □□

○ 내□□□증후군□ □□□□□□ □증□□□□ □□□□ □□받□□ □□□ □□군□□ □□

○ □□습□□□ 환□□□ □□□□ □□□ □□□□□□ □□화□

2. 농림 수산업

사 업 명	1 도농교류 추진관련 신규고용 창출사업
관계부처	농림수산성, 후생노동성

1. 개 요

■ **내 용**

○ □□□□(Green Tourism)□ 추□□ □□□□ □□□ 같□ □□□ □□효□□ □□ □□□ □□□ □□□□「□토□□□□□□□□□□」□ □□□□ □급□ □ □□

- 사업내용의 예

① 도농교류(Green Tourism)사업 실시지역의 코디네이터나 체험지도원(instructor) 등의 육성·고용

② 도농교류(Green Tourism) 여행상품이나 체험상품의 기획 및 개발 인력 고용

③ 농림어가 민박이나 농림어업 체험민박 등의 정비에 따른 운영 인력 고용

④ 농림수산물직판장, 농림어가·농산어촌레스토랑 등의 운영 인력 고용

⑤ 농산물가공시설이나 가공단지, 관광농원, 시민농원, 클라인가르텐(kleingarten)[31], 각종교류·체험시설의 정비, 지역통화 등의 커뮤니티비즈니스의 운영 인력 고용

⑥ 도농교류(Green Tourism)를 통한 마을 만들기, 계단식 논 등의 경관보전, 자연환경의 보전·재생에 착수하는 운영, 지역안내인 등의 육성·고용

⑦ 농림어업이나 농산어촌이 지닌 치료효과, 교육적 효과 등을 이용한 건강비즈니스, 교육 비즈니스 등의 인력의 육성·고용

2. 기대 효과

○ □□□□□(中山間地域)□ □□□□, □림□□□□ □□□□ □□□ □□□□ □곤란□ □□ □□□□□ □□ □□□ □□ □□

○ □□□□ □□□ □□□ □□□□ □ □뮤□티 □즈□□ □□□ □□ □□

---

31) 시민농원, 도시생활자 등에게 임대하는 농장으로 체제형 주말농장에 해당함.

사업명	[2] 바이오매스 유효활용을 위한 음식물쓰레기, 간벌재 수집·이용체제 정비사업
관계부처	「바이오매스·일본종합전략」관련부처 (내각성, 총무성, 문부과학성,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환경성)

1. 개 요

○ 바□오□□□ □□□□ □□온□화□□, □환□□□□ □□, □□□촌□ □□화□□ □움□□ □며□ □□□□□□ □□물□ □□□□ □□□ □림□□□□□ □□□□ □□□□ □□□

○ 바□오□□□□ □□□□□ □□□□□ □□□□ □□□□ 저□□□□ □포□□□ □□□ 바□오□□□ □□□□ 효율□□□□ □□·□□□□□ 것□□ □□□□ □□□□□

○ □렇□□□ □벌□□ □□ □□□□ 바□오□□□□ □□·□□□□□□ 높□□ □□□ □□□□□ □□□ □□□ □□ □황□□

○ □□물쓰레□□ □□□ 폐□물□ 바□오□□□□ □□□□□ □합□□ □□□□ □□·□□□□□ 것□□ 곤란

○ □□□ □□□ 바□오□□□ □□□□□□ □□□□□ □□□□□□□ 바□오□□□ □□□□□ □□·□□□□ □□□□□□ □□□□□ □□□□□ □□□□□ □□□ □□□□ □□□□□□ □□□□

○ □□□□ □책□□ □□□ 바□오□□□ □□□□ □□□□□□□ □□□□, 바□오□□□ □□□□□ □□□ 펠릿□□□□ □□□ 바□오□□□ □□□□ □□□□□ □□□□ □□·□□□ □□□□ □□□□□□□ □□□ □□□□ □□□ □□□□ □□□□

2. 기대 효과

○ 바□오□□□□□□ □□·□□, 바□오□□□ □□□ □□ □□□□ □□□□□ □□□ □□□·□□□□ □□□□ □□□□

○ □□□ □□□ 바□오□□□□ □□□ □달□□□ □□□□□ □□□□ 종합□ □□□ □□템□□ □□□□, □□온□화□□, □환□□□□□ □□, □□□촌□□ □□화□□ □움

사업명	③ 수출촉진 컨설팅
관계부처	농림수산성

1. 개 요

■ 내 용

○ □□□□ □림□□물·□□□□ □□□□□ □림□□□, □□□□□□ □□□□, □□ 프□젝□□□ □□□□ □□□□ □□□□ □□

○ □□□□ □□ □□□ □□□□ □□

- 개별 상담회나 강연회의 개최, 연구회에 강사 파견, 수출관련서류 번역, 개별 수출프로젝트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지도 등을 제공

■ 자격 기준

○ □□, □송□□□□ 퇴□□□ □□ □□□□ □□□□ □□□□ □□□□ 갖춘 □

○ □융□□□ 퇴□□□ □□ □□□□□□ □□□□ □□□□ □□□□ 갖춘 □

○ □□, □□□, □□□□ □□□ □□□□ 갖춘 □

○ □□ □□ □림□□물 □□□ □□□□ □□□□ □□□□□ □□□□□ 갖춘 □

■ 이용료

○ □□□□□□ □□□□(□□□□□□무□□□ □□□ 것□□ 바□□□)

■ 그 외

○ □□□□ □□□□ □□□□ □□□□□ □□□□□ □□□책□□ □□□, □□□□ □□□□(□□□□□책 □)□□ □□□□□ 것□□ □□□□□

2. 기대 효과

○ □□□ □□화, □득 □□, □□□□□(□□브랜드) □□

3. 비 고

○ □□□□(縣)□□ □□, □□□□ □□□□ □□□□□ □□□□ □□, □□□□□□ □□□□ □□□□□ □□□ 받□□ □□□□ □□

사업명	④ 중소식품소매업자의 산지공동조달사업
관계부처	농림수산성

1. 개 요

■ 내 용

○ □□□□□□□□□□ □□□□□ □칭□□□ □□□□□□□ □□□□ 코디□□□□□□ □□□□□, □□□ □□ □□□□□□ □□□□□□ □접□ □달□□□ □책□□ □□□□□□ □□□□□ □□□□ □□

○ □□□ □□□□□□ □달□□□ □년□□□ 걸□□ □래□□ □□□□□□ □□ □□□□□□□ 포□□□□□□ □□, □□□ 코디□□□□□□ □□□□ □□□□□□□ □□□□□□□□□ 물□□ 증□□□ □□□□□□ □□□□□ □□·□□□□□□ □□□□ □□□□□ □□

■ 관계자의 역할

○ □□□□□□□: □□□□□□□ □□□□

○ □□□□□□□: □□□□□□□□□□□□ □□□□□□□□□ □□, □□□□□□□□□□ □□□□□□ □□□□

○ □□: □□□□□□□□ 합□화, □□화□□□□□ □□□□□□□□ □□□ □□□□

사업명	⑤ 사료용 쌀 생산 및 유통사업 지원사업
관계부처	농림수산성

1. 개 요

■ 내 용

○ 쌀□루·□□□□ 쌀□□ □□□□ □□·□□·□□·□□□ □□□□□ □□□□ □□□,
□□□□□ □□□□□ □□□□ □□□□ □□□□ □□

■ 실시 방법

○ □□□□ □□□□ □□□□□ □□□□ □□□□ □□□ □□

- 생산·가공 등의 관계자가 공동으로 「생산제조연계사업계획」을 작성하고, 농림수산장관이 인정
- 「생산제조연계사업계획」을 인정을 받은 생산자 및 사업자는, 지자체에 사업을 신청
- 지자체는 다음의 요건을 만족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생산제조연계사업계획」을 인정받은 생산자 및 사업자에게 해당사업을 위탁

① 「생산제조연계사업계획」을 인정받을 것

② 쌀가루·사료용 쌀의 생산·유통·가공·판매의 경우, 신규로 노동자를 고용할 것

③ 기타(본 사업의 취지에 부합한 요건을 지자체가 설정)

■ 기타 관련사업

○ □□ □□, 「□□□□□□□□□□획」□□ □□받□□ □□□□ □□ □□□□, 쌀□루·□□□□ 쌀□□ □□□ □□□□ □□□ □□□□ □□·□□□□ □□□ □□□□ 「논□ □효□□□□□□□」 □□ 「□□□촌□□화□ 프□젝□□□□□□(□□□□□□□□□□□□□□□ □□□□□□□□)」□□ □□□□□받□□ □□ □□

2. 기대 효과

○ 쌀□루·□□□□ 쌀□ □□□ □□□□ □□□ □□□□□ □□□□ □□□□□ □촌□□□□ □□화□□ □□

○ 쌀□루·□□□□ 쌀□ □□□ □□·□□□□ □□□ □□□ □□□□물□ □□·□□□□□증□□□, □□□□□□ □□화□□ □□□□ □□ □□□

사업명	⑥ 농상공(農商工) 연계 설비정비사업
관계부처	농림수산성

1. 개 요

■ 내 용

○ □□□□□ □□□□□□□□□ □□□ □□물□□ □□□□□□ □래□□□□ □□□□□□ □□□□, □□□□□ □□·□□□□ □□□□□ □□□□□□□ □□□□ □□□□□ □□

■ 관계자의 역할

○ □□□□□□: □□□□□□□□□ □□□ □

○ □□□□□□□: □□□□□□□□□□□□ □□□□□□□□□ □□, □□□□□□□□□□ □□□□□ □□□□

○ □□: □□□□□□□□□□□□□□□ □□□ □□□□□ □□

2. 기대 효과

○ □□□□ □□□□□□□ □□□□□□ □□□□□ □흥□□ □□□ □□□□ □□화

사업명	⑦ 국산원재료 공급력 강화 대책사업
관계부처	농림수산성

1. 개 요

■ **내 용(시설정비사업만 발췌)**

○ 가공·업무용 수요의 국산원재료의 점유율 향상을 위해 식품제조업자 등의 □□□□ □□□□ □□□□□ □□□□□ □급□□(supply chain) □□□□ □□□ □책□ □□

○ □□□□□□□ □□□ □□□□□□□ □□□달□ □□□□□ □□ □□□□ □□□□ □책□□ □□

■ **실시 주체**

○ □□□□□□□□ □□□□□ □□□□ □□□□□□□급·□□□ □□□□□ □□□□□□□ □□□ □□□, □□□□□□, □□□□□□□□ □

■ **보조율**

○ 50% □내

■ **내 용**

○ □□·□□□□□□ □□

- 적정품종의 동시도입을 위해 공동 묘종(苗種) 시설의 정비
- 품질관리·보관유지를 위한 저온저장시설, 다기능 선과라인의 정비 등

○ □□□□□□□□ □□

- 위생적인 포장라인 정비
- 콜드체인화를 위한 냉장시설 정비
- 위생적인 가공시설 정비
- 광센서를 이용한 당도분석에 따른 집출하 시설 정비 등

○ □□□□□□□□□□□

- 콜드체인화를 위한 냉장시설 정비
- HACCP에 대응한 가공라인 정비 등

■ **자격 요건**

○ □□□□□□□□□□□□□□□□□□것

○ □□□□□□□□래□□□□□□□□□□□□것

○ □□□□□□□□□□□□□□□□□□□□□□것□

○ □□□□□□3□□□□□것

2. 기대 효과

○ □급□□(supply chain)□□□□: □□□□□물□□□□·□무□□송□□량□□증□□□□□□□□□□□□□□화, □□□□□□□

○ □□□□□□□□□·□□: □□□□□□□□□□□□잇□□□□□□□□□□□

3. 비 고

■ **선행 사례**

○ □□□□□□□래□□□□□□□□(□□□□□)□□□□□□□□□□□□□□□□□□□□□□□□□□□□□배추□□□급

○ □□□□□□□□□□□□□□□□□□□급□□□□□□□□, □□□래□□□□□□□□□□□□□□□□□□□증□

○ □□□□□□□□□□□래□□□□□□□□(□□□□□)□□□□□□□□□□□□□□□□□□□□편□점□□□□□□□□급

○ □□□□□□□□□래□□□□□□□□□□□□□□□□□□□□□□□□□□□□□□□□래량□□□폭□증□

사업명	⑧ 신토불이 모델타운 사업
관계부처	

1. 개 요

■ 내 용

○ □□□□□□ □□□, □□급□, □□, □□□□ □□ □□ □□□□□ □□□□□ □□□□ 「□토□□ □델타□」□ □□

○ □□물□□□□□ □□□□□ □□□□□ □□□□□□ □□ □□□□ □□□□ □□□ □□□□ □□□종□량 □□·□□□□□□ □□□□□ 것□ □□

○ □□□물 □입, □□□□□□□□ □□□□입, □□□□□□ □□ □□□□ □□□□ □□□템□ □□ □□□ □□

○ 2009년□□ □□급□□□□ □□□□□□ □□□□물□ □□□□□□ □급□□ □책□□, □량□□점 □□ □□□□물□ □□□□□ □□ □□ □□ □토□□□□ □□□ □델□ □□□□ □□

2. 기대 효과

○ □□□□□ □□□□□ □□ 강화

○ □□□·□□□□□□□ □득□□ □□ □□ □□□□□, □□ □□ □□화

○ □□□□ □□□□ □□□ □□ 증□

○ □□□□□ 증□□ □송□□ □□□□ □□□□ □□ □□ □□ □□온□화 □□

3. 비 고

○ □□ □□□□□ □□물처□□□□□□ □□(2007년 □토□□ □델타□□□)

사업명	9 지역농산물 직판장 활용사업
관계부처	농림수산성

1. 개 요

■ 내 용

○ □□□□□ □□□□□ □□□ □□□ □□□□ □□□□ □□□□□□ □□물□□□□□□ □□□레□토랑□□□□□□□□□□□흥□□□□

○ □□□□□□□□□□□같□□□□

- 농산물직판장, 농가 레스토랑의 운영·관리
- 화학비료나 합성화학농약을 가능한 사용하지 않은 농산물의 홍보활동 등

사업명	⑪ 농촌체험형 숙박시설 및 농가 레스토랑
관계부처	경제산업성

1. 개 요

■ 내 용

○ □□□□□ □□화, □□물□ □□□격□ 침□□ □□ 저렴□□ □입□□물□□ □□□□□ □□□ 폐□(廢園) □□□ □□□□□ □□□□, 폐□□ □□□ □□□ □□□ 「□□□□□□ □□□□ □□ □□레□토랑」□□ □□□□□□ □□객□□ □□

○ □□□□ □□□□□□□, □□□□, □□, □□, □□□□ □□□□□□ □□□ □□□□, □□□□□□□ □□□ 후□ □□

○ □□□□□□종□내□□□ □□□□ □름

■ 설비·인원 등의 기준

○ □□□□□, □□□□□□ □□□□□

○ □, 「□□□□□□」, 「□□□□」, 「□□□□□」, 「□□□□□□」 □□□ □□

■ 이용자의 규모

○ □□□□□ □□□□□, □□□□□□□ □□□ □□□□□□□□ □□

■ 이용료

○ □□□□□ □□□□□

■ **관계자의 역할**

○ □□□□□: □□□□

○ □□□□□□: □□□□□ □□□□, 폐□ □□ □□, □□□□□ □□□□□□□□□

○ □□□□□□: □□□□□□□□□□□ □□□□□□□ □□, □□□□ □□□□

○ □□: □□□ □□ □□□

2. 기대 효과

○ □□□, 폐□ □□ □□, □□ □□후□□ □□ □□족 □□

○ □□ □뮤□티 □□화

3. 비 고

■ **선행 사례**

○ □카□마□: □□□□□□□□□ □□츠□

- 지역주민이 출자하여 「농업법인주식회사 아키츠노」를 설립하고, 폐교를 활용한 농업체험형 숙박시설 「아키츠노 정원」 및 농가레스토랑을 운영

3. 환경 저탄소

사업명	1 표류 및 표착 쓰레기 지역대책 지원사업
관계부처	환경성

1. 개 요

○ □□□ □□ □□□쓰레□□ □□□ □□□□□

- 광역자치단체가, 민간기업과 실버인재센터 등에 위탁하여 해안청소를 실시
- 표류 및 표착 쓰레기의 실태파악, 발생원의 추정, 지역의 실정에 맞는 회수 및 처리 방법의 검토 등을 시행(100% 지원)

○ □□□ □□ □□□쓰레□□□처□□ □□□□□

- 표류 및 표착 쓰레기조사, 관리자, 자원봉사자 등의 청소를 통해 회수된 표류 및 표착 쓰레기를 기초자치단체가 처리하는 장소와 처리비용을 지원

2. 기대 효과

○ □□□ □□ □□□ 쓰레□□□ □□□□□ □□□ □□ 처□□□□ □□□ □□□□ □□□□,
□□□□□□□□□□□□□□□□□□□□□□□□□□

○ □□□□ □□□□ 풍□□□ □□□□ □께, 환□□□□□ □□□□ □□□ □□□□□ □□□
□□화□□□□

3. 비 고

○ 2012년□ □후□□ □□□ □□□□쓰레□□ □□□ □□□□□ □□ □□ □□□□ □□□□ 얻□
□□ □□□ □□□□ □□□□□ □□□ □□□□□ □□□□□□ □□□□ □□□□□□ 포□□
□□□ □□ □□□쓰레□□책□□□

사업명	② 자연공원 청소사업
관계부처	환경성

1. 개 요

■ 배 경

○ □□□ □□□□□ 쓰레□□□ 증□□□□ □□□, □악□, □□□ □□ 늪□ □□□□ 폐□물□ 투□□□ □□□□□ □□

○ □□□ 붐□□□ □□□□ □□□□□ 몰□□ □□□□□ 황폐화□□□ □□□, □□□□ □□ □□□□ □□□□□ □□□

○ □□□□□□ □□□□□□□□□ □□□□□□ □□□□□□□□ □□□□□ □□□ □□풍□□□□, □□□□ □물□□□□□□ □점□□□□ □□□□ □□□

○ □□□□ □□□□□ □남□ 환□□습□ □□□□□ □□□□, □□□□ □□□□□□ □□□□ □루□ □□□

○ □□ □□□□□ □□□□□ □□□ □□□□□ □□환□□□□□□□ □□□□□ 것□□ □□ □□□□ □□□, □□□□ □□환□□□ □□□□ □□□ □□화□□ □□

■ 내 용

○ □□□ □□□□ □□□황□□ □□□□ □□□ □□□□ □□□ □□□□□ □□□ □□□□ □□□ □□□□□ □□□□ □□환□□□□□□ 추□

- 사업대상지: 국립공원, 광역자치단체지정 자연공원, 장거리자연보도 및 이들과 보전상 밀접한 관계에 있는 주변구역
- 사업내용

① 산악지의 등산로와 행락지 등 이용거점의 세밀한 유지관리(인력에 의한 노면보수, 도목처리, 도표보수·도장)의 충실

② 투기물·표착물·퇴적물의 회수에 의한 자연환경의 유지개선

■ **방 안**

○ [illegible]

2. 기대 효과

○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 [illegible]입[illegible]·[illegible]헌

○ 환[illegible]화[illegible]

3. 비 고

○ [illegible]환[illegible](□린[illegible]□)[illegible](환□□)[illegible]접[illegible]

사업명	[3] 저탄소도시 관련 녹색일자리 창출사업
관계부처	내각관방, 농림수산성 (임야청), 국토교통성, 경제산업성, 환경성 등

1. 개 요

■ 내 용

○ 환□□델□□(총□ 13□□)□□ □□□□□□ 저탄□□□□□ 추□□□□□□ □입□□(70□□ □□□□□□□, 39□□□□□□□)□□□ □코□□□□□□ □급□ □□ 저탄□□□□□ □□□□□께□ □□□□□□□ □□□□□□ □□□□□ 긴급□□

○ □□□□□□□ □□□ □□□□□, □□□□□ □□□□ □□□□□ □□, □□□□□□ □□

○ □□□□, □□□□□ □□□□□ □□□□ □□□□□□□□ □□□□□ □□□□□ □□

- 에코하우스의 보급: 기술기능, 지식의 내용(지역부존 자원의 가공, 단열, 채광시공 등)
- 태양열 패널, 바이오매스자원 등 자연에너지, 재생가능에너지 보급: 기존가옥에 태양열패널설치, 그린 증서화, 바이오매스자원의 연료화 등
- 저탄소도시 에코투어: 지구환경문제, 도시조성 등에 관한 폭넓은 경험
- 산림정비: 간벌, 임도정비 등

■ 관계자의 역할

○ □□□□□□: □□□□□□ □□□ □□□□□□ □□□□□ □□□□□□ □□ □□□□□□□□ □□□ □

○ 광역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기금으로 기초자치단체에 조성, 기초자치단체로 □□□□ □□□□ □□□□ □□, □□□□□□ □□□□ □

○ □□: □□□□□□□□□ □□□□□ □□□□ □□□□ □

2. 기대 효과

○ □코□□□, □□□□너□□ □: □□화탄□□삭□

○ □코투□: 환□□□□□□ 추□, □□□□□객□□ 증□

○ 삼림: □□화탄□□□ 흡□, □□□□□□

3. 비 고

■ 선행 사례

○ □코□□□□□□

- 「환경모델도시」 중 여러 도시가 지역부존자원을 활용한 에코하우스 등의 건설을 실시하기로 함(홋카이도 시모카와쵸, 오비히로시, 교토시, 미즈마타시, 유스하라쵸 등)

○ □□□너□, □□□□□너□□□

- 「환경모델도시」 중 여러 도시가 주택의 태양열 패널의 대규모설치를 예정하고 있음(오비히로시, 이이다시, 토요타시, 교토시, 사카이시, 키타큐슈시 등)

○ □코투□□□□

- 「환경모델도시」의 견학 시, 도시 내의 안내인의 육성과 경력 향상

○ 삼림□□□□□

- 「환경모델도시」 중 코우치현 유스하라쵸가, 「숲 공장 만들기 추진사업」(코우치현) 등의 활용을 상정하고, 건설업 등의 잉여 노동력을 활용한 삼림 및 임도정비를 실시하기로 함

○ 그 외의 "환경모델도시"에 있어서는 여러 도시가 대규모 삼림정비를 실시□□□□□(홋카□□□□□□□쵸, 오□히□쵸, □□□□, 토□타□, 쿄토□□□)

사업명	④ 탄소상쇄 추진지원사업
관계부처	환경성, 농림수산성 등

1. 개 요

■ 배 경

○ 「탄□□쇄」□, □□□□□ 배□□ 온□효□ □□ □□□ 삭□□ □□□ □□□ □□□, □른 □□□□□ □□□□□ □□ 배□삭□·흡□량(□레딧)□ □입 □□□ □□ □쇄□□ 것□ □□

○ 탄소상쇄의 추진으로, 시민·기업 등의 자발적인 온실효과 가스배출삭감□ □□ □□□□□ □께, 배□삭□·흡□프□젝□□ □□□달□ □□□

○ 탄□□쇄□ □□□ □□□ □□·□□□□ 급□□□ □□ □

○ 환경성에서는 탄소상쇄로 이용되는 크레딧으로 하는 국내의 온실효과가스 배□삭□·흡□량□ □증□□ 「□쇄 □레딧」(offset credit, J-VER) □□□ □년 11월□ □□

○ J-VER □□□ □□□ □□프□젝□□□,

- 화석연료의 대신하여 목질바이오매스(미이용 간벌재 등)를 보일러 연료에 활용한 이산화탄소 배출삭감 프로젝트
- 간벌이나 육림(育林) 등을 통한 산림에 의한 이산화탄소흡수 프로젝트
- 소수력 발전이나 목질이외의 바이오매스 발전에 의한 이산화탄소배출 삭감프로젝트 등이 고려됨

■ 개 요

○ □□□□ □□□ □□J-VER □□□ □□ □□ □□ □□·검증 □□□□ □□

○ □□내□ 탄□□쇄 □□□□ □급□□, □□□□

○ □□□□□ □□□□ □□ 탄□□쇄 □□□□□□ □□ □□□□□ □□□□ □□□□ 검토

○ 네트워크화의 지원을 통해 자치체간 또는 자치체와 기업 간 등에 탄소□쇄□□□□□□□□□□

○ □□□□ □□J-VER□□ □입□□□ □□된□ □□□□배□량□□ □쇄□□□ □□□□ □□□ □

■ **관계자의 역할**

○ □□□□□□: 탄□□쇄□□ □□□□ □□□프□젝□□ □□□ □굴·□□ (□히, □림□□□□바□오□□□□□□ □□ □□□□□ □□□□프□젝□)

○ □□: 탄□□쇄□ □□□□ □□(□□드□□□ 책□, □증□□□□ □□□ □), □□□□□□□□□ □급□□, □□□□□□

2. 기대 효과

○ 환□□□저□효□: 탄□□쇄□ □책□□ □□□□, □□·□□□ □□□ □□□ □□□□□□온□효□□□□배□량삭□□□□□□ □□□□□□것□□□□

○ □림□□효□: 탄□□쇄□ □□□□ □내□ □□□□환□□□, □내□□□ □□화□□ □□온□화□책□□□□□□ □□□□□, □□□ □□□ □□□□추□□□□

3. 비 고

■ **선행 사례**

○ 코□□□□□J-VER □□□□(□)루□□□□J-VER□입

- 코우치현 소재 시멘트공장의 보일러 연료를 화석연료에서 미이용 간벌재로 전환함에 따라, 약 1,000t-CO2[32](2007년)의 J-VER이 창출될 예정
- 이것을 도쿄소재의 (주)루미네가 사원의 통근에 관여된 배출량의 탄소활용에 활용하기위해 구입
- 루미네가 J-VER을 구입하기 위해 지출된 자금은, 코우치현 시멘트 공장이 보일러 연료로 미이용 간벌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해당 간벌재의 운반을 그 지역의 삼림조합에 위탁하기위한 비용 등으로 충당됨

32) 이산화탄소 환산톤. 이는 버스 100대가 서울, 부산을 13번 왕복할 때 배출하는 양과 비슷함

사업명	⑤ 숲 경관 재생사업
관계부처	임야청

1. 개 요

○ □촌□ □□□ □□□□□□풍□□□삼림□□□□□ □□·□□□□

- 일찍부터 전망 좋은 곳과 산채의 명소 등으로 유명한 곳이었으나, 해충피해와 관리부족 등으로 인해 옛 모습을 잃어버린 향토의 삼림에 대해, 고목 제거, 도로주변의 수풀제거, 꽃과 나무의 식재, 전망지의 개발, 간벌, 간판의 재정비 등을 실시하여, 경관재생·편의성의 향상을 도모함
- 이용자 증가 등의 대응, 수목의 손상과 불법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순찰·환경표식 주변의 풀베기 등을 실시

2. 기대 효과

○ □□림□ □□□ □□□□□ □□, 삼림□□ □□□□·□□□□ □□

○ □촌□□□□ □□□□□□□□□□□ □□□□ □□□

사업명	⑥ 음식물쓰레기 에탄올화 모델사업
관계부처	환경성

1. 개 요

○ □□□□ □□물쓰레□□□ □효□커□ □탄올화□□□ □델□□□□□ 「□토□□□□□□□□□」 □□□□□□□ □□□□ □□□□□□□□□□□□□ □□폐□물처□□□□□ □환

○ □□□□□□□ □급·□□□□□ □□□ □□□ □무□□ □□□□, □□물쓰레□□□ 바□오□탄올화□□ □□□

○ □□□□ □탄올□□ □□□□□□ □솔린□□ 혼합□□, □□□□□□□□ □□□□□□ □□□□□ E3□□(바□오□탄올□ □□)□□ □□

■ 관계자의 역할

○ □□□□□□: □□□□□ □급□□□□□□□ □□, □□□□□무□□□ □□□□□□□ □□·□□□ □

○ □□□: 바□오□탄올·E3□□, □□

2. 기대 효과

○ □□쓰레□□□ □□□ □□□□혁□□추□□□, □□□□ □효□□□□ □□□ □□□□ □□□

○ □□물쓰레□□□ □효□□□□ 추□□□, □□□□□□□□ 쓰레□□□□□□ □□□□ □□□

○ 바□오□탄올□□ □□□□ □□□CO2 삭□효□□□ 얻□□ □□

○ □□물쓰레□□ □□□□□□ □□□ 폐□물처□□□□□ □□□ □□□□ □□□, □□□□ □□□□효□□□ 얻□□ □□

○ 바□오□탄올□ □□□□ □□□□ 환□□□□□ □□□□□ □□□□

3. 비 고

○ 후쿠오카□ □(縣), 북큐슈□ □(市)□□ □□폐□물□□ □탄올화□ □증□□: □□너□·□□□□종합□□□□(NEDO)□□ □□□□□ □□□ □□□□□□ □□□, □□, □□□폐□물□□ □□□□□ □□□ □증□□□ □

○ □□□ 강□□·□·□□□급□쓰레□□□ □탄올화·바□오□□□ □□□증□□: □□□□□ □□□□ □□□ □□□□ □증□□□□ □□□ □

사 업 명	7 야생동물의 생활환경피해대책
관계부처	환경성

1. 개 요

○ □□화□ □□□□□ □□□□ □□ □촌□□ □□□ □□ 포□□□ □□□ □□□ □ 삼림□ 증□□ □□ □본□숭□□ 곰 □□ □□□□ □몰□ □□□□ □□

○ □□□□, □악□□ □□□ □□ 급증□ □슴□ □□ □□□물□ 피□ □ □□□□, □□□ 피□□ 증□□□ □□

○ 삼림□ □□□ □벌□□□□ □□□□□□ □□ □□□□□ □□□□□ □□□□□ □□□□□ □□□□ □□ □□□ □□환□피□ □□□ □□

○ □□ □□, □ □□ □□□□□ □□ □획□ 입□□□ □슴□ □□ □ □□□□□□책□ □□□□, □□□□□□ □□□□ 피□□ □□

○ □래□ □□□□ □□□ □□□ □□□□ □□□ □□

■ 주요 메뉴

○ □□□ □□□□□ □ □□□ 삼림□ 풀베□, 마□ □ □□□□ □□□ □□□ □□□ 완□□□ □□ □

○ □□□□□ □□ □□□ □□□□ □□ □책(防柵) □□

○ □□ □ □□□ □□ □슴 □ □□□□□ 포획 □

○ □렵□허□득 □□□□ □

■ 설비·인원 등의 기준

○ □□□□□□, □□□□□□ □□ □□□□

■ 이용자의 규모

○ □□□□□□, □□□□□□ □□ □□□□

■ **이용료**

○ □□

■ **위탁비 수준**

○ □□□□□□, □□□□□□□□□□□□□□□

■ **관계자의 역할**

○ □□□□□□: □□□□, □□□□□□□□□□□□

○ □□□□□□: □□□□, □□□□□□□□□□□□□□□□□□□□□□□□, □□□ □□□□□□□□□□□□□□□□□, □□□□□□□□□□□

○ □□: □□□□□□□□□□□□□□□□□□□□□□□□□□□□□□□

2. 기대 효과

○ □□□□□□□□□, □□□□□

○ □□□□□□□□□□□□□□□□

○ □□□□□□□□□□□□□□□□□□□□

사업명	8 외래종 방재를 통한 환경개선
관계부처	환경성, 농림수산성

1. 개 요

○ □□□너□□□□□뉴□□□, □□□□□□□□□□□□□□□□□□□□□□림□□□□□피□□□□□□□□□래종□□□□□□□□□□□□□□□□효□□□□□□□□□□□□□, □□□물□□□□□□□□□, □□□□□림□□□□□□□□□□□

2. 기대 효과

○ □□□□□□□□□□□□□□□□□□□□□□래종□□□□□□□□□□□□□□□□□□□□□□□□□림□□□□□□피□□□□□□□□될□□□□□□□□

○ □□□□□□□□□□, □□환□□□□□□□□□□□□□□□□□효□□

3. 비 고

○ □림□□□□□□□□□□□피□□책□□□□□□□□□□□□□

○ □□

사 업 명	9 생물다양성 온난화영향 조사사업
관계부처	환경성

1. 개 요

■ 배 경

- □후변화□□ □□□ □□□□패널□□ □4차□ □□□□□□□□ □□□, □□온□화□□ □□ □□□ □물□□□□□ □□□□ □□□□받□□것□□□ □측□□□ □□
- 2007년□11월□□ 책□□ 「□3차□ □물□□□□□□□락」□□□□ □□온□화□□ □□□ □물□□□□□ □□□□피□□ □□ □□□ □□□□ □□□□ □□□□□, 온□화□□□□ □□□링□ □□□□ □□□□ □□□□□□ □□□
- 2006년□6월□□ □□□□ 「□물□□□□본□」□□□□ □□온□화□ □□□ □□□ □움 □□ □□□ □책□□추□□□ □□□□□, □□□□ □□□□ □□□□ □
- □□□ □코쿠□ 남□□□ 큐슈□ □남□□□□ □□□□□ □□□□□□□□ □□□□□□□□ □□□□□, 왕벚꽃□무□□ □화□□□빨□□□□□, □□□□□ □□온□화□□ □□□ 것□□□ □□□□□ □□□□ □□□□□ □□□□ □□□□ □□□□□ □편□□□ □□□□ □□□, □□□□□ □악□□ □□

■ 내 용

- □□, □물□□ □□□ □□□득□□□ □□환□□□ □물□□□□□ □□□□ □□□ □□□ 졸□□□□ □□□□, □□□□ □□량□ □□□ □□·□□□□□ □□, □물□□ □화, 철□□□왕래□□□ □, □□온□화□□ □른□ □물□□□□□ □□□□ □□□□ □□□□ □□□□□□ □□□□□□ □악□□ □□
- □□□□ □□□□□□ □□□□처□□□□ □□□ □□□ □□·□석□□, □□□□ □□□ □□□ □□□ □□□ □□□ □물□□□□□ □림□, □염□□□ □□□□□ 온□화□□□□ □측□□ □□□□□□

2. 기대 효과

- □□□□ □□환□□ □□□□온□화□□ □□□ □□□ □□□ □□□□ □악
- □□온□화□□ □□□ □물□□□□□□ □□□□ □백□□□ □□□□, □□□□□□□ □□□□□ □□□ □□□□ □측
- □□환□□□□□□□ □□□□ □□□□ □□

사업명	⑩ 쓰레기 투기 감시 및 방치쓰레기 수거사업
관계부처	

1. 개 요

■ 내 용

○ □□□□□□ 쓰레□□ 투□□□ □루□□□□ □□□□ □□□□□□ □화□□□□ 추□□□□ □□□ □□□□ □□□□□□ 쓰레□□ 투□□ □□□ 패□롤□□ □□

○ □□□□□ □□□□ 쓰레□□□ □□□ □□ 처□□□ □□

■ 관계자의 역할

○ □□: 본□ □□□□ □□□□ □□□□□□□ □침책□, □□□□

○ □□□□□□□: □내□ □군□□□□□□□ □□, □황□□(총괄)

○ □□□□□□□: □□□ 패□롤·□□□ □□□□□ □□, □□□□ □□□□

2. 기대 효과

○ 길□□□□ □□□□ □□□ 환□□□ □□, □름□□□ □□환□□□ □□, □□□□ □□□□□ □□화□ □□□ □헌

사업명	⑪ 환경보전사업자 투자촉진 사업
관계부처	후생노동성, 금융청

1. 개 요

○ □□□책□□ □□□□ □□□□□□□□ □□□□□□ 강화□□□□ □□□□□ □□□□□□ 추□□□, □□□ □□□□□□ □래□□□ □□□□며, 환□□□□□□ □□□□ □□□□□□ □□ □융□□□□ □□□□□□□ 투□□□□ □□□ □□□□ □□□□□□ □□□것□□ □□

○ □□□ □□, □□□□ □융□□(□□□□□□ □□□ □□□□□□□ □□)□□ □□□□ □□ □□□ □□(□□□□□□ □□) (1□□□ 1천□엔□ □□□× 2□□× 47 □□□)

○ □□□□ □□, □□□, 환□□□ □□ □□□□ 측□□□□ □극□□□ □책□□ 추□□□□ □□□□□ □□·□굴□□, □□□□□□□□ □□□□ 포□□□ □□□□ □코펀드□ □□□□□□

○ □□투□펀드□□ □□□□□□□ □□펀드□□ □□□ 투□□□ 투□□□ □□□□□□ □□□□, □□□ □□□ □□□□□□□ □□□□급□ 증□□□□ □□□□□□□□ □□□□ □□□□

2. 비 고

○ □□□책·환□□책□□ □극□□□□ □□□□ □□□□ □□□□ □□□□ □후□ □□□□ □□□□, □융□□, □□□□□□ □□□□□□□ □□□될□ □□□□

4. 교육 청년 지원

사업명	① 학교 서포터
관계부처	문부과학성

1. 개 요

■ 내 용

○ □□□□같□□□□□□□□□□□□□□□□□□□□

- 초·중·고등학교 등에서 사회에서 활약하는 인재나 기업 퇴직자, 지역 기술자, 퇴직교원 등을 활용하여 수업 실시나 교직원 보조 지원
  - 예: 수준별 소규모그룹지도, 초등학교에서 전문과목교육의 내실화, 장애아동 돌봄, 학교 도서관 보조, 중학교에서의 무도, 고등학교에서 취직지도 지원 등 교육문제에 대응한 교육활동 보조사업 그리고 과학기술과 사회와의 연결 등 아동의 과학기술에 관한 이해를 촉진
- 지역 인재를 활용하여 초·중·고등학교에서 체험활동의 내실화
  - 예: 아동이 농산어촌에서 자연체험활동 등 다양한 체험활동 시, 체험농가 선정부터 체험지도자(instructor)의 파견 등을 조정하는 인재를 고용하는 사업
- 독서활동 추진
  - 예: 학교도서관에 사무직원 배치, 도서 조회를 시행하는 등 다양한 독서활동추진
- 집단따돌림이나 등교거부 등의 문제를 가진 아동이 적절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원 등의 외부인재를 활용하여 교육상담이나 학생지도 내실화
  - 예: 「학교 카운슬러 등 활용사업」및「학교 사회복지사 활용사업」으로 배치되고 있는 임상심리사나 사회복지사 등의 전문가 등과 학생의 상담업무를 적절하게 시행할 수 있는 인재를 활용하고 교육상담체제를 한층 더 내실화
- 학생의 풍부한 마음이나 건강한 신체를 기르는 보조 활동을 내실화 하기위해 스포츠, 문화, 과학 등에 관련된 지식과 기능을 지는 인재를 활용한 사업
- ICT(정보통신기술)에 관련된 경험이 풍부한 인재를 보조교사 등으로 하여 과학에 받아들이고, 수업지원이나 교내 네트워크의 관리 등을 통하여 ICT를 활용한 교육활동을 내실화

■ **필요한 인원·고용 인원 등**

- 바람직한 목표 고용인원은 특별히 존재하지 않음
- 그런데 아이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관점에서, 교직원의 교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바람직한 질을 갖춘 인재를 고용할 필요가 있음
- 학교 측과 사전에 충분히 조정·상담 후에 사업에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함

■ **위탁비 수준**

- 고용을 실시하는 인력에 따라, 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가 자유롭게 설정

■ **유의점**

-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국고보조사업을 이름만 바꾸어 실시하는 것은 불허
- 단, 국고보조사업에 추가하여 외부인재를 활용한 교육활동을 전개하는 것은 가능

2. 기대 효과

○ □□□□ □□□□ □□□□ □□□□ □□□□ □□□□□ □□□ 받□□ 것□□ □□□□ □□ 효□□ 증□

○ □□□□□□ □□□ □□□□ □□□ □□□□ □□□□□

○ □□□□□ □□ □□씩□ □□□□ □□□□□ □□□□ □□□ □□□□ □□ □□□

사업명	② 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육지원사업
관계부처	후생노동성

1. 개 요

■ 내 용

○ □□□□ □□ □□□□□□ □□□□ □□□□□□ □□□ □□□□ □□□□ □□□□□□ □□□ □□□ 턴□□ □□□ □격□□□ □□□□□ □□□□□ □□□ □□□□□□ □□□□□ □□□□□ □□□ □□□□□□□ □□□ 배□□

○ □□ □□□□ □□□□□□ □□□□ □□□□□□ □□□□□ □□□□□□ □□, □□□□퇴□□□ □□□ 배□□□□ □□□□□·□□□□ □□□ □□·□□

- 직장체험수입기업 등의 개척, 직업·취직에 관한 강화·상담·교재작성, 고교중퇴자 등에 대응한 방문상담·지원 등

2. 기대 효과

○ □□□□ 받□□ □□□□ □□□□ □□□ 흥□·□□□□ □□화□□ □□□□□□ 강화□□□ 프□□[33]·□□[34]화□, □□□□□□ □□□□□□□ □□□□ □□□□

○ □□□□ □□□□ □무□□□□ □□□□ □□□□□□□□□□ □□□ □□□ □□□□ □□□ 습득□□ □□□

33) 프리터(Freeter)는 일본 후생노동성의 정의에 의하면, 연령 15~34세로 재학생과 여성 결혼자를 제외한 자 중, ① 현재 일하고 있는 자로 직장에서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으로 불리어지는 자, ② 완전실업자 중 찾고 있는 일의 형태가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인 자, ③ 비경제활동인구 중 희망하는 일의 형태가 '아르바이트/파트타임'으로 가사 및 통학이나 취직 내정도 되어 있지 않은 자임.

34) 니트(NEET: Not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는 15~34세자 중 비경제활동인구 중 가사나 통학도 하고 있지 않는 자임.

사 업 명	③ 직업교육의 외부인재활용사업
관계부처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경제산업성

1. 개 요

■ **내 용**

○ □□□□□□□□ □□□□□ □□□□ □□□□ □□턴□· □□□□카□슬□□ □□□□ □격□, □□□□ □□□□□□□□· □□□□□□□□ □□□무□□□□□ □□□□□ □□□· □□□□□□ □□□□□ □□□□□ □격□□, □□□□□ □□ □□졸□□후□□ □□□□ □□□□ □□□ □□□ □□□ □□□ □□□□ □□□□ □□□□ □□□ □□□□ □□□□ □□□ □□□□ □□□□ □□□ □□□□ □□□□□ □□□ □□□□□ □□□

○ □□□□□□ □□□강□·강좌□ □□□ □□□□ □□□□ □□□□ □□변화, 오늘날□□ □□□□ □□□□□ □□□□□□□□ □□□□□ □□□ □□□ □□□ □□□□, □□□□ □□□□□□ □□□□ □□□□

○ □□□□□□ □□□□ □린□ □□□□, □□알□·□□□ □□□ □□□ □□□□ □□□ □□□□ □□□

2. 기대 효과

○ □□□□□□ □□□□□□ □□□강□□ □□□□ □□□□□□ □□□□ □□□□ □□□ □□□□ □□□□□□ □□□□ □□□□□□

3. 비 고

○ □□□□ □□□□ □□□□ □□□□ □□□□□□□ □□□□□ □□□□□□□ □□□□ □□□□□ □□(□□)□□□것□□검토

사업명	④ 대학의 지역공헌 및 교육기능 충실위한 업무지원사업
관계부처	문부과학성

1. 개 요

■ 내 용

○ □□·□□□□□□□□ □□□□ □□□□□ □□□□□□□ □□□□□ □□□□ 같□□ □□□헌, □□□□□□□□□ □□□ □무□□□□ □□□

○ □□악화□□ □□□□□□ 내□□□□□□ □□□ □□□ □□□ □□□□ □□□□□ □□□ □□□□□, □□□□□, □□□ □□□ □□□□□□ □□□□□□□□ □□□□□□□□□ □□□□□ □□□□□ □□·□□□□□□ □□□ □□ □□□□□□ 종합□□□□ □□□□□□ □책□□ □□□

○ □□□ □□□□□□□□ □□□□□□□□□ □□□ □□□ □, □□□□□□, □□□□□□, □□□□□ □□□□□ □□□ □□□ □□□□□ □□□□

1. 대학 등의 업무지원 예

- 대학·전문대학의 도서관, 실험시설 등을 지역 주민·기업 등에게 야간개방하거나 평생학습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사무·관리보조를 시행
- 학생의 취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전문대학의 취직부 등에서 커리어 컨설턴트 등의 자질을 지닌 실직자를 고용하여 취직상담이나 취직활동지도의 업무보조를 시행
- 문화·스포츠 등의 대학·전문대학의 학생활동에 대한 지원을 시행
- 대학·전문대학에서 컴퓨터 조작 지원을 시행하는 PC자원봉사자나 교내의 컴퓨터 네트워크의 보수 관리를 시행
- 아이를 지닌 여성교원·연구자의 교육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전문대학 내에 마련된 탁아시설에서 보육사 등의 자격을 지닌 실직자를 고용하여 운영을 시행
- 청각장애학생의 학습 지원을 위한 노트 테이킹(강의의 내용이나 주위의 모양을 문자로 전하는 필기통역)의 보조를 시행

- 고용대상

① 실시업무에 따라 대학·전문대학은 실직자·비취로자에 대해서 일정의 자격 등의 요건을 마련

② 고용된 사람은 대학원 수료 후 계속해서 대학원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자도 포함

2. 산(産)·관·학의 제휴에 의한 취직부터 취로까지의 종합적인 지원

- 여러 대학이 참가하는 대학 컨소시엄과 지방공공단체, 경제단체 등이 취직의 정보교환, 취직·취로상담을 합동으로 실시

- 지역의 요구에 대응한 취로에 연결되는 비즈니스 매너 강좌, 자격취득을 포함한 각종 학습기회의 제공

■ **위탁비 수준**

○ □□ □□□ □□□□ □□□□□ □□□□ □□□□ □□□ □□□□□□□□□ □□□□□ □□

2. 기대 효과

○ □□·□□□□□□ □□□·□□□□□ □□□ □□□□·□□□□□ □□□□□ □□□□□□□□□□□□□□□습□□□ □□□□□□□ □□□□ □□□□□ □□화

○ □□·□□□□□□□□□□□□□□□, □□□□□□□□□□□□□□□□□내□화

○ □·□·□□□ □□□□□ □□□□ □□·□□□□□□종합□□□□책□□□

3. 비 고

■ **선행 사례**

○ □□□ □□□ □□□□□□□ □□□ □□□□ □□턴□□□ □□□□□ □□□□□□□□ □□□□□□□□□□□□□□□베□□□ □□□□□ □□□효□□□□ □□□□□□□□

○ □□□□□□□ □□□입□□□□ □습·졸□·□□□□□□□□포□□□종합□□□□ □□□□□□책□□□

○ □□□ □□□□ □□□□□□□ □□□ □□□엄□□□ □□□□ □□턴□□□ □□□□□□□ □□□□□□□□□, □□□□□□□, □□□□□□□□□□□□□□□□□□□, □□□, □□□□□강좌□□□□□□□□□□

사업명	⑤ 대학의 지역공헌사업
관계부처	내각부, 문부과학성

1. 개 요

○ □□□□□ □□□□□□ □□□ □습□□ □점□□□□ □□□□헌□□, □□□습□□ □□,
□□□□□□□□□ □□□ □□□□□□□ □□□□□ □□□□□□□□□□ □처□□□ □□

○ □히□ □□□□□□ □□□□ □□□□□□ □□□ □□□□□□ □□□□ □□□□□□ □□
□□□□ □□□□ □□□□

○ □□□ □□□ □□□□□ □□□□□□ □□□□□ □□□□□ □□(□□□□□□□□ □□□□□□□ 퇴
□□□ □)□□ 코디□□□□□ 강□□ □□□□□ □□□□□□ □□□□헌□□□ □□

2. 기대 효과

○ □□□□화, □□□□□□□ □□□ □□□□□ □□□ 물□□ □□□□□ □□

3. 비 고

■ **선행 사례**

○ □□□□□□□□ □□□□□□□□□ □□□□□ □□□ □□□□□□□ □□□□□□ □□□ □□
□□□ □□□□□□□□□□ 받□□ □□□□ □□□□□, □□□ 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명	⑥ 지역산학연계 직업교육지원 사업추진계획
관계부처	경제산업성, 문부과학성

1. 개 요

■ 내 용

○ □□□□ □·□□□ □□□□□□ □□□□□ □□□□, □□□□□□ □□□□ □□□□□ □천□□□ □□□□□ □□□□ □□□□ □□□□ □□

○ □·□□□□□ □□□□□ □□□□□□ □□□□ 코디□□□□□□ □□□□□ □□□□ □□, 코디□□□□□ 배□□□□ □□□□□ □□□□ □□□□ □□□□ □□

○ □□□□□□ □□□□□□ □□□□□□ □□□ □□□□ □□

○ □·□□□□□ □□□□ □□□ □□□□□□ □□□□ 코디□□□□□□ □□□□□ □□□□ □□, 코디□□□□□ 배□□□□ □□□□□□ □□□□ □□□□ □□□□ □□

○ □□□□□□ □획□□□ □내□ □□□ □□□□ □□

○ □·□□□□□ □□□□ □□□ □□□□□□ □□□□ 코디□□□□□□ □□□□□ □□□□, 코디□□□□□ 배□□□□ □□□□□□ □□□□ □□□□ □□□□ □□

○ □□□□ □획□□□ □□□□ □움□ □□□ □□□□ □□

○ □□□□ □턴쉽□ □□□□□□ □□□□ 코디□□□□□□ □□□□□ □□□□ □□, 코디□□□□□ 배□□□□ □□□□□ □□□□ □□□ □□□□ □□

○ □턴쉽□ □□□□□□□ □움□ □□□ □□□□ □□

■ 필요 인원

○ 코디□□□□□ 배□□□□ □□□□ □□□□, □□□□ □□□□□□□ □움□□□ □□□□, 검증□ □□ 코디□□□□ □무□□ □□□□ □□ □□□□

■ 관계자의 역할

○ □□□□□□·□□□□□□: □□□ □□□□ □□□□□ □□□□, □□□□□□ □□

○ □□: □델□ □□

2. 기대 효과

○ □□□□□□ □□□□ □□□□□ □□□□ □□

○ □□□□□홍□□ □□□□□□□ □뮤□케□□ □□화

○ □□□족□ 완화

○ □□□ □□□ □□□ □□ □□·프□□ □책

3. 비 고

■ **선행 사례**

○ □□□ □□ □□코디□□□ □□·□□□□템 □□□□

○ □□□강□□□□ □□□□프□젝□

○ □□ □□□□□ □□□□

○ □□□□ □천□□□입 □□

○ □□□□ □□□□ □□□ □□·□□□□템 □□□□ □(□□□□□ □델□□)

■ **기간 후 취급**

○ 2, 3년□ □□ □□□□ □□□ □□ □□□□ □□□ □□□□. □□□코디 □□□ □□ □ □□ □□□ □□

사업명	⑦ 자연체험환경 학습사업
관계부처	국토교통성

1. 개 요

■ 내 용

○ □변□ 환□□□□□□ □□□□□□ □□□□ □□ □□□□□□□ □□□□ □□□□□ □□ □□□□□□습□□

○ □□ □□□□□□□, □□□□□□□□ □□□□□□ □□□□□ □□□, □□□□□□ □□ □□□□□□ □□ □□□□□□□ □□ 후 □□□□ □□

- 당초의 연수기간은 2주 정도
- 커리큘럼은 각 운영주체가 실적이 있는 지역활동조직의 협력을 얻어 작성
- 연수 후에 자연체험학습의 기획입안부터 운영까지 시행하는 인력양성을 목표로 함

■ 위탁 의뢰대상의 기준

○ □□□□□□ □□□□□□□□□ □□□□

○ □, □□□□□습□□ □□□□□ □□□□ □□□ □□□□ □□□□□ 코디□□ □□ 배□□ □□ □□

■ 이용자의 규모

○ □□□□□□□□ □□□□

■ 관계자의 역할

○ □□□□□□: □□□□(□□ □□□□□□□ □□·□□), □□□책□□ □□ □

○ □□□□□□: □□□□□□□□□□□ □□□□□□□□ □□, □□□□□□□□□□ □□□□□ □□□, □□□□□□ □□, □□ □□ □

○ □□: □□□□□□□□ □□ □□□, □□ □□ □

2. 기대 효과

○ 환□□□□□ □□

○ □□□□ □□□□ □□: □□ □□□□□□□□ □□□□□ □□ □□□□□

사업명	⑧ 차세대 폐기물처리작업원 육성사업
관계부처	

1. 개 요

■ 내 용

○ □후□ □□□□ 증□□□ 차□□□ 폐□물처□□ □□□□ □□□□ □년□ □□□□□ 긴급□ □□□□, □□□□ □□□ □□□□ 솔□□□□ □□□□ □□□□□ 폐□물처□□□□□□ □□□

○ 폐□물처□□□ □□□□ □□□□□□□ □□□ □□□□ □□□□□ 차□□□□□□ □승□□ □□□

■ 설비·인원 등의 기준

○ □□□□□□ □□□□□□□·□□□□□□□□ □□□□□□

- 예: 취직하지 못한 고졸·대졸의 노동자에 대해 기술관리자의 자격을 지닌 자, 또한 오랜 실무경험을 가진 직원을 초빙하는 사업자의 경우 청년기술자의 급여지급을 도모

■ 위탁비 수준

○ □□□□□□□·□□□□□□□□ □□□□□□

○ □□□□□□□□□□□□ □□□□□□□·□□□□□□ → □□□□□□ □□□□ □□□□ □□

■ 관계자의 역할

○ □□□□□□□: □□□□ □□□□ □□□□□□ □□, □□□ □□□ □

○ □□: □□□□□□□□ □□□ □□□□ □

2. 기대 효과

○ □□폐□물□ □□처□□ □□

5. 관광진흥 지역산업

사업명	① 매력 있는 관광지개발사업
관계부처	관광청

1. 개 요

■ 내 용

○ □□□□□□□□바□□□□□□

- 인프라 정비사업

① 재원:「지역고용창출추진비」(총무성)

② 사업주체: 자격제한 없음

③ 새롭게 관광 매력 창출

가. 관광체험형 시설(노천탕, 족탕, 전통산업체험시설 등)의 정비 및 개선

나. 관광자원의 재건, 수복

④ 관광 환경의 정비

가. 관광객 안내소 등의 설치·개수

나. 관광지의 화장실, 산책로 등 정비

⑤ 숙박시설의 유지 등

가. 숙박시설의 지진대책·방화대책

나. 폐업호텔·여관의 철거

- 소프트 사업

① 재원:「향토고용재생특별교부금」(후생노동성)「지역고용창출추진비」(총무성)

② 사업주체:「향토고용재생특별교부금」을 활용한 경우 실시주체는 민간기업 등(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의 직접실시는 불가)

③ 새롭게 관광 매력 창출

가. 농림수산업이나 전통산업, 자연 등을 활용한 모내기·벼 베기 체험, 야산 트레□, □인□체험, 전통공예체험, 에코투어 등의 체험투어 개발, 판매 및 인재육성 등을 □□한 체제정비

나. 지역의 특산품을 활용한 직거□소의 신설, 아□시장의 개□

④ 관광 환경의 정비

가. 관광안내소, 도로의 역에 안내원을 ▫원하여 관광정보제공을 충실

나. 지역관광정보, 역사, 자연, 산업 등을 안내하는 관광가이▫나 ▫▫인 대상 가이▫를 시행할 수 있는 통역 안내사를 고용한 관광안내체제 정비

다. 관광지 주차장 등에 경비원을 ▫원, 또는 방치자전거 정리원 ▫원

라. 인력거 등을 통한 관광안내, 임대용 자전거의 대출

○ □□□□□□□바□□□□□□

- 인프라 정비사업

① 재원: 「지역고용창출추진비」(총무성)

② 사업주체: 자격제한 없음

③ 관광 환경의 정비

가. 관광안내판의 ▫설, 정비

- 소프트사업

① 재원: 「긴급고용창출사업」(후생노동성)「지역고용창출추진비」(총무성)

② 사업주체: 민간기업 등, 광역자치단체에 의한 직접실시도 가▫

③ 관광 환경의 정비

가. IT 기기를 활용한 관광정부의 전자화(▫이터베이스화), 다양한 ▫▫어 안내

나. 여행출발 전 관광지안내 정보 제공시스▫(여행일정 ▫성지원, 관광정보 ▫▫)의 개발

다. 관광지 관광지도 ▫성

라. 지역이 하나가 ▫ 관광진▫ 대책을 견인하는 관광지역 프로▫서 활용

④ 매력 있는 관광지를 만들기 위한 기초조사

가. 관광지에의 교통 수요조사의 실시

나. 관광객 통계·관광소비액 통계 조사

다. 여행자 만족도조사 실시

○ □□□ □□메뉴□□ □택□□□ □□□ □□□ □□□ □□□□□ □□□□□□ □께□ □□□□□□□□

○ □□메뉴□□ □택□□ □□□□□□□□□ □□□□□□□ □□□□ 「□토□□□□□□□□□」□□□□ □□□□ □□□□ □□□□□ □□□□□ · □□□□□□ □□□ □□□□□ 것□□□

■ **관계자의 역할**

○ □□□□□□: □□□□□□□□□ □□·□□, □□□□□ □□□□ □□, □□□□□□ □□□ □

○ □□□□□□: □□□□□□□□□□□□ □□□□□□□□ □□, □□□□□□□□□ □□□□□ □□□, □□□□□□ □□□

○ □□: □□□□□□□□□ □□□□획책□ □□□ □□□ □□□, 마□ □□□□ □□□ □□□ □□□□□ □□

2. 기대 효과

○ □□□□ □□□ □□□□ □□□ □□□□□□□□ □□□□ □른 □□□ □뮤□티□ □□화 □□ □□□□□□ □□화

사업명	② 지역산업 판로확대 및 경쟁력강화
관계부처	총무성

1. 개 요

■ 내 용

○ □□□ □□□□□ □□□ □□□□□ □□□합□ □□□ □□□□□ □□□□ □색□ □□□ □□□□ □□□ □□□포털□□□□□ □□

○ 포털□□□□□□ □괄□□□ □□□□ □□□□·□□□ 접□(□□□□), □□□□□□□ □□, □□□□□ □□□ □□

■ 사업 규모

○ □□□□□□ □□□□화, 포털□□□(HP)□□ □□, □□·□□□ □□□ 포□, □□ 1,000□엔~1억엔□ □□□

2. 기대 효과

○ □□□□□□ □□□□ □내□□□ □□□□□ □□□ □□□□□□ □□□□, □□□□□□ □□화□□ □□□ □□□□ □□□□

사업명	3 IC태그를 활용한 농산물 브랜드화
관계부처	총무성

1. 개 요

■ 내 용

○ □□물□ □□□□ □□□ □□□□ 높□□□□ □□□, □□ □□□ □□□□ □□□ □□□□□□ □□□□ 브랜드화□□ □□□□□□□ □□□ □□물□ □□ □□□□□□ □□□ □□ □□□□□□□ □□□□ □□□□ □□□□□□ □□□□□□ □□ IC□□□□ □□□□ □□추□□□템(traceability)□□□ □내□□□ □□□ □□□□□□□□ □□□

■ 사업 규모

○ □□□□□□ □□□□□화, □종□ □□템, □□□(HP)□□ □□, □□·□□□ □□□ 포□□□□ □천□엔~1억엔□ □□

2. 기대 효과

○ □□□ □□□□ □□□ □□□□□□ □□□□□□ □□□□ □□ □□록□ □□□격□□ □□□□□□ □□□ 획득, □□□□□□ □□□ □□□ □□

사업명	④ IC카드를 활용한 지역교류 촉진사업
관계부처	총무성

1. 개 요

■ **내 용**

○ □□□□□□ □□□□ □□□□□ □□□□ □□ □□록 □□□헌□□□□ □□□□ □□□□「□□포□□」 □□템 □□

○ □□포□□□□ IC카드 □□□ □□□□□ □□□□, □□□점□ □□□□ □□□□, □□ □□넷□□ □□□□□ □□□점□ □□ 홈페□□ □□□□ 온□□□ □입□□ □□□□□ □□□□

○ □□ □□□□□ □택□□□ □□넷□□□ □□포□□□□ □□내□□□□ □□□□□ □□□□□□□

■ **설비·인원 등의 기준**

○ □□□점□□ □□□ □□□□□ □□받□□ 포□□□□ □□□□ □□ □□□ □말□□□ □□□□ □□

■ **이용자의 규모**

○ □□□□□□□□ □□□□

○ □□□□□□ □□□□□ □□□ □□□□ □□많□□ □□□□□ □□□□□ 것□□ 바□□□

■ **이용료**

○ □□무□□

■ **위탁비 수준**

○ □□포□□□ □□□□ □□□ 홈페□□□□ IC카드□□ □□·□□, □□□점□□ □□□□ 포□□□ □□□말□□□ 배포 □□□ 포□□□□ □□ 천□엔 □□□

2. 기대 효과

○ □□□ □□□ 증□: 퇴□□□ □□□□□□ □□□□□ □□□ □□□□□□ □□□욕□□ 높□□□□□ □□□□□□ 강화

○ □□□점□□ □□□ □□화: □□□점□□□□□ □□□ □□□□ □□포□□□ □□□□ □□□□□ □□□□□□ □□

사업명	⑤ 웹 통신기술을 활용한 예술활동 촉진사업
관계부처	총무성

1. 개 요

■ 내 용

○ □□□□□□ □□□ □래□ □내□□□□ □□□□□ □빙□□□ □□□□□□ □념□□ □□□□환□□ □□ □□환□□□ □□

○ □□□□□ □□□□□□ □□□□ 화□□화□말□□ □□□ □□□□□ □□·마□□□□ □□ □□□□(□□·콘텐츠)□□ □달□□□ □□□ □□□□□ □□□□□□ □뮤□케□□□□ □□

○ □내□□□□ □□□□□□ 웹□ □□□□□ □□□환 SNS(Social Network System, □□□□□□)□□□ □□□□□ □극□□□ □□

○ □빙□□ □□□□ □변□□·□□환□□□□□ □본□□ □□□□□□ □울□□ □달□□□□ □□□ □□□□□□ □□□□□ 쉽□록□ 배□□□

■ 설비·인원 등의 기준

○ □내□□□ □□□□□□ □□□□□□ □□□ □□(웹□ □□□□□ □□□ □)

○ □□·마□□□□ □□□ □□□□□□ □□□ □□□□ □□□□ □달□□ □□, 화□□□□말□□□ □□□

■ 이용자의 규모

○ □□□□□□□□ □□□□

○ □, □□□□ □□□□ □□□□숫□□□ □□□숫□□□ □□□ □□□□□□□ □□□ □□□

■ **이용료**

○ □□□□□□□□□□□□□

○ 웹□ □□□□□□ □□□□□ □□□□, □□·마□□□□ □□□ □□□□□□□ □달□□□ □□□□□ □□□□□□□□ □□□□□□징□□□□ □□ □□화□□ □□□□□□

■ **위탁비 수준**

○ □□□ 웹□ □□□□□□ □□, SNS□□ □□·□□, 화□□□□말□□□ □□□ □□□ □□□, □□□□□□□ □□□ □□□□□□□□ □□□□□□ □□□□□□□□□ □접□ □□, □□□ □□□ □□□□□□ □□□□□□□ □□□□□□ □□, □천□엔~1억엔□ □□

2. 기대 효과

○ □□□□□ □빙□□□ □□□□□ □□□ □□□□ 접□□□□□ □□□ 내□□ □화·□□□ □□□□ □□화

○ □□□□ □□□□□□ □빙□□□□□ □□□ □□□□□□□ □□□□□□□□ □□□□□□ 증□

사업명	⑥ 지역문화재를 활용한 지역활성화사업
관계부처	문화청

1. 개 요

■ 내 용

○ 2008년□ 11월□□ 「□□□□ □□□□ 풍□□ □□□ □□ □□□□ □□□□ □률(□□마□□ □□□□)」□□ □□□□□ 「마□□□□□ □□」□□ 「□화□□□□□」□□□ □□□□ □□□ 「□□□□ 풍□」□□ □□·□□□□□ □책□□ □□□□□ □□□□□ □□

○ 본□ □□□□ □□□□□□ □□□□ □□□□□ □히□ □프□□ □□□□ □□□□ □□□□□ □□□ 「□□□□ □화□」□□ 「□□□□ □□」□□ □□□□ 마□□□□□□ □□

○ □□□□□□□ □□□□ 같□□ □□□□ □□□

- 문화재를 가까이 할 기회 확대

① 문화재의 전시·공개에 대한 설명을 하는 가이▫ 배치를 통해 문화재에 대한 이해 ▫진

② ▫소 등을 통해 문화재의 유지·관리를 추진

③ 건▫문화재를 공개하고 건▫문화재 안에서 예술▫품의 전시나 ▫서트의 촉진

④ 아이들에게 지역 전통행사나 민▫예▫ 등의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보, 전▫ 공▫·사▫ ▫술관과 역사박물관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트의 개발 지원 대책 등을 추진

- 사업 지원인력 확보 대책

① 문화재 복원 및 복원에 ▫요한 재료를 제▫하는 인력 ▫보 대책

② 일반인을 대상으로 문화재 가치를 ▫기 ▫게 전▫하고 문화재와 사▫들을 연계하는 인력 ▫보 대책

③ 문화재보호에 관계▫ 활동을 ▫성하여 종합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코디네이터 기▫을 담당하는 인력 ▫보 대책

■ 필요한 인원·고용인원 등

○ 바□□□□ □□□□□□ □□□□□ □□□□□ □□내□□□ □□□ □□□□ □□□□ □□□ 때□□□ □□□□ □□ □□□

■ **위탁비 수준**

○ □□□□ □□□□□□ □□□□ □□□ □□□□ □□□ □□□□□□□, □□□□□□□□ □□□

■ **유의점**

○ □□□□□ □□□□□□ □□□ □□□□□□□□□ □름□□ 바꾸□□ □□□□□ 것□□ □허

○ □, □□□□□□□□ 추□□□□ □□□□□□□ □□□□□ □화□ □□□□ □□□□□ 것□□ □□

2. 기대 효과

○ □□□□□□ □화□□□ □□□□□□□ □□□□□□□ □□□□□, □께□ □□□□□□□ □□□ □□□□ 강화

○ □□□ □화□□ □□□ □□□□ 알□□ 쉽□□ □달□□□ □□□ □□화□□ □□□

3. 비 고

○ □□□□□□ □□□□□□□ □□□ □□□□□□ □□□□□ □□□□□ □□□□ □□□ □□□□□□ 것□□ 포□□□□ 것□□ 바□□□

사업명	⑦ 중소식품소매업자 출장형 판매 촉진
관계부처	농림수산성

1. 개 요

■ 내 용

○ □□□□□(中山間地域), □□□□□□갈□□ □□□□ □□□□ □□□□ □□, □□□ □□□ □□□□ □□□ □□□□□□□□ □□□□□ □□□□ □□□□ □□□□□ □□□ □□ □□점□□ □□□□ □□□□□ □□□율□ □□□□□증□□□□ □획□□ □□□□ □ □□ □□□획□□ □□□□□ □□□□ □□□□□ □□□□ □□□ □□□□ □□

■ 관계자의 역할

○ □□□□□□: □□□□□□ □□□□ □

○ □□□□□□: □□□□□□□□□□ □□□□□□□□ □□, □□□□□□□□□ □□□□□ □□□□ □

○ □□: □□□□□□합□화· □□화□□□□□□ □□□□ □□□ □□□□ □

2. 기대 효과

○ □□□□□□ □□□□□ □□□편□ □□ □□□ □□ □□□점□□ □□화

사업명	⑧ 지역자원 활용을 통한 신상품 안테나샵 개설
관계부처	경제산업성

1. 개 요

■ 내 용

○ □□□(農商工)□□□□ □□□□□ □□□□ □□□ □□□□ □□□□□ □□□□□ □테□샵□□ □점□□□ □□□

■ 기 타

○ □□□□□ □□□ □□□□□□□□□ □□□□□

○ □□□ □□□□□, □□, □□□□□□ □□□□ □□□□ □□□□□

2. 기대 효과

○ □□□□물□□ □□□□□ □□□□□□□ □□□□□ □□화□ □책□ □□□□ □□□□□ □□□□□□ □□화□□ □□

○ □□□ □점□□□□ □□□□ 손님□□□ □□□□ □□□□□□ □□□□ □□□며□ □□□□□□□ □□화□□□ □□

6. 방송정보통신

사업명	① 지상디지털방송 대응 촉진사업
관계부처	총무성

1. 개 요

■ 내 용

○ □□□□□□ □□□□□□ □□디□털□송□□ □□□□□ □□ □□록□ □□□□택, □합□택, □□□□□□ □책□ □□□□□□ □□□□□ 디□털□□□□ □□□□ □□□□□ □□

○ 디□털□ 텔레□□□ □□□ □□□□□ □테□□ □□, 케□블□ 배□□ □□□ □□

○ □□디□털□송□□ □□□ □□□□□ □□□□□ □□□□□ □□□□□, □□□ □□□□□ □□□□□ 내□□□ □□□□□ □□□ 쉽□록□ □□□□□□□□□□ □□□□□ □□□□□ □□□ □□□□ □□□ 콜□□□□□ □□·□□□

○ □□□·□□□·□□□□□□□□ □□□□□ □□□□□ □□·□□□□ □□□□□□ 디□털□송□□□ 완□□□□□ □□ 후□□□ □□□□ □송·□□□ □□□□□□ □□□ □□ □□록□ □□□□ 습득□□ □□ □□록□ □□□

2. 기대 효과

○ □□□□ □□디□털□송□□□□ □□화□□ □□□□□, □□디□털□송□□ □점□□ □□□□□ □릴□ □□ □□

○ □송□□□ □□□□□ □□□ □□·□□□□ 습득□□□ □□□ □송□□□ □□□□□□ □□·□□□□□□□ □□□

3. 비 고

○ □떤□ □(市)□□, 2008년□12월□□□ □□□□화번□□□ □□□ □화□□□ □□□□□ □□

사업명	② 정보처리기술 관련 취업지원사업
관계부처	총무성

1. 개 요

○ □□□□ □□□□□□□□ □□□ □□□□□□□□□ □□□□ □□□□ □□□□ □□□ □□□□ □레□닝강좌(□□처□□□□□□□□ □□ □격□득□□□□ □□□□ 포□)□□ □□□□, □턴쉽, □□알□□ □□□ □□□□ □□

○ □□□ □□□ □□□□ □□□ □□□ 습득□□ □□, □□□□ □□□□□□□ □□□□ □□

○ □격□□ □득□□ □□□□ □□□□ □□□□□ □□□□□ □□□ □□□□□□ □□□□□ □□□□ □□□□ □□□□□ □욕□□ 높□□□□□ □□□□효□□□ □□□□ □□□ IT □□□ □□□□□□ □□□□□□ □□

○ □□□□□·□프□웨□□□□□ □폭□□□□ □□□□족□□ □황□□ □□□ 때□□□ 높□□ □□□□효□□□ □□□□□

2. 기대 효과

○ 무□□□ □□□ □□□□ □레□닝강좌(□□처□□□□□□□ □□□ □격□□□□ 포□), □□□□·□턴쉽, □□알□□ □□□ □□□□ □□□□□□□ □□□□ □□□□□ □□ □□□□□□ □□화□

○ □□□□ □격□□ 갖춘□ □□□□ □□□□ □□□□ □□□□□ □□□□□ □□□ □□□□□ □□□□ □□□ □□□□ □□□ □□□□□□ □□

3. 비 고

■ **선행 사례**

○ (□) 카□□□□(縣) □□□□□□□□ □책

- 카나가와 현에서는 2006년~2008년 까지 (사) 카나가와현 정보산업협회와 현지 지방공공단체(카와사키시)가 제휴하여 진술한 유형의 사업을 실시[35]

- 임금보조 등의 고용지원은 실시하지 않음

< (사) 카나가와현 정보산업협회의 대책실적 >

	2006	2007		2008		합계
	제 1 기	제 2 기	제 3 기	제 4 기	제 5 기	
수강자수	103	101	101	100	실시중	405
취업자수	88	80	85	82		335
취업률	85%	79%	84%	82%		83%
채용기업수	60	55	54	63		232

○ □후□ □(縣)□□ □책

- 기후 현(縣)에서는 2006년~2008년까지 현지의 소프트웨어관련사업자와 제휴하여 니트, 프리터에 대한 편성소프트웨어[36] 기술을 습득하는 트레이닝강좌를 개설하여, 총 36인이 수강하여 6인이 취업에 도달했음

35) 2008년도 상반기까지 니트, 프리터를 중심으로 405명이 수강, 335명의 취업(취업률 83%)됨
36) 가전제품 등의 기기내부에 편성되어 제품기능을 실현하는 소프트웨어

사업명	3 학교교무 정보화를 통한 고용창출
관계부처	총무성, 문부과학성

1. 개 요

- □무□□□무(□□처□, □□□□□, □□□□편□, □□□□□□□), □□□□□무(□□입□□□무, □□□록□□, □□□□□□), □무□무(□퇴□□□, □□□□□□, □□□□, □□급□) □□□□□□무(□무)□□□□화□□추□
- □히□ICT□□템□□□□□ 때마□□□□□□□ 접□□□□ASP(□□□□□□□□)□□SaaS(□□□□□□□□□□프□웨□)□□□□□□□ICT□□템□□□□□□□받□□것□□□□[37]
- ASP·SaaS□□□□□종□□□□□□79.9%□「300□□□□」, 71.9%□□「100□□□□」□□□□□□□(ASP 백□□2005), □□□□□□차□□□□□율□□□□□□□□
- □□□□□□□□□□□□□□□□□(□□□□□□내□□□·□□□□□) □괄□□□ASP·SaaS□□□입□□□□□□것□□ASP·SaaS□□□□□□□□□히□큰□□□□□□□것□□□□□

■ 대상학교의 규모

- □□22,000□□□□□□□, □□10,000□□□□□□, □□4,000□□□□□□□(□□□□□)(□□□□□□2007년□□□□□□□)

■ 관계자의 역할

- □□□□□□□□□□□□□: □□□□□□□내□□·□□□□□□무□□화□추□
- □□□□□□□□□□□□□: □□□□□□□내□□□□□□□무□□화□추□, □□□□□□□□□□□□□□□□□□□□□□□□
- □□: □무□□화□□효□□□□□□□□□□□□□□□□□□□□□□□□□□

2. 기대 효과

- □무□□□□효율화: □무□□□□□□□□□□□화, □□화□□둠□□□□□□□□□, □□□차□□□포□□□□□□□□□무□□□□·효율화□□□□
- □□□□□□□□□□: □□□□□□무□효율화□□□□□□□□□□□□□□증□□□□□□□□□□□□□□□□□□
- □□□□□□□□□: □무□□□화□□□□□□□□□□□□환□□□□□□□□□□□□□□□□□것□□□□□져, □□□□□□□□□□□□□□□□

사업명	④ 제조업 종사노동자 및 실직자의 정보통신 업종전환지원
관계부처	총무성, 후생노동성

1. 개 요

○ □□□□□□ □□□□□□ □□□ □□□□□ □□□□ □내□□□ □□□□ □□□□ □□□□ □□□ □내□□ □□□□□□ □□□ □프□웨□□ □□□□□□□ □□□□ □종□환□□ □□

○ □□□□□□□ □□□ □□□□ □□□□□ □책□□ □□□□□□ □□□ □□□□ □□(□종□환□□ □□□ □내□□□□□□□ □□)

○ □□□ □□□□□□□, □□□□□□□□□□, □□□□□□□□, □□□□□□□□□ □□□□□□ □□, □□□□ □□□□□ □□□□□□□ □□□ □□□□□□□ □□□ICT□프□웨□□ □□□ □□ □□□□□□□□ICT□프□웨□□□□□□□ □□□ □□□ □□□□□ □□□ □□□

○ □□□□ □□□□무□□□ □□□ □□□□□·□종□□·□□□□□ □□□□□□□□□□□ □□□ □□□□□□ □□□ □□□□□□ 것□□ □□

○ □□□□ 받□□ □□□□□□□□□□ □□□□□□ □□□ 후□□ □□□□ □□□□ □□□ □□□ □□□□ 것□□□ □□

■ 설비 등

○ □□□□□□ □내□□ □□□□□□□□ □□□□□□□□□□□ □□□□□ □□□ □□□□□ 것□□, □□□□ □□□□ □□□□□□ □□

■ 위탁비 수준

○ □□□□□□□□ □□□□□

○ □, □□□□□□□□□□ □□□□ □□□□□ □□□□□□□ □□□□강□□ 1□□ □□ 60□□엔(4□월□ □□□□ □□□□ □□)□□□□

37) ASP·SaaS는 ICT의 전문가를 필요로 하지 않고 최소한의 비용에 의한 정보화를 가능하게 하기위해 투자비용·인적부담의 관점에서 교무의 정보화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교무처리에 관련한 ASP·SaaS의 활용을 추진.

2. 기대 효과

○ □□□□□□ □□□ □□□ 잉□□□ □□□□ □□□ □□□□□□□□□□ □□□ □프□웨□□□□ □□□ □□□□ □족□□ ICT □□□□ □□□□ 습득□켜□ □□□□ □□□□□ □□□

○ ICT □□□□ □□□□□□□ □□□ □□□□□ 높□며, □히□ 올□□□ 플□□□□□□ □□□□□ ICT□□□□ □□□·□프□웨□□ □□□□□ □□□□□ □□□□ □□□ □□□□ □□□□□ □□□ ICT □□□□□□□ □□□□□ □□, □□□□□□ □본□□□□□□□□ □□□ □□□ □□□

7. 정주외국인에 대한 일상지원

사업명	① 정주 외국인 자녀에 대한 일본어교육 등 지원
관계부처	문부과학성

1. 개 요

■ **내 용**

○ □□□□□□ □□□□□ □□□□ □□□□ □본□□□□□ □□□□□ □□

○ □□□□ □녀□□ □□□□ □□□□□ □□□ □□□□ □□□□ □□□□□□ □□□

○ □□□ □□□ □본□□ 브□□□□ □□ □□□ □□□□□ 포□□□ □□□□□□ □□□□,
□□□ □른□ □□내□□□ □□□□ 같□

- 학교에 외국학생지원인 등을 배치하여 학교에서 일본어지도 시 보조나 학교와 보호자와의 연락조정 등을 실시
- 교육위원회에 취학상담원 등을 배치하여 외국인 보호자 등에 대한 학교입학 절차나 취학에 관한 상담에 대응하거나 지역 취학지원활동을 실시하는 등의 대책을 실시

■ **필요한 인원·고용 인원 등**

○ □□□□□□ □□□ □□□ □□□ □본□□□□□ □□□□□□ □□□ □□□□□ □□□□
□□□ □□□□ □□□□ □□□□ □□□□ □□□□ □□□□□ 것□□ 바□□□

○ □□□□□□□ □□□ □□□□ □□□□□□ □□□ □□□□□□ □□□ □□□□□ □□□□
□□□ □□□□ □□□□ □□□□ □□□□ □□□□ □□□□□ □□□ □□□□

■ **위탁비 수준**

○ □□□□ □□□□□ □□□□ □□□ □□□□□□□□□ □□□□□ □□

2. 기대 효과

○ □□□□□□□□ □□□ □: □□□□ □□□□□□ 입□□□□□ □□□□□ □□□□□□□□
□□□□ □□□□□ □□□□□ 증□

○ □□□□□□ □: □□□□□□□ □□□□ □□□□□ □□□□ □녀□□ □□□ □□□□

사업명	**2 외국인유학생에 대한 대학생활지원 보조사업**
관계부처	문부과학성

1. 개 요

■ 내 용

- ○ □본□ □□ □후□ □본□ □□ □ □ □□ □ □ □ □□ 못□□ □ □ □ □ □ □ □ □□ □ □□ □ □ □ □록□ □□ □ □ □좌□ □□ □ □□ □종□차□□ □ □ □□ □ □□ □□찾□, □ □ □□ □ □ □ □□ □ □□ □ □□ □입□□ □ □ □□ □ □ □□ □ □ □□ □ □ □□ □ □

- ○ □ □ □ □ □ □ □ □□ □ □□ □내, □입□□환□ □□ □벤□ □□ □ □□ □ □ □ □ □□ □□ □ □

■ 인원 등의 기준

- ○ □ □ □ □□ □느□ □ □□ □ □□ □ □ □□ □ □□바□ □ □

2. 기대 효과

- ○ □ □ □ □ □ □ □ □□ □본□ □ □□ □ □□ □ □ □ □ □ □ □□ □ □

사업명	[3] 정주 외국인 자녀에 대한 일본어교육 등 지원
관계부처	문화청

1. 개 요

■ **내 용**

○ □□□ □□□□□ □□□□ □녀□□ □본□□□□ □□□□ □□□ □□□ □본□□ □□□□ □□□ □본□□ 브□□□□ □□□ □□□ □□□□□ □□□□ □(□□□□ 포□)□□□ □□ □□□ □본□□□□□ □□

■ **필요한 인원·고용 인원 등**

○ 본□ □□□□ □본□□□□□ □□□ □□□□ □본□□□□□ □□□ 것□□ 바□□□

■ **위탁비 수준**

○ □□□□ □□□□ □□□□ □□□ □□□□□□□□ □□□□□ □□

2. 기대 효과

○ □□□□ □□□□□ □□□□□ □본□□□□□ □□□□□ □□□ 높□□ □습효□□□ □□□

○ □본□□습□□ □□□□, □본□□ □습□□□증□□□ □□□□□

사업명	④ 의료통역자 양성 및 확보사업
관계부처	후생노동성

1. 개 요

■ 현 상

- □□□□ □□□ 종□□□□ □□□ □□□□□ □□□ □□□□□□ □□□□ □□□□ 많□, □□□□□□ 받□□ 때□ □□□벽□ 때□□□ □□□□ □□□□ □□□□□ □□□□□ □□□ □□□□□□ 쉽□□ 편입□□□ 못□
- □□□□ □□□□ □□□□□□□ □□□□ □□□□ □□□ □□□□ 많□
- □□□ □□□□□ □□□□□□ □□□□책□□ □□□□ □□□ □□□□□□ □□□□□ □□□□ □□□□□ □□□□ 강□□□□ □□

■ 내 용

- □□□ □□□□□ □□□□□□□ □□□□ 때□ □□□□□□□ □찰□ □후□ □□□□ □□□□ □□□□□ □□□□□□□ □□·□□□
- □□ □□□□ □□□□□□□□ □□□□ □□□□ □□□□ □□□□□ □□□□□ □□□□
- □□□□□ 많□□ □□□□□ □□(□□, □□□, □□□, 포르투갈□□)□□번□□

2. 기대 효과

- □□□□ □본□□□□ □□□□ □□□ □□□□ □□□ □□□□□□ □□□□ □□□□□ □□□□ □□□□□□□ □□□□

사업명	⑤ 일본계 외국인 고용기업의 자녀교육지원
관계부처	경제산업성

1. 개 요

■ 내 용

○ □본□□ □□□□ □□□ □□□□ □□·□□□ □□□ □□□□(□본□·□□□□□, □□□□ □□□□ □)□□ □족□킨□ □본□□ □□□□ □녀□□□□ □□□ □□□□ □(□□□□□□ 포□)□□ □□□□□ □□, □□□□□ □□□ □□ □무□□ □□□, □□□□ □□□□

○ □본□□ □□□□□ □□·□무□□ □□□ □□□□□□□ □□□□ □□□□□ □□□□□ □급

○ □□□ □□□ □본□□ □□□□ □□ □녀□□ □□□□□□ 내□화□□ □께□ □□□□ □□□□□ □□□ □□□ □□□ 환□□□ □□

■ 필요 인원

○ □본□□ □□□□ □□□ □□□□□□□□ □□□ □□□ □□□ □□□□ □□□

■ 관계자의 역할

○ □□□□□□, □□□□□□□: □□□□□□□ □□

○ □□: □□□□델□□ □□

2. 기대 효과

○ □본□□ □□□□ □□□ □□□ □□□□□ □□□□□ □□□ □본□□ □□□□ □□□ □□□□□ □□□ □□ □□ 환□□□ □□□

○ □□□□ □본□□ □녀□□ □□□ □□□□ □□□ □□□□□ □본□□ □□□ □□□ □□□□ □□ 내□화□□ □□

사업명	⑥ 일본계 외국인 일본어 교육지원사업
관계부처	경제산업성

1. 개 요

■ 내 용

○ □본□□ □□□□ □□□□□ □□ □족□□ □본□□ □□□□ □□, □□□ □□□□□□□ □□□□ □본□□ □□□□ □□□□□ □□□폭□□ □□

○ □□□□ □□□□□□ □□□□□□□ 팀□ 내□ □뮤□케□□□□ □□화□□ □□□ □□□□□ □□, □□□□ □□□□□□ 추□□

○ □□□ 내□ □본□□ □□□□□ □본□□□ 배울□ □□ □□□ □□·□□□□ □□

- 일본어를 어느 정도로 말할 수 있는 이직한 일본계 외국인 노동자를 일본어 강사나 일본에서의 생활지원자로서 육성
- 일본어강사 보조원이 중심이 되어 강좌의 도움이나 홍보지 등의 작성

■ 필요 인원

○ □본□□ □□□□□ □□□□□□□ □□□ □□□□ □합□

■ 관계자의 역할

○ □□□□□□, □□□□□□: □□□□□□ □□

○ □□: □□□델□□ □□

2. 기대 효과

○ □본□□ □□□□ □□□□□ □뮤□케□□□ □□□ □□□□ □□□ □□□□□ □□□□ □□□ □□, □후□ □□□□족□□ □□□□ □량□□ □□□□□ □□

○ □본□□ □□□□ □□□□□ □녀□□ 포□□□ □뮤□케□□□ □□□ □□□□□ □본□□ □□□ □□□ □□□ 깊□□ □□□□ □□ □□록□ □□□ □□·□□□□ □□□□□□ □□□ □□□

사업명	⑦ 일본계 외국인 일본어 교육 및 직업훈련지원사업
관계부처	경제산업성

1. 개 요

■ 내 용

○ □본□□ □□□□□ □□□ 많□□ □□□□□□ □□□□□□ □□□□□ □□□ □본□□□□ · □□□□□□□□ □□□ □□□□□□ □□□□□ □□□□□ □□□□□□□ □□(□□□, 강□□, □□□□□□□□)□□ □□□□□ □□□□□□ □□□□□□ □□□□□ □□

○ □□□ □□□□□□ □본□□□ □□□□□ □본□□ □□□□□ □□□ □본□강□□□ □□□□□□, 홍□□□□□□ □□□ □무□ □□□□□□ 채□□□ □□, □□ □□□□□□ □□□□

○ □본□□□ □□□□□ □본□□ □□□□□ □□□ □□□ □녀□□ □□□□□□ □·□□□□□□ □□□□□ □본□□ □□□□□ □□□ □녀□ □습□ □□, □□□□□□ □□□ □□□□□□ □□□ □□□□□□ □□□□

○ □□□ □□□ □본□□ □□□□□ □□□ □본□□□□ □□ □□□□□□□□□ □□□□□□□, □본□□ □□□□□ □□□ □□□ □□ □□□ □□□□□□ □□

○ □본□□□□□ □녀□□ □□□□ 내□화□□ □□□

■ 필요 인원

○ □본□□ □□□□□ □□□□□□□□□ □□□ □□□ □른□ □□□□□ □□□

■ 관계자의 역할

○ □□□□□□, □□□□□□: □□□□□□□ □□

○ □□: □□□ □델□□ □□

2. 기대 효과

○ □본□□ □□□□□ □본□□□ · □□□□□□ □□□ □□□ □□□□ □종 · □종□□ □□□□ □□□□□ □본□□ □□□□ □□□ □□□□□□□ 높□짐□

○ □□□ □□□□□ □□□□□ □□□□ □□, □후□ □□□□족□ □□□□□ □량□□ □□□□□ □□

○ □본□□□□ □□□ □녀□□ □뮤□케□□□ □□□ □□□□□ □□□□□ □□□ 깊□□ □□□□ □□ □□록□ □□□ □□ · □□□□ □□□□□ □□□□ □□□□□ 효□□□ □□□

8. 방범 방화

사업명	① 통학로 등 방범활동
관계부처	경찰청

1. 개 요

■ **내 용**

○ □□□□□ □□□□□ □□□□ 범죄피□□□ □□□□□□□ □□□□ □□□ □□□□□□ □□□ □□□ □범패□롤□□□ □린□□ □□□□□□□ 바□□□□□□ □□·철□□ □□□□□

○ □□□□, □□□□□ □□□ 길□□범죄□□ □□□□ □□□□ □□□ □점□, □, 번화□□ □□□ □범패□롤□□ □□□

■ **사업 주체**

○ □□□□□□□ □□□ □□□□□□□□□ □□□ □□□□ □□□□□□ □□

2. 기대 효과

○ □□□□ 범죄피□□ □□□ □□□□□□□ □□: □□□□ □□□□ □범패□롤, □린□□ □□□□□□□ 바□□□□□□□ □□·철□□ □□□ □□□□ □□□□ □□□□ 범죄피□□ □□□ □□□□□□□□ □킴

○ 길□□범죄□□ □□□□□: □점□, □, 번화□□ □□□ □범패□롤□□ □□□□□□ □□□, □□□□□ □□□ 길□□범죄□□ □□□□ □□□

○ □□□□ □□□ □□□ □□□□□: □□□, □□□□□□ □□□ □□□□□□ □□□ □□□□ □□□□□ □□□□□□□ □□□

9. 문서전자화 조사 등 행정사무, 정보제공

사업명	① 건강질병대책 보급개발 및 상담사업
관계부처	후생노동성

1. 개 요

■ 내 용

○ □플루엔□□ □□□□□책□ □급□□·□□□□

- 발생이 염려되는 신형 인플루엔자에 관련한 기초지식이나 발생시에 있어서 적절한 행동이 가능하도록 정보제공
- 매년 유행하는 계절성 인플루엔자의 감염방지 및 만연방지에 관한 지식을 넓게 보급시키기 위한 팜플렛, 포스터 등의 작성
- 고령자 등 고위험 계층에 대한 계절성 인플루엔자 등 예방접종의 권장
- 고령자시설 등에 대한 감염방지에 관한 정보제공

○ □□□플루엔□□□□□·□□□□뮤□케□□□추□□□

- 지역주민에 대하여 신형 인플루엔자에 관한 의식조사를 실시함
- 신형 인플루엔자의 발생 전에 개인·가정에서 실시해야 할 준비 및 발생시의 올바른 행동이나 대응 등에 관한 올바른 지식보급개발을 실시
- 보급개발 내용은 지방자치체가 자유설계(「개인, 가정 및 지역의 신형 인플루엔자 대책 가이드라인」 등)

○ □□염증□□ □□□ □책□급□□·□□□□

- 성감염증의 감염 및 만연 방지에 관한 지식을 확산하기 위한 팜플렛, 포스터 등의 작성
- 특히 청년층에 대한 성감염증의 기초지식의 보급을 실시

○ □염증□□ □□□ □□□□□□□ □□

- 신형 인플루엔자 및 계절성 인플루엔자, 성감염증에 관련한 주민불안의 해소, 보급개발을 위해 지자체에 전화 상담창구를 설치
- 성감염증에 관해서는 그 특성상 익명으로 상담이 가능한 전화 창구를 설치

○ □□□환검□, 골□□증검□□ □급□□□□

- 진찰대상자에 대한 진찰권장
- 진찰권의 발송, 결과점검의 입력, 정밀검사권장(엽서송부), 정밀검사결과입력 등
- 지역의 실정에 따라 보급·개발활동

2. 기대 효과

○ □년□ □□□□□ □□□ □플루엔□□□ □□□ □□□□ □□□□□□ □□□□□ □□□ □염□□ □□ □□□ □□□

○ □□□□□ 삭□□□□ □□□□ □□□ □□□□ 염□□□□ □□□ 「□□□ □플루엔□」□□ □□□□ □염□□□□□ □움

○ □□□ □플루엔□□□ □□□□ □□□□ □□□□ □□□□□□□ □□□□악, □급□□□□ □□ □악□ □□□□ □□□ □□□□ □책□□ □획·입□□□ □□

○ □□염증□□ □□ □□□□ □□□ □□□□ □□□□ □□□ □□히□ □년충□□□□ □□□□□ □□□□ 내□□□ 배□□□□ □□□□ □□□□ □□□□□ 넓□□ □□□□ □□

○ □□□ □□□□□ □□□□□ 검□□□□□ □□화□□ 종합□□□ □염□책□□ □□□□ □□□

○ 검□□찰률□□ □□□□ □□□ □□□ □□□□□□□ □□□□ 골량□□□□□ □□□□□ 골□□증□□ □□□ □□□□ □강증□□□ □□□□□ 것□□ □□□

3. 비 고

■ 선행 사례

○ □□□□□ □년□ □□□□ □□□□□ □플루엔□□□ □□□□□ □□ □염증□ □□□□□ □□□□□ □□(□□마□□ □□□□쟁입찰□□ □□□□□ □□□□ □□□□□ □□)

○ □□□□□ □년□ □□□□ □□□□□ □□염증□□ □□□□□□ □□□□□ □□.

■ 과거의 실적

○ □□□□□□ 바□오□ 메디칼□ □□□□□ □□□

○ □□□□□ □□□□□

○ □□□□□□□ □□□□□□□

사업명	[2] 지자체의 아웃소싱 관련 고용취업 창출사업
관계부처	총무성

1. 개 요

○ □□□□□□□□ □□□ 내□ □무□□ □웃□싱□□□ □□□ □택□무□□ □□□□□□ □□□ □□□□□□□ □□□ 내□ □□□□ □□

- 관청 내 업무의 사례

1. 조사집계 업무
2. 데이터 입력
3. 홈페이지 작성
4. 앙케이트 조사
5. 행정안내 등의 콜센터 업무

2. 기대 효과

○ □택□무□□ □□□□□□ □□□ □□□□□□ □□□□ □□□□□□□ □족□□ □□□□□□□□ □□□□□ 내□□ □□□ □□□□ □□□□ □□□□□

○ □웃□싱□□ 효□□□ 넓□□ □□□□흥□□ □□□□□□ 것□□ □□

○ □택□무□□ □□□□□□ □□□□ □□□□, □□□□, □□□□□ □□□□□ □□□□□□ □□□□ □□□ □□□□□□□ □□□□□ □□□□□□□□

사업명	[3] 공문서 기록관·도서관·박물관 소장문서 등 전자화
관계부처	총무성

1. 개 요

■ 내 용

◦ □□□□□□, □□□□□□□□□ □□□□ □록□, □□□, □물□□ □□□□ □□□□ □□□ □□화□□ □□□□, 검색□□ □□□□ □□□□ □□□□ □카□브화□□ □□

◦ □□화□□ □□□□ □캐닝□□□ □□□□□□□ 입□□ □□□ □□□ □무□□ □□□□□□□ □□□□ □웃□싱□□□ □□□ □□□ □□□□ □□.

◦ □□□, □□□□□□ □□□ □□□□□□□ □□□ □□□□ □□□□□□□ □□, □□□□□□□ □□□ □□□□ □□□ □□□(□□□□□□ □접□ □□□□□□ □□□□□□ 것□□ □□)

◦ □□□□ □□□□□·□종□□·□□□ □□□ □□□□□□□□□□□ □□□□ □□□□ □□□□ □□

◦ □□□□□□1□~3□월□ □□□□ □□, □□□□□□□□ □□□ □격□득□ □□□□ □□

■ 설비·직원 등

◦ □□□□ □□□□□□□ □□□ □□□ □□□□□□ □□□□□록□, □□□□ □□□ □□□□□□ □□□□□□ 것□□□ □

◦ □, □족□□ □□□□□□ 렌탈·□□□ □□□□ □□□□□□ 것□□ □□

◦ □□□ □□□□ □□□ □□□ □□□ □□□□ □□□ □□□□□□ □□□ □□□□□□□□ □□□□□ □□□□, □□□□□□□ □□□ □□□□□□□ □□□ □□□□□ □□ □□□□□□ 채□

■ **위탁의뢰대상 수준**

○ □□□□□□□□ □□□□□

○ □, □□□□

-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 입력작업 등 수탁사업자

가. <화상□성비용> 50엔 (화상□영단가) × 150 (1매당 □영개수 수) × 장서수

나. <OCR 경비> 280엔 (교정□업) × 150엔 (1매당 □영개수 수) × 장서수
(1매당 □영개수 수를 150개수로 상정한 경우)

-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 민간교육훈련기관 등

가. 연수 수강자 1인 1월 당 5만 엔(제2급 문서정보관리사의 자격취□을 목표로 하는 경우를 상정)을 참고

2. 기대 효과

○ □□□□ □종□□□ □□ □□화□ □□ □종□□□ □□□□□ 콘텐츠□□□ □ □□□쉽□ □□□□□ □□□□□□ □효□□□ □□□□□ □

○ □□화□ □□□□□ □□ □□ □후□ □□쿼□□ □□□□□□□□프□□□□ □ □□□

○ □□□□□ □□□□ □□□□□□□□□ □□□□ □격□ □득□□□□□ □□□□□□□ □□□□□ □□□□□ □□□

사업명	④ 유적 출토품 역사적 자료·민속 문화재 정리 및 공개를 통한 지역문화 진흥사업
관계부처	문화청

1. 개 요

■ 내 용

○ □□ □□□□ □□□□ □□□□ □□□□ 귀□□□ □□, □물, □□□□ □□□ □화□□□ □□□, □물□·□□□□□□ □화□□□, □□□□□□□□ □□□□ □□□□□ □□ 것□□ □□□ □□□ □□

○ □□□□ □□□ □□□□□□ □□□ □움□□ □□□ □□□ □□□ □□□□화□□ □흥□□ □□□□

- 예를 들면, 문화재에 관해서는 발굴조사 후에 미정리가 되고 있는 출토품, 자료의 정리나 한번 정리한 것에도 기능적으로 보존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수장고에의 재정리나 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 등이 고려됨
- 유적 지리정보시스템(GIS)의 정비, 역내의 사적의 유지관리 등도 고려가능

○ □□□□ □□□□ □□□□□, □□□□ □□□□□□ □□□ □□□ □□(메□□□□) □후□□ □□□□ □□□□ □□□□□□ □물□□□□ □□□ □□□□□□ □□□ □□□□ 많□, □□□ □□□ □□□ 것□□ 많□□ 본□ □□□□ □□□□□□ □□□□□ □□□□□ 것□□ □□□□

○ □□□□□화□□□ □□□□ 채□ □□□□ □□히□ □□□ □□□ 것□□ 많□□ 본□ □□□□ □□□□ □□□□□□ □색, □□□, □□□□□ □□□ □□□□□ □□□□□□ □□□ □충□ □□□□ □□□□□ 것□□ □□

○ □□□□ □급□□ □□□□□□ □□□□ □□□□ □□□□ □□□□ 것□□ 많□□ 때□□ □□□□ □□□□□□ □□히□ □□□ □□□

○ □□ □□□ □□□□ 알□□ □□□ 귀□□□ □□, □물, □□□□□화□□□ □□□□□□ □□히□ □□□□□□ □□□□□ 것□□□ □□, □□□□ □□·□□□□(修復再生) □□□ □□□□□ 것□□□ □□ □□□□ □□화□□ □□□

○ □□□ □□□□ □□□□□□□□ □□□화□□ □흥□□ □□□□□ 것□□ □□□□□□ □

■ **필요한 인원수·고용 인원 등**

○ 바□□□□ □□□ □□□ □□□□□□ □□□ □□□□ □□□ □□□□ □□□ □□□□ □□,
□물, □□□□□화□□□ □□□ □□□□□□ 때□□□ □□□□ □□ □□

■ **위탁비 수준**

○ □□□□ □□□□ □□□□ □□□ □□□□□□□, □□□□□□□□ □□

2. 기대 효과

○ □□□□ □화□□ □□□ □□, 환□□□□ □□□ □□□□□□ □□□ □화□□□ □□□□
□□□

사업명	⑤ 지자체 식품위생관련 업무 임시강화사업
관계부처	후생노동성

1. 개 요

■ 현 상

○ □내□□□ □□□□□□ □□□□ □□□□□□ 「□□□□□□」□□ □□□□ 둔□ □□□ □□□□ □□□□□ □입□□ □두□□ □□□ □□□□□□□□ □□ □□□□ □□□ □(市, □□□ '□□□□□□' □」□□□ □)□□ □□□□□□ □□□□□□ □□□□□□ □□□ □□□□□□ □□

○ □□□ □□□□ 냉□□두□□ □□□ □물□□□□, □□□□ □□□ □□ □□□□□ 멜□□□ □□□ □□□ □달□□□ □□□□□□ □□□ 때□□□ □□□□ □□□□ □□□□ □□□□□□ 높□져, □□□□□□□ □□□ □□□□□□□□무□□ □□□ □□□□ 증□□□□ □□□

■ 내 용

○ □□□□□□□ □□□ □□□□□□□□□□ □격□□□□ □족□킨□ □(□□□ □□□□ □□, □□□, □□, □□□, □□□, □□□□ □□□ □□화□□□ □□□□ □두□□ 졸□□□ □, 후□□□□□□□ □록□□□□□□ □□□□ □□□□ □□ □)□□ □□□□□□ □□□□□, □□□□□□□□□ □무□□ 종□□□□□ 것□□ □□

○ □□ □□□ □□□□□□□ □□□ □□□□□□□□□ □격□□□□ □족□킨□ □□□ □□□□□□□ □□□□□ 「□강증□□」□□ □□□□ 둔□ □강□ □□·□□·증□효□□ □□□ □□□ 허□□□□□□ □□□ 탐색, □□□□□□ □□□ □□□□ □뮤□케□□□□ □환□□□ □□ 홈페□□□□ □□□□□ □□□□환□□□ □□□ □□□ □무□□ 종□□□□□ 것□□ □□

○ □두□ □□□□□□ 1년□ □□□□ □□□□□□□ □

2. 기대 효과

○ 「□□□□□」□□ □□□□ 둔□ □□□□□ □□□ □□□□□ □□□ □무□□ □□□□□ □□□ 강화

○ □□□□ □강□□□□ □바□□

사업명	⑥ 장애인 시설보급 개발사업
관계부처	후생노동성

1. 개 요

■ 내 용

○ □□□□ □□□□ □□□ □플렛□ □□□ 배포□ □□□ □□□□□□□□ □□□ □□□□ 중□ □□□□ □□□□□□□□ □급·□□□□ □□□

○ □□□□ □□

- 「장애인 자립지원법」의 이념, 제도 등에 관한 홍보를 시행
- 외관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발달장애나 내부장애에 관하여 국민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리플렛 등을 배포함
- 보조견에 관하여 개발추진원이 기업, 공공시설을 방문하여 「신체장애인 보조견법」의 취지의 개발에 의무, 이해를 넓힘

■ 설비·인원 등의 기준

○ □□□□□□ □□□□□□□□□ □□□□□

■ 이용자의 규모, 이용료, 위탁비 수준, 관계자의 역할

○ □□□□□□□ □□□ □□□□□

사 업 명	⑦ 지역정보정비사업
관계부처	국토교통성

1. 개 요

■ 내 용

○ □□□□□□, □□□, □□□□□□(hazard map) □□□ □□□, □□□□□□, □□□, □□□□□□□□□, □□□□□□ □□ □□□□□ □□□□□ □□□□□□□ □□□ □□□□□ □□□□□ □□□□□□□ □□□□□, □□□□□□□□ □□□□ □□□ □□□□□□ □□□ □□□□□

○ □히□ □□□□□□□□□□□ □□□□종□□ □□□□ □□□□□□ □□□ □급□□□ □□화 □□ □□□□□ □□

○ □□화□ □□ □□□□ □본□□□변화□□□□ □□□□□□□ □□□ □□□□□□ □□, □□ □□□ □□화□ □□ □□□□ □□□ □□□□□□ □게□ 웹□ □□□□ □□□□ □□ □□□환□□ □□□□□ □□□□ □효□□ □□□□추□□

- 지도의 전자화

  지방공공단체에서는 기반지도정보의 원 데이터가 되는 지도가 종이로 관리되고 있어 시급하게 전자화의 추진을 도모할 필요가 있어, 이를 전자화하고 해당부국의 틀을 넘어 종합적으로 정비, 유지관리를 실시

- 지역정보의 현지조사에 의한 수집과 전자화

  행정이나 주민서비스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지역정보를 현지조사 등에 의해 수집하여 효율적 갱신작업이나 안전안심 지도 작성 등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함

  ① 행정의 효율화, 고도화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함

  건물, 도로, 하천, 등산도, 기준점 등이나 주소, 교차점, 한계취락관련 정보, 복지간호시설관련정보 등

  ② 안전안심, 주민서비스를 위한 정보를 수집함

  교통사고 발생지점, 범죄발생지점, 공사지점, 환경정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정보 등을 수집하고 전자화 함

- 지역정보의 종합적 이용

  행정의 효율화, 고도화, 지역진흥, 주민서비스를 위해 수집 전자화한 지역정보를 지도데이터와 함께 종합적으로 웹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함

① 행정에서의 활용

② 주민서비스를 위한 정보제공

③ 지역진흥·관광촉진 등을 위한 정보제공

■ **위탁비 수준**

○ □□(□□□1/2,500)□□ □□화

- 도시계획 구역 내에서 1/2,500 지도를 종이로 관리하고 있는 면적 3.1만 ㎢
- 전자화작업 190천 엔/㎢
- 이에 더하여 현지조사를 위한 경비도 필요

2. 기대 효과

○ 본□ □□□□ □□□□ □□□□□□□□□ □□□□ □□□□□ □□□ □□□□, 「□□□□ □□□□추□□본□」□□ □념□□ □름

○ □□□ □□□ □□화□ □□종합□□ □□□□ □른□ □□□□ 효율화□ □□ □□화

○ □□□□□□ □□□□□□ □□□□□□□□ □□□□ □□□□ □□□□□□□ □악□□ □□

○ □무□□ □□□ □□□□□□ □□ □□□□□□□ □□□□□, □□□□□□종□□□ □른□ □□□□ □격□□□ □□□□□ □□□ □□□□□ □□□□□ □□□□□□것□□ □□

○ □□□ □□□ □□화□ □□□ □□□ □□□□□□□□□ □□□□ □□□ □□□□ □□화□□□ □차□□□ □□□□ □□□

사업명	⑧ 지리공간정보의 전자화
관계부처	국토교통성

1. 개 요

■ 배 경

○ □□ □□□□□□□□□□ 종□□□ □□□ □□ □□□□□□□□ □□화□며, □□□□ □□템(GIS)□□□□ □□□ □□□□ □합□□□ □□□□□□ □□□□ □□□□ 높□□, □□□ □□ □□량□□ □□□□ □□□ 좀처□□ 추□□□□ 못□□□ □□□ □황

○ □□□□□□□□ □□화□ □□ □□□□□□□□ □□□□□ 디□털□ 콘텐츠□□ □급□□□, □□□□□□, □□□□ 같□□ □□□□□ □□ □□□□ □□□□ 높□

■ 내 용

○ □□□□□□□ □□□□□ □□□□□ □□ □□□□□□□□ □□□□ □□ □□□□□□□ □□□ □□ □□□□□□□□□□ 종□□□ □□□□□□□□ □□□□□ □□화□□ □괄□□□ □□□□□ □□□ □□

○ □□□□□□□ □□□□□ □□□□□ □□ □□□□□□□□ □□□ 내□□□ □□□□□□□□□□□□□ □□화□□ □괄□□□ □□□□□ □□□ □□

○ □□화□□ □□□□□ □□□ □프□□□□ □□□□□

○ □□□□□□□ □□□□□ GIS□□□□□□ 습득

○ □□ □□□□□□ · □□□□□□□□ □□□□ □□□□□□ □□□□ □□□□□□□□□□ □□□ □괄□□□ □□화□□□ □□□□□ □□□□□ □□□□ □□□□□□□ □폭증□□□ □□□

○ □□화□□ □□□□□□□□ □□□□□□□ □□ □□□□□ □□□□□□□□(□□백□□)□□ □합□□□ 것□□□ □□□무□□ 효율화, □□화□□ □□□□□ 것□ □□□ □□□ □□□□ □□□□□ □□□□ □□□□ □□□ □□□□ □□

■ **관계자의 역할**

○ □□□□□□: 종□□ □□□□ □□□□□□□□□ □□□ □(□□□□□□□□ □□□□□ □□□□□ □□□□□□ □□)

○ □□□□□□: 종□□ □□□□ □□□□□□□□□ □□, □□□□□□□□□□□ □□ □□□□□□ □□, □□□□□□□□□□ □□□□ □□□□(□□□□□□□□ □□·□□) □

○ □□: □□□□ □□□□□ □□□ □□□ □□□□ □□□□□□

2. 기대 효과

○ □□ □□□마□마□□ □□□□□□ □□·□□·□□□□□ □□□종□베□□□□ □□□□□□□ □괄□□□ □□화□ □□□ □□□ □□□□무□□ 효율화□□ □□□

○ 종래□□ GIS □□□ □□□□ □□ □□□□ □□□□□□ □□□□□□ □□□□□ □□□□□ □□□ □□□□ □□□□ □□□ □□□□ □□

○ □□□□□ □□화□□□□ □□□□ □□□□□□GIS□□□□□□ 습득□□

○ □□□ □□□□□ □□□ □□□□□□□ □□□□□□□ □□□□□□□ □□□□□ □□

사업명	⑨ 전국중소하천의 생태맵 작성사업
관계부처	환경성

개 요

■ 배 경

○ 2004년□□ □□□물□□□□ □□□ □□환□□□□□ 책□□□□ □□□ □□□□□ □(縣) □□□□□□□□ □□□ □춤□□ □□□□□ □□□□□ □후□ □□내□ □□□□□□ □□□ □□□□ □□□□ □□□□□ □

○ □□배□□ □□□ □□□ □□□□물□□포□□□ □환□□ □□□□ □□□□□ □□□□ □천저□□물□□ □황□□ □□□ □□배□□ □□□ □□□□ 받□□ □□□ □□□□ □□□□□ 것□□ □□□□□□, □□ □□□ □□□□□ □□□□□□ □□□□ □□□□ □□□ □□□□□ □□□ □□

○ □□□ □□□ □□ □□□ □□□□□ □□□□ □□□□천□□□ □□□ □□□ □□□□물□□ 저□□물□□ □□□□황□□ □(全) □□□□ □□□□□ □□□□□□ □□□□ □□

○ □□□□ □□□□ □□□ □□□□책□□□ □□□□ □□□□ 환□□□□ □책□□ 추□□□□ □□□

■ 내 용

○ □□□내□

- 기초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중소하천에서 어류 등의 수생생물이나 저생생물의 생식 상황을 고밀도로 현지조사, 어업자 등으로부터 청취조사 등에 의해 정보를 수집함

○ □□□ □□□

- 기초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중소하천

■ 실시 방법

○ □□□□□□□□ □□□□□ □□□□, □□□□□□□□ □□□□ □□□□, □□□□ □□□ □□□□□□□ □□

10. 기 타

사업명	① 위법광고물 제거 긴급지원
관계부처	국토교통성

1. 개 요

■ 내 용

○ □□□ 옥□□□물□ □□□□ 저□□□□□□□ □□□□□ □□□□ □□□ □□□□ 2004년 「옥□□□물□」 □□□□ □□□ □□□□□□□ □□□□ □□□□

○ □렇□□ □□□□, 입□□□ □□□ □□□□ 마□ □□□□□ 많□ □□□□ □□며 □□□□□□□ □□□□ □□□□□ □□□□ □□□□ □□므□ □□□□□□ □□□ □□□□물□ 철□□□□ 것□ □□□

■ 사업 계획

○ □□□□□□□ □□ □□□□□□□: 옥□□□물□□□□ □□□□ 둔 □무□ □□□□. □□□□□□□□□ □□, □□□□ □□

○ □□□□□□ □□□ □□□□: □□□□□□□ □□□ □□□□□□□□□□□□ □□□□ 받□ □□□□물□ □□□□ □□

○ □□: □□□□ □□

2. 기대 효과

○ □□□□□□ □□□ □□□□□ □□□□물철□□ □□□□ □□□□□ 효□□□□□ □□□□ □□□□

사업명	② 역주변 공터 등을 활용한 자전거 주차장 정비사업
관계부처	경제산업성

1. 개 요

■ 내 용

○ □□ 앞□ □□□□ □점□□ □□□□□ 쇼핑객, □□객□□ □□□□□ □□□□□ □□□□ 많□

○ □□ □책□□□ □□ □□□ □□□ □□ □점□□□ 빈□ □□·빈□ □□□□ 차□□□ □□□□ □차□□□ □□□□ □□

○ □□□□ □차□□□ □□ □□□□ □차□□□□ □□□□□ □□□□□ 채□□□□ □찰□ □□ □□□□ □차□□□□ □□

■ 설비·인원 등의 기준

○ □□□□ □□차□□□□□ □□□□

○ □점□□ □무□□□□ □□(□□□□ □□)

○ □, □□□□ □□□□ □차□□, □□□□□□ □른□ 입□□ □□□□ □차□, □□□□ □□□□ □차□, □□□ □□□□ □차□□ □□□ □□

□□□□ □차□□ □□□□ □른□ □□□□□ □□(□□□□□□, □버□□□ □□□□ □□)□□, □점□□□□ □점□□ □합□□□ □□(□□□□)□□ □□

■ 이용자의 규모

○ □□□□□□□□ □□□□. □천□ □~

■ 이용료

○ □□□□□□·□합□□ □□□□

○ □, 월□, □□□□□□ □□□ □무량□□ 완화□□ □□

2. 기대 효과

○ □□□□ □차□□ □□□□□ 증□□□□ □□□ □점□□□ □□화, □□□ □□□□□ □□

사업명	[3] 농업용 저수지 긴급점검
관계부처	농림수산성

1. 개 요

■ 내 용

○ □□□ □□□□□□□ □풍, □□□ □□□ □□□ 막□□□ □□□□□□□ 많□□ □□□□□□ □□온□화□□ □른□ □□□□□□□ □□□□□□□ 증□□□ □□□□□□ □□□□, □□□□□ □□□□□ □□21□□□□ 저□□□ □□ □년□ 저□□□ 피□□ □□ □□□□□□□□ □□, □옥□ □□□ 막□□□ 피□□□ □져오□□ □□ □□□ □□□ □□□□ □□□□ 저□□□□ 많□□ □□□

○ □□□□ □□□ □□□ □□□□□□□ □□□ 저□□□□ 피□□□ □□□□ □□□□□ □□□ 긴급히□ 저□□점검□□ □□□□ □□붕괴□□ □□□□□ □변□□□ □□□□ □□□ □□□□□ □후□ 저□□□□ 효율□□□□ 효□□□□ □□□□ □□□□

■ 점검방법 및 대상

○ □□□□□□□□ □□□ □□□□□□□□□ □□□□□ 저□□□□ □□□□황□ □□□ □□□ 점검□□□□□ □□□□ □□□

2. 기대 효과

○ 저□□□ □□□□ □□□□□ □변□□ □□□□□ □□□ □악

○ □황□□ □□□ □책□□ 효율□□□□ 효□□□□□ □택□□

사업명	④ 농촌마을 배수시설 유지관리 및 감시업무
관계부처	농림수산성

1. 개 요

■ 내 용

○ □촌마□□ 배□□□□□□□□ □□□ □□□□□ □□□□□□ 배□□□□ □□, □□□□ □□□ □□□ □□□□□□□ □□□□□□ □□□ □□□ □□점검·□□□□ □합□□ □□□□ □□□□ □본

○ □□ □, □□□□□□ □□□ □□점검·□□□□ 저□□□ □□화□ □□□ □□□ □□□족 □□ □저□□□ 때□□□ □□□□ □□□□ □□□□□□□ 염□□□□ □□

○ □□□□ □□□□ □□(□촌마□□ 배□□□□ 5,000 □□□ □, □□□□□□ □□ □□□□ □□□□□□ 염□□□□ □□□ □□)□□ □□□□□ □□점검·□□(□내풀베□, □□□ □)□□ □□

2. 기대 효과

○ □□□□ □□: □촌마□□ 배□□□□□ □□□□ □□□□ □□□□ □□ □□, □□□□ □□ □□□□□□ □□□□

○ □□□□ □□: 오□처□□□□□□□ 것□□□□ □□□□□ 십□□□□, 깨끗□□□ □□□□□□ □□□□ □□□□ □바□□

○ □□□□□□ □□: □촌마□□ 배□□□□□ □□□□ 5,000□□□ □□□□ □□□□□ □ □므□□ □□□□□□□□ □□□□□□ □□□□□

부 록

<일본의 고용대책 사례 : 206개 전체목록>

분야	일자리 사례
수발·육아·의료	Flexible 지원센터, 보육소 고용촉진사업, 지역의 다양한 육아지원촉진사업, 장애자 지역취로촉진사업, 의사사무작업 보조자 설치지원사업, 병원내 아동보육운영사업, 병원안내업무 등 의료서비스 및 환자서비스향상사업, 왕진 및 방문간호사 이송서비스사업, 특정건강진료 및 특정보건지도 실시율 향상사업, IC태그 활용 아동 안전활동, IC태그 활용 고령자 안전확보, 고령자 종합지원 콜센터, 여성의사 상담사업, 주소미상자에 대한 결핵대책추진사업, 예방접종 장려 추진계획, 건강운동지도사·건강운동 실천지도사의 취업조성사업, 지역 육아 지원고용촉진사업, 친숙한 장소에서 일시 탁아사업, 출산·육아 응원도우미사업, 다양한 육아인재 양성연수사업, 재취업 희망 여성 취직지원사업, 아동학대방지협력단 확보사업, 아동양호시설 등 지원향상사업, 모자가정의 취업지원강화사업, 형무소출소자의 일상생활지원사업, 생활보호제도의 원활한 실시지원사업, 장애자 지역생활지원사업, 고령자 생활지원활동사업, 특정건강진료 및 특정보건지도 종사자 확대사업, 간호보조 지원사업(후생농업협동조합연합회 운영병원), 영양사보조 지원사업(후생농업협동조합연합회 운영 병원)
농림 수산업	농업분야의 단기 고용창출사업, 원예산지 단기 고용확보·신규진입촉진사업, 도농교류 추진관련 신규고용창출사업, 경작포기지 개선사업, 바이오매스 활용관련 간벌재 등 수입이용체제정비사업, 간벌 및 간벌재 이용촉진, 선구적 사업연계·고용지원사업, 수출촉진컨설팅, 중소식품소매업자의 산지공동조달사업, 식품소매업무기능 강화, 사료용 쌀 생산 및 유통사업 지원사업, 농상공 연계설비정비사업, 국산조사료 촉진사업, 강한 농업만들기 교부금 활용 고용창출사업, 국산원재료 공급력 강화대책사업, 신토불이 모델타운사업, 퇴비유통·이용촉진지원사업, 전업농 경영다각화 및 경영규모 확대 추진사업, 농산어촌 지역 활력 발굴사업 관련 고용창출, 토지개량시설의 안전대책지원, 지역농산물 직판장 활용사업, 농지재생사업, 신규고용확대 어선리스사업, 오가닉 모델타운 지원사업, 농촌체험형 숙박시설 및 농가 레스토랑

분야	일자리 사례
환경· 저탄소	주택용 태양광발전도입 지원대책사업, 학교 등 태양광 발전이용설비 설치사업, 표류 및 표착 쓰레기 지역대책지원사업, 자연공원 청소사업, 해안환경 개선운동, 저탄소도시 관련 녹색일자리 창출사업, 탄소상쇄 추진지원사업, 농지농업용수 등 지역자원 확보사업, 농업촌락배출 오니 리사이클 촉진사업, 농업용 조정저수지 수질보전활동 및 지원사업, 우량어장보호 관련 감시강화사업, 환경생태계 보전활동, 숲 경관재생사업, 전기버스 개발보급, 지역순환네트워크 구축사업, 항만녹지 환경관리사업, 낚시진흥을 통한 지역활성화사업, 리사이클 정보센터 추진사업, 방치어선 대책추진과 관리위탁사업, 바다 환경보전촉진사업, 음식물쓰레기 에탄올화 모델사업, 이산화탄소 저감 단열 리모델링 보급촉진사업, 자연환경 개선사업, 등산로 등 위험장소 점검 및 안전대책사업, 야생동물의 생활환경피해대책, 외래종 방재를 통한 환경개선, 생물다양성 온난화영향 조사사업, 방치된 개 및 고양이 수용사업, 수변환경재생모델사업, 재사용 및 수선추진지원사업, 우량처리시설 조성사업, 환경파괴 우려 폐기물 사전철거사업, 병설처리정화조 전환추진 조사사업, 에코 투어리즘 추진, 쓰레기 투기 감시 및 방치쓰레기 수거사업, 환경인 재배출사업, 이산화탄소방출 감시단 파견사업, 환경보전사업자 투자촉진사업, 소수력 시민발전소 추진사업
교육· 청년지원	학교서포터, 청년자립지원 원조사업, 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육지원사업, 직업교육의 외부인재활용사업, 기업퇴직자 활용 교육지원매칭 추진사업, 지역의 IC태그 활용향상사업, 대학의 지역공헌 및 교육기능 충실위한 업무지원사업, 대학의 지역공헌사업, 체험활동을 통한 지역활성화계획. 대인기피자 사회활동 지원사업, 창업예비군양성사업, 지역 산학연계 직업교육지원 사업, 항구의 역사적 거리를 활용한 생애학습 충실화사업, 자연체험환경학습사업, 차세대 폐기물처리작업원 육성사업, 방과 후 아동 교실
관광진흥· 지역산업	매력 있는 관광지개발사업, 지역산업 판로확대 및 경쟁력강화, 지역철도 활성화와 지역자원 활용 사업 창출, 전통공예품의 후계자 육성 등 지원체계 구축, 쇼핑도우미사업, 지역특산품사업 활성화, IC태그를 활용한 농산물 브랜드화, IC카드를 활용한 지역교류촉진사업, 영상배급시스템을 이용한 지역정보발신사업, 웹통신기술을 활용한 예술활동촉진사업, IC카드를 활용한 관광지원사업, 지역문화재를 활용한 지역활성화사업, 중소식품소매업자 출장형 판매 촉진, 타 업종 경험을 활용한 어업진입사업, 수산가공유통 및 양식관련 고용창출사업, 산촌지역 신규사업창출, 그린 투어리즘 서포터인재활용사업, 지역자원을 활용한 레스토랑운영지원사업, 산업유산을 활용한 과소지역 활성화사업, 인터넷을 활용한 지역활성화 지원사업, 국제교류추진사업, 세토해(瀨戶內海) 국제학술제 협력사업, 중산간지역 비즈니스창출사업, 상점가 활용을 통한 생활형서비스 충실사업, 지역자원활용을 통한 신상품 안테나샵 개설, 산업관광 활용형 지역 만들기 사업, 철도원육성사업, 항구 활성화사업, 항구크루즈를 활용한 관광객 유치 사업, 항구의 매력을 활용한 관광진흥사업

분야	일자리 사례
방송·정보통신	지상디지털방송대응촉진사업, 정보처리기술 관련 취업지원사업, 학교교무 정보화 통한 고용창출, 제조업 종사노동자및실직자의 정보통신 업종전환지원
정주외국인에 대한 일상생활 지원	정주외국인 자녀에 대한 일본어교육 등 지원(문부과학성), 외국인유학생에 대한 대학생활지원 보조사업, 정주외국인 자녀에 대한 일본어교육 등 지원(문화청), 의교통역자 양성 및 확보사업, 일본계외국인 고용기업의 자녀교육 지원, 일본계외국인 일본어교육지원사업, 일본계외국인 일본어교육 및 직업훈련지원사업
방범·방화	계좌이체사기 방지 위한 주의환기 사업, 방화안전대책 보급개발사업,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방범지도사업, 통학로 등 방범활동, 유치소업무 지원사업, 공항 내 화물지구 경비업무, 방재기상정보 활용체제강화추진사업
문서전자화, 조사 등 행정사무, 정보제공	전자행정 기반구축위한 행정문서 전자화, 토지대장 조사 작업, 국민건강보험 징수촉진 및 적용적정화사업, 건강질병대책 보급개발 및 상담사업, 브로드밴드 세미나, 개인 및 커뮤니티 비즈니스 보급개발 지원사업, 지자체의 아웃소싱 관련 고용취업 창출사업, 공문서기록관·도서관·박물관 소장문서 등 전자화, 브로드밴드 보급추진 의식조사, 유적출토품·역사적 자료·민속 문화재 정리 및 공개를 통한 지역문화 진흥사업, 장기이식 및 골수은행 보급개발등록추진사업, 지자체 의약품등 감시관련 업무 임시강화사업, 약물남용방지보급개발사업, 지자체 식품위생관련 업무 임시강화사업, 장애인 시설보급개발사업, 의료사무의 전산화사업, 국영토지개량사업의 행정문서 전자화지원사업, 농촌마을 배수시설개발보급사업, 농업수리시설관리관련 자료의 전자화사업, 해안보전시설의 현황조사사업, 지역정보정비사업, 지반(地盤)정보의 전자화, 지리공간정보의 전자화, 사방관련정보 개발사업, 사방정보전자화사업, 하천환경·방재정보 통지개발사업, 전국중소하천의 생태맵 작성사업
기타	위법광고물 제거 긴급지원, 역주변 공터 등을 활용한 자전거 주차장 정비사업, 공립학교시설의 내진진단 및 보강설계사업 관련 긴급고용사업, 빌딩관리 인재육성 및 정착촉진사업, 안심·안전한 수도서비스 확보사업, 식품위생관리자 자격취득 지원사업, 장애인등 피난지원사업, 농업용 저수지 긴급점검, 농촌마을 배수시설 유지관리 및 감시업무, 농업용 도로 유지관리촉진, 적정계량센터사업, IT컨설팅 활용촉진사업, 공설시험연구기관을 활용한 직업훈련 및 섬유산업관련 기업 소개사업, 외국기업유치촉진사업, 해안보전시설의 현황조사사업, 항만시설의 현황조사사업, 사방관련 유지관리작업, 동경국제공항 통일출입증 도입관련 관리업무, 공항 내 조류피해 방지업무

자료: 日本 緊急雇用·經濟對策實施本部의 「雇用對策事業例」(2009. 2)를 참조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재구성.

참고문헌

고영선 외,「경제위기 10년: 평가와 과제」, 2007. 12.

국회예산정책처,「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쟁점분석」, 2009. 4.

국회예산정책처 사회예산분석팀,「일자리 정책: 예산과 입법과제」, 예산정책보고서 제1호, 2009. 2.

국회예산정책처 사회예산분석팀,「2009년 주요 고용지표 및 사회예산」(리플렛), 2009. 4.

기획재정부,「민생안정을 위한 28.9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보도자료, 2009. 3. 23.

김명중, "최근 일본기업의 고용조정과 정부대책에 대하여",「국제노동브리프」제7권 제2호, 2009. 2.

박진호,「일본 경제위기대책의 주요 내용 및 평가」, 한국은행 해외경제정보 제2009-29호, 2009. 4. 14.

이진우 김성은 김대철 외, "고용유지 및 일자리지원사업",「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2009. 4.

정호성 외,「일본 고용대책의 변화와 시사점」, 삼성경제연구소, 2009. 3.

통계청,「2009년 3월 고용동향」, 2009. 4. 15.

日本 緊急雇用·經濟對策實施本部,「雇用對策事業例」, 2009. 2.

日本 首相官邸,「經濟危機對策」, 2009. 4.

日本 厚生勞働省,「ふるさと雇用再生特別交付金及び緊急雇用創出事業について」, 2009. 4.

http://www.kantei.go.jp

http://www.mhlw.go.jp

작성자 명단

부 문	성 명
■ 총괄 · 조정	김호성 예산분석실장 박인화 사회예산분석팀장
■ 원고 작성	
I. 총론 및 시사점	박인화 사회예산분석팀장
II. 우리나라의 일자리대책 현황	박인화 사회예산분석팀장
III. 일본의 고용대책과 향토고용재생특별교부금	김봉주 예산분석관 서세욱 예산분석관 조혜정 예산정책분석지원인턴
IV. 일본의 고용대책사업 주요사례	[번 역] 조혜정 예산정책분석지원인턴 [감 수] 김봉주 예산분석관 서세욱 예산분석관
■ 편 집	정선미 사무보조원
■ 표지 디자인	이정민 예산정책분석지원인턴

일본의 지역 중심 고용대책 사례와 시사점

발 간 일 2009년 4월 21일

편 집 예산분석실 사회예산분석팀

발 행 인 신 해 룡

발 행 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1
TEL 02·2070·3114

인 쇄 처 경성문화사 (TEL 02·786·2999)

1. 이 보고서의 무단 복제 및 전재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2. 보고서의 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회예산정책처 사회예산분석팀 (TEL 02·788·3771)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ISBN 978-89-6073-195-0 93350

ⓒ **국회예산정책처**, 2009

대한민국국회